보안과제( ), 일반과제(O) 과제번호 (2014-3-3)

2014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Improvement of R&D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R&D Program of Korea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창조과학부

제 출 문

미채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2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책임자 : 정 동 덕(연구위원)

연 구 원 : 황 명 구(선임연구위원)

임 성 영(연구위원)

구 명 회(연구위원)

이 재 훈(부연구위원)

이 호(연구원)

이 경 민(위촉연구원)

배 정 윤(위촉연구원)

원 유 나(위촉연구원)

전 희 주(위촉연구원)

보고서 요약서

<table>
<tr><td>과제고유번호</td><td>2014-3-3</td><td>해당단계
연구기간</td><td>2014/02/11~
2015/02/10</td><td>단계구분</td><td></td></tr>
<tr><td rowspan="2">연구사업명</td><td>중사업명</td><td colspan="4">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td></tr>
<tr><td>세부사업명</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연구과제명</td><td>대과제명</td><td colspan="4">2014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td></tr>
<tr><td>세부과제명</td><td colspan="4">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td></tr>
<tr><td rowspan="2">연구책임자</td><td rowspan="2">정 동 덕</td><td>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td><td>총 : 10명
내부: 6명
외부: 4명</td><td>해당단계
연 구 비</td><td>정부: 330,000천원
기업: 천원
계 : 330,000천원</td></tr>
<tr><td>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td><td>총 : 10명
내부: 6명
외부: 4명</td><td>총연구비</td><td>정부: 330,000천원
기업: 천원
계 : 330,000천원</td></tr>
<tr><td>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td><td colspan="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규제개혁센터</td><td>참여기업명</td><td></td></tr>
<tr><td>국제공동연구</td><td colspan="3">상대국명:</td><td colspan="2">상대국 연구기관명:</td></tr>
<tr><td>위 탁 연 구</td><td colspan="3">연구기관명:</td><td colspan="2">연구책임자:</td></tr>
<tr><td colspan="4">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td><td>보고서 면수</td><td>212</td></tr>
</table>

1. 연구의 배경

○ 국가 R&D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체제로의 진화를 거듭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를 표준화하고, 전 부처 공통적용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 경감 필요

○ 기타, 기술료 제도개선, R&D도우미센터 개선, 국가 R&D제도개선 고객 만족도 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 및 국가 R&D의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 개선 등 필요

2. 주요연구내용

○ 연구자 중심의 공동관리규정 개정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에 대한 표준 매뉴얼 제정, 기술료 제도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 추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한 시스템 점검 및 R&D 도우미센터 개선을 통해 연구자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 국가 R&D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비 부정방지 제고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안) 마련 및 국가 R&D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 개선 방안 마련

3. 주요 연구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차에 걸친 개정추진(8.12, 11.28)

- 중소기업 지원강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개선, 연구개발성과물 소유권 제도의 정비, 기술료 제도개선,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규제완화, 연구실 안전 관리 강화, 성실한 연구수행에 대한 규제 완화,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매뉴얼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공통내용 정리, 참여자격, 가점 및 감점, 협약체결 및 변경 서류, 협약해약 사유, 이의신청제도, 제재사유 및 부과기준에 대한 부처별 표준화(안)을 제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

- 2014년 상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총 4개 기관 점검, 신규 3개 기관 지정)

- 2014년 하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총 6개 기관 점검)

○ 기술료 제도 기획·운영

-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료 제도 매뉴얼 마련 및 배포

○ R&D도우미센터 센터를 통해 2009년부터 2014년 말까지 총 8,917건(전화6,571, 온라인2,346) 상담사례 처리 및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애로사항 신속해결

○ 국가 R&D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 국가R&D 제도개선 종합 만족도는 57.6%로 나타남

○ 연구비 부정방지 및 국가 R&D제도개선을 위한 설명회 개최

-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경쟁형 R&D 제도 도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연구비 규제 완화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제7장 제43조로 구성

○ 국가 R&D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개선

- 연구수당 제도는 현행유지, 미국에서도 연구참가자들에게 일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항목별로 지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수당은 R&D사업만이 아니라, 비R&D성격의 사업에도 낮은 비율이라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R&D제도, 제도개선
	영 어	National R&D management system, R&D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요 약 문

Ⅰ. 제목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Ⅱ. 연구의 배경

- 국가R&D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체제로의 진화를 거듭해야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박근혜정부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창의적 성과도출 및 사업화 등을 위하여 R&D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임
  - 최근 창조경제의 구축과 손톱 밑 가시 제거 등을 위해 연구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현장 내·외부의 요구 증가
  - 또한, 국회 등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연구비 부정 등 연구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
- 따라서, R&D관리규정과 연구현장의 애로요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자 자율성 확대 및 행정부담 경감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를 표준화하여 전 부처 공통적용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 경감 필요성 증대
- 또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과 관련하여, 기 지정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질적인 수준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점검을 강화하고, 신규 지침에 근거하여 신규 통합관리기관 지정확대가 필요함
- 연구현장,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해외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소유권 배분 구조 및 실시 관련 제도 개선, 국과심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세부 제도개선 추진 및 기술료 제도 매뉴얼 제작 및 제도 홍보 필요

- R&D도우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구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고, 연구자가 자율적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는 신문고제도 등 필요성 증가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추진되었던 국가 R&D 제도개선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에게 의견수렴 결과를 피드백하고 제도개선의 현장착근 정도, 연구현장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 도출 필요
- 기타 국가 R&D 관련 법률의 체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연구기획 · 관리 · 평가 제고 및 연구자 자율성 증진이 필요하고, 연구수당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장 · 단점 및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 연구수당 개선방안 마련 필요

Ⅲ.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통해 창조경제에 기여함
  -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에 대한 산 · 학 · 연 등 각계 각층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함
  - 아울러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타당성 있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동관리규정에 반영토록 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기지정된 통합관리기관(기존 풀링제 운영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실태를 조사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통합관리기관으로 확정하고 미달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며, 신규 신청을 접수하여 새로운 기관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함.
- R&D 도우미센터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홈페이지 기능 개선
- 국가 R&D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홍보 및 고객만족도 조사
- 연구비 부정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위탁)
-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위탁)

Ⅳ. 연구결과

-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수요조사 및 분석
  - 미래부는 2014. 1~2월초까지 정부부처, 전문기관, 대학, 출연(연)에 제도개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그 결과 총 18개 기관에서 81개 과제 제출, 수요 조사한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 있는 개선요구사항은 정부에 규정개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함
- 공동관리규정 개정(1차(8.12), 2차(11.28))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제7조제4항, 별표 1의4 및 별표 2)
  -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제12조제2항)
  -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제도의 정비(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8항)
  - 기술료 제도의 개선(제22조제7항 · 제8항 및 제23조, 안 별표 2의3 신설)
  - 연구성과 관리 · 유통의 효율화(제25조제27항)
  -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규제의 완화(별표 2의2)
  - 협약의 해약사유에 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 추가(제11조 및 제15조)
  -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마련(제27조의2 신설)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마련(제27조의3 및 별표 6 신설)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매뉴얼 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공통내용 정리, 참여자격, 가점 및 감점, 협약체결 및 변경 서류, 협약해약 사유, 이의신청제도, 제재사유 및 부과기준에 대한 부처별 표준화(안)을 제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
  - 2014년 상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총 4개 기관 점검, 신규 3개 기관 지정)
  - 2014년 하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총 6개 기관 점검)
- 기술료 제도 기획 · 운영
  -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료 제도 매뉴얼 마련 및 배포
- R&D도우미센터 운영 및 지원
  - 2009년부터 2014년 말까지 총 8,917건(전화6,571, 온라인2,346) 상담사례 처리
  -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 및 국가R&D사업 전반 사항 소개 등 개편

- 국가 R&D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 국가R&D 제도개선 종합 만족도는 57.6%로 나타남
- 연구비 부정방지 및 국가 R&D제도개선을 위한 설명회 개최
  -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경쟁형 R&D 제도 도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연구비 규제 완화, 기술료 제도 개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완화, R&D 도우미센터 개편 / 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 R&D 제재 강화,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제7장 제43조로 구성
- 국가 R&D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개선
  - 연구수당은 과제를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금전적인 인센티브이며, 연구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에서도 연구참가자들에게 일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항목별로 지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수당은 R&D사업만이 아니라, 비R&D성격의 사업에도 낮은 비율이라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3
제4절 연구결과 ····· 5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및 분석 ····· 12
제1절 개요 ····· 12
1. 추진배경 ····· 12
2. 제도개선 수요조사 실시 ····· 12
제2절 수요 조사 · 분석 실적 ····· 13
1. 제도개선 분석결과 ····· 13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14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차 개정 ····· 14
1. 추진경과 ····· 14
2. 개정사유 ····· 14
3. 주요내용 ····· 14
4. 신구조문대표 ····· 16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차 개정 ····· 27
1. 추진경과 ····· 27
2. 개정사유 ····· 27
3. 주요내용 ····· 28
4. 신구조문대표 ····· 29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운영 ····· 50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50
1. 추진개요 ····· 50
2. 추진방법 ····· 51
3. 추진실적 ····· 53
제2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 ····· 69
1. 추진개요 ····· 69

2. 추진방법 ····· 70
3. 추진실적 ····· 74
제3절 기술료 제도 기획 · 운영 ····· 79
1. 추진배경 ····· 79
2. 추진경위 ····· 80
3. 추진실적 ····· 80
제4절 R&D도우미센터 운영 ····· 87
1. 운영개요 ····· 87
2. 상담사례 ····· 91
3. 홈페이지 개선 실적 ····· 91
제5절 국가 R&D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 102
1. 조사개요 ····· 102
2. 조사설계 및 수행계획 ····· 103
2. 연구체계 및 추진일정 ····· 109
3. 조사결과 ····· 110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 148
제1절 국가 R&D 제도개선 홍보 및 부패방지 제도개선 ····· 148
1. 국가 R&D 제도개선 설명 ····· 148
3. 부패방지 제도개선 ····· 151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 ····· 163
1. 추진배경 ····· 163
2. 현황 및 문제점 ····· 164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동향 분석 ····· 167
4.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의 문제점 ····· 168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기본방향 ····· 169
6. 제도의 유연성 제고 및 신속한 현장 착근 ····· 173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구성 및 조문 체계 ····· 173
제3절 국가R&D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개선 ····· 177
1. 추진배경 ····· 177
2. 추진내용 ····· 178
3. 연구수당 계상기준의 변동 ····· 179
8. 주요국의 연구자 인센티브제도 비교와 시사점 ····· 181
9. 연구수당 관리제도 개선방안 ····· 185

제6장 결 론 ····· 189

〈별책〉

〈별책 1〉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별책 2〉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합리적인 연구수당제도 개선방안 연구
〈별책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별책 4〉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매뉴얼

표목차

〈표 4-1〉 부처별 규정 불일치 사례 주요내용 ····· 53
〈표 4-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주요 연혁 ····· 69
〈표 4-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 72
〈표 4-4〉 점검내용(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제10조) ····· 73
〈표 4-5〉 2014년 상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현황 현장점검 결과 ····· 76
〈표 4-6〉 2014년 하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현황 현장점검 결과 ····· 77
〈표 4-7〉 2014년 하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현황 현장점검 보완보고서 검토내용 ····· 78
〈표 4-8〉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현황(2014.7.) ····· 79
〈표 4-9〉 * 참여연구원의 한 해 누적 보상금 20억 원 초과 시 지급 기준 ····· 82
〈표 4-10〉 접수 · 처리 절차 ····· 88
〈표 4-11〉 연도별 상담실적 ····· 88
〈표 4-12〉 조사 설계 요약 ····· 103
〈표 4-13〉 조사 표본수 ····· 104
〈표 4-14〉 조사 설계 프로세스 ····· 105
〈표 4-15〉 표본 설계(안) ····· 106
〈표 4-16〉 응답자 Profile ····· 110
〈표 4-17〉 각 분야별 인지도 ····· 111
〈표 4-18〉 각 분야별 중요도 ····· 111
〈표 4-19〉 국가R&D사업 제도개선 종합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결과 ····· 112
〈표 4-20〉 척도 환산 방식 ····· 113
〈표 4-21〉 지속적인 개선 확대가 필요한 분야 Top 4_1순위 ····· 113
〈표 4-22〉 소속기관명 ····· 115
〈표 4-23〉 소속 기관 소재지(시, 도, 별)_1 ····· 116
〈표 4-24〉 소속 기관 소재지(시, 도, 별)_2 ····· 117
〈표 4-25〉 소속 기관 소재지(시, 도, 별)_3 ····· 117
〈표 4-26〉 기업규모 ····· 118
〈표 4-27〉 담당직무 ····· 119
〈표 4-28〉 인지도 –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 120
〈표 4-29〉 인지도 – 경쟁형 R&D 제도 도입 ····· 121
〈표 4-30〉 인지도 –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 122
〈표 4-31〉 인지도 – 연구비 규제 완화 ····· 123
〈표 4-32〉 인지도 – 기술료 제도개선 ····· 124
〈표 4-33〉 인지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완화 ····· 125
〈표 4-34〉 인지도 – R&D 도우미센터 개편/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 126
〈표 4-35〉 인지도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R&D사업 제재 강화 ····· 127
〈표 4-36〉 중요도 –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 129

〈표 4-37〉 중요도 – 경쟁형 R&D 제도 도입 ····· 129
〈표 4-38〉 중요도 –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 130
〈표 4-39〉 중요도 – 연구비 규제 완화 ····· 130
〈표 4-40〉 중요도 – 기술료 제도개선 ····· 131
〈표 4-41〉 중요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완화 ····· 131
〈표 4-42〉 중요도 – R&D 도우미센터 개편/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 132
〈표 4-43〉 중요도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R&D사업 제재 강화 ····· 132
〈표 4-44〉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정도 ····· 133
〈표 4-45〉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내용 반영 정도 ····· 134
〈표 4-46〉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의 적절함 정도 ····· 134
〈표 4-47〉 결과에 대한 홍보 및 안내의 충분함 정도 ····· 135
〈표 4-48〉 실제 연구 현장의 문제점 개선 정도 ····· 135
〈표 4-49〉 전반적 만족도 ····· 136
〈표 4-50〉 지속적인 개선 확대 필요한 분야 – 1순위_1 ····· 137
〈표 4-51〉 지속적인 개선 확대 필요한 분야 – 1순위_2 ····· 138
〈표 4-52〉 지속적인 개선 확대 필요한 분야 – 2순위_1 ····· 138
〈표 4-53〉 지속적인 개선 확대 필요한 분야 – 2순위_2 ····· 139
〈표 4-54〉 지속적인 개선 확대 필요한 분야 – 3순위_1 ····· 139
〈표 4-55〉 지속적인 개선 확대 필요한 분야 – 3순위_2 ····· 140
〈표 4-56〉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항목 ····· 141
〈표 4-57〉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새로운 연구제도 발굴_의견 ····· 141
〈표 4-58〉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_의견 ····· 142
〈표 4-59〉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_의견 ····· 142
〈표 4-60〉 제재 강화를 통한 연구관리 책임성 강화_의견 ····· 142
〈표 4-61〉 기타_의견 ····· 143
〈표 5-1〉 국가연구개발관련 법 체계 현황 ····· 164
〈표 5-2〉 연구자 인센티브 개편 ····· 179
〈표 5-3〉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비교표 ····· 180
〈표 5-4〉 한국, 미국, 일본의 인센티브 비교 ····· 182

그림목차

〈그림 1-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 추진체계 ····· 4
〈그림 4-1〉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 ····· 54
〈그림 4-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 체계 ····· 71
〈그림 4-3〉 기술료 제도의 운영체계 ····· 81
〈그림 4-4〉 조사 Framework ····· 103
〈그림 4-5〉 설문 개발 프로세스 ····· 106
〈그림 4-6〉 조사 방법 총괄 ····· 108
〈그림 4-7〉 CATI 시스템 관리 ····· 108
〈그림 4-8〉 추진 체계 및 보고 일정 ····· 109
〈그림 4-9〉 국가R&D사업 제도개선 종합 만족도 ····· 112
〈그림 4-10〉 소속기관명 ····· 115
〈그림 4-11〉 소속 기관 소재지(시, 도, 별) ····· 116
〈그림 4-12〉 기업규모 ····· 118
〈그림 4-13〉 담당직무 ····· 119
〈그림 4-14〉 인지도 -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 120
〈그림 4-15〉 인지도 - 경쟁형 R&D 제도 도입 ····· 121
〈그림 4-16〉 인지도 -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 122
〈그림 4-17〉 인지도 - 연구비 규제 완화 ····· 123
〈그림 4-18〉 인지도 - 기술료 제도개선 ····· 124
〈그림 4-19〉 인지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완화 ····· 125
〈그림 4-20〉 인지도 - R&D 도우미센터 개편/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 126
〈그림 4-21〉 인지도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 R&D사업 제재 강화 ····· 127
〈그림 4-22〉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 중요도 ····· 128
〈그림 4-23〉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 133
〈그림 4-24〉 전반적 만족도 ····· 136
〈그림 4-25〉 지속적인 개선 확대 필요한 분야 - 1순위 ····· 137
〈그림 4-26〉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항목 ····· 140
〈그림 5-1〉 법률 제정의 기본 방향 ····· 169
〈그림 5-2〉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 170
〈그림 5-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성체계 ····· 17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국가R&D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추격형R&D에서 선도형 R&D체제로의 진화를 거듭해야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총 R&D(정부+민간) 투자 규모는 '13년 세계 6위권(59.3조원), GDP 대비 비중 4.15% 로 세계 최고 수준

  * 연구원수('13년) : 총 연구원 약 410천명, 상근상당 연구원 약 322천명(세계 6위권)

- 이에 박근혜정부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창의적 성과 도출 및 사업화 등을 위하여 R&D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임

  - 최근 창조경제의 구축과 손톱 밑 가시 제거 등을 위해 연구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현장 내 · 외부의 요구 증가

  - 또한, 국회 등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연구비 부정 등 연구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

- 따라서, R&D관리규정과 연구현장의 애로요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자 자율성 확대 및 행정부담 경감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를 표준화하여 전 부처 공통적용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 경감 필요성 증대

- 또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과 관련하여, 기 지정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질적인 수준 제고를 위해 상 · 하반기 점검을 강화하고, 신규 지침에 근거하여 신규 통합관리기관 지정확대가 필요함

- 연구현장,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해외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소유권 배분 구조 및 실시 관련 제도 개선, 국과심「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세부 제도개선 추진 및 기술료 제도 매뉴얼 제작 및 제도 홍보 필요

- R&D도우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구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고, 연구자가 자율적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는 신문고제도 등 필요성 증가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추진되었던 국가 R&D 제도개선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에게 의견수렴 결과를 피드백하고 제도개선의 현장 착근정도, 연구현장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 도출 필요

  - 국가 R&D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홍보를 위해 설명회 개최 필요

- 기타 국가 R&D 관련 법률의 체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연구기획 · 관리 · 평가 제고 및 연구자 자율성 증진이 필요하고, 연구수당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장 · 단점 및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 연구수당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연구자 자율성은 증진시키되, 연구비 부정 등에 대하여 제재강화 등 필요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본 연구는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통해 창조경제에 기여함

  -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에 대한 산 · 학 · 연 등 각계 각층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함

  - 아울러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타당성 있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동관리규정에 반영토록 함

  - 주요 공동관리규정에 반영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연구참여 확대 및 우대 추진

    • R&D성과 활용 확대를 위한 소유권 배분 구조 및 실시 관련 제도 개선 등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기지정된 통합관리기관(기존 풀링제 운영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실태를 조사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통합관리기관으로 확정하고 미달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며, 신규 신청을 접수하여 새로운 기관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함

  - 점검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여 실태를 조사함

- R&D 도우미센터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홈페이지 기능 개선
- 국가 R&D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홍보 및 고객만족도 조사
- 연구비 부정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위탁)
-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위탁)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 연구현장 의견 수렴, 개선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해외 사례 조사 비교·분석 등

※ 필요시 전문기관, 출연연, 대학 전문가 및 연구자 자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연구현장 의견 수렴, 개선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표준매뉴얼 제작 사례 조사, 부처별 규정 내용 비교·분석
-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대학 등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정부부처 협의, 공청회 등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

- 현장점검단은 미래창조과학부 통합관리제도 담당 공무원, KISTEP 담당자, 대학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무 담당자로 구성·운영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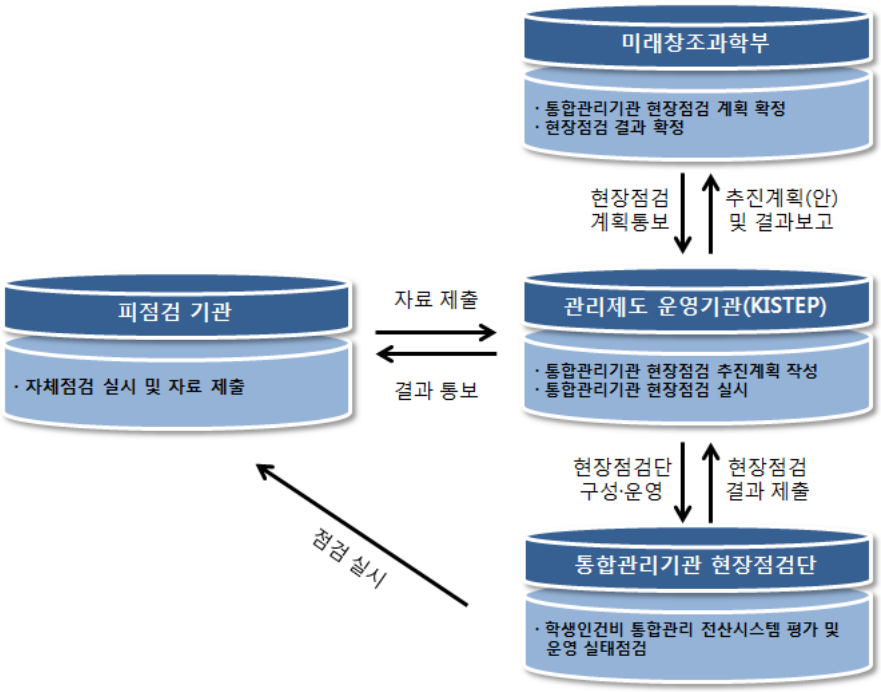

〈그림 1-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 추진체계

☐ '13년 국과심 심의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 관련 후속조치

- 전문가 작업반을 활용하여 경상기술료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안) 마련
- 참여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및 지식재산경비 선공제 등 기술료 제도개선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개정 추진

☐ 연구비 관련 상담·부당집행 사례집 발간

- 연구비관리 표준 매뉴얼에 제시된 부당집행기준을 바탕으로 각 부처 부당집행 사례 수집
- 연구비와 관련하여 R&D도우미센터에서 상담한 사례를 수집
-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집 초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 및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발간

☐ 국가 R&D 제도개선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추진

- 국가 R&D 제도개선 범위 설정, 조사대상자 설계,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 결정
- 설문조사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설문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

- 국가 R&D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 국가 R&D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홍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공통법률 추진
  - 선행연구 검토, 범 부처 R&D 관련 규정 비교 · 분석
  - 국내 R&D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입법의 필요성 도출
  - R&D 관련 규정 전문가 구성 및 자문
- 국가 R&D 합리적인 연구수당 개선
  - 선행연구 검토, 연혁, 연구수당 관련 규정 비교 · 분석
  - 연구수당 관련 해외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추진 및 분석
  - 연구수당 개선방안 제시

제4절 연구결과

-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수요조사 및 분석
  - 미래부는 2014. 1~2월초까지 정부부처, 전문기관, 대학, 출연(연)에 제도개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그 결과 총 18개 기관에서 81개 과제 제출.
  - 수요 조사한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 있는 개선요구사항은 정부에 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함
- 공동관리규정 개정(1차, 8.1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제7조제4항, 별표 1의4 및 별표 2)
    -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신규채용 인정기간을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서 6개월 이전까지로 확대함.
  -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제12조제2항)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함.

-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제도의 정비(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8항)
  - 지식재산권과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 소유 원칙에서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이 소유하는 개발자 소유 원칙으로 전환하고, 참여 연구기관에 대해서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권도 인정함.
- 기술료 제도의 개선(제22조제7항 · 제8항 및 제23조, 안 별표 2의3 신설)
  - 경상기술료의 징수 기간을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최대 5년간으로 한정하고, 기술료는 현금 외에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원 간 보상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별 참여연구원의 연간 누적 보상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적금액에 따라 지급 비율을 하향 조정함.
  -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 유지 등의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는 지식재산권 관련 경비로 확보하여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연구성과 관리 · 유통의 효율화(제25조제27항)
  - 연구성과의 유지 · 보관 ·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성과를 등록 · 기탁받는 기관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규제의 완화(별표 2의2)
  - 현재 회의비는 금액에 상관 없이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이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던 것을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만으로 집행을 허용함.

◎ 공동관리규정 개정(2차, 11.28) 주요내용

- 협약의 해약사유에 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 추가(제11조 및 제15조)
  - 협약의 해약사유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 제출하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을 포함하도록 함.
-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마련(제27조의2 신설)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음에도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감경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을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로 정함.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마련(제27조의3 및 별표 6 신설)

• 연구비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율을 정하고, 용도 외로 사용한 사유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을 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매뉴얼 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공통내용 정리, 참여자격, 가점 및 감점, 협약체결 및 변경 서류, 협약해약 사유, 이의신청제도, 제재사유 및 부과기준에 대한 부처별 표준화(안)을 제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

– 2014년 상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
(총 4개기관 점검, 신규 3개기관 지정)

– 2014년 하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
(총 6개 기관 점검)

○ 기술료 제도 기획 · 운영

–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가이드라인 마련

– 기술료 제도 매뉴얼 마련 및 배포

○ R&D도우미센터 운영 및 지원

– 2009년부터 2014년 말까지 총 8,917건(전화6,571, 온라인2,346) 상담사례 처리

– 2014년도 R&D도우미센터 주요 개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구분	개선내용
공통	ㅇ R&D도우미센터의 아이덴티티 표현 – 시스템의 대표성(“도우미” 기능 강조)을 표현할 수 있는 심볼 제작 ㅇ 회원가입 및 관리 모듈 수정 · 개발 – 기존 회원가입 방법 수정(예: 간편가입 또는 회원가입 폐지) 및 이에 대한 관리 모듈 개발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구현 ㅇ 기존 기능 일부 조정 및 삭제 – 타 부처 질문 이관 기능 삭제 및 관련 메뉴 · 관리권한 삭제 등 ㅇ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 다양한 OS환경에서 모두 접근 가능한 웹 표준 준수 – 장애인의 정보접근 수준 향상을 위한 웹 접근성 지침 준수
사용자	ㅇ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 및 국가R&D사업 전반 사항 소개 – R&D도우미센터의 업무범위 및 홈페이지 이용 관련 소개 – 국가R&D사업의 정의, 법령체계, 신청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 안내 ㅇ 각 메뉴의 기능 통합 및 내용 수정 – ‘신문고’ 메뉴 이름 및 내용 수정

구분	개선내용
	- '온라인 상담' 메뉴 수정(질의방법 등) 및 'Q&A'와 메뉴 통합 - '자료실' 메뉴 하위 카테고리 수정 ○ 알림 기능 강화 - 국가R&D사업 관련 알림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알림판 신설
관리자	○ 통계 관련 기능 추가 - 질의자 소속별 통계 추가 ○ '오프라인 자료등록' 메뉴 오류 수정 - 기존 구성 메뉴의 오류 수정(예: 일괄등록 불가능 등)

◎ 국가 R&D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 국가R&D 제도개선 종합 만족도는 57.6%로 나타남.

• 국가R&D 제도개선 종합 만족도 결과는 '만족'(만족+매우만족)이 38.3%로 '불만족'(매우불만족+불만족) (10.1%)에 비해 28.2%p 높게 나타남

•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기업은'만족'(40.5%)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불만족'에 대한 응답은 '전문기관'(15.4%)이 타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담당직무별로 살펴보면, '연구책임자'의 '만족'(44.7%) 비율이 타 직무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불만족'은 '연구원'(12.4%)에서 타 직무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구비 부정방지 및 국가 R&D제도개선을 위한 설명회 개최

– R&D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 2014. 10. 29일 대전에서 개최

• 전문기관, 대학, 출연(연), 기업 연구관리 팀장급이상 70여명 참석

• 주요내용: 연구비 관리 제도개선, 연구장비 관리 제도개선, 연구과제 및 성과 관리 제도개선, 사업단(연구단) 관리 · 운영체계 개선, ICT 분야 사업 관리 강화

– 국가 R&D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 2014. 11. 25, 11.30일 등 2회(서울, 대전)에 걸쳐 설명회 개최

• 주요내용: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경쟁형 R&D 제도 도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연구비 규제 완화, 기술료 제도개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완화, R&D 도우미센터 개편 / 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R&D 제재 강화, 대학 간접비 제도 개선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제7장 제43조로 구성

- 총칙은 목적, 정의조항,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 및 연구개발정보(과학기술데이터)의 정의규정 신설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의 정비 등
  - 정출연 등의 기본사업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본 법의 일반법률로서의 성격 반영
- 제2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관련 총괄규범체계 정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원칙 규정
  - NIS 관점에서 연구개발시스템 및 법령정비 중장기전략수립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운영체계 재설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류기준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방향성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체계의 정비
- 제3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의 조성 등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및 연구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 공동·융합연구 관련 근거조항의 신설 및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범부처 조정기반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통계의 활용체계 구축
  - 연구윤리의 확보, 성실실패 인정에 대한 증명 및 감사 감면제도를 통한 실효성 확보
- 제4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 부분의 기본 절차 중심의 규정체계 간소화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의 신설
  - 연구개발사업 선정 및 평가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 연구개발결과의 공개를 통한 활용체계 구축
- 제5장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및 보안에 대한 범부처 연구개발 규범체계의 기준 설정
  - 연구성과의 소유 및 관리와 기술료체계 원칙 천명
  - 연구성과의 활용보고 및 추적평가제도 도입
  -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연구비의 사용·정산 및 연구성과 소유체계에 대한 특칙규정
- 제6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의견제출 기회 보장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강화 및 제재부가금제도 도입 등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 제7장에서는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근거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활용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 부칙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부칙으로 타법 개정사항 반영

○ 국가 R&D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개선

- 연구수당 지급 여부
  - 연구수당은 과제를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금전적인 인센티브이며, 연구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에서도 연구참가자들에게 일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항목별로 지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방안	내용	비고
현행안	– 연구수당과 능률성과급을 분리 지급	선호안
제안(1)	– 연구수당과 능률성과급을 통합	
선호안 논리	–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항목별로 지급 목적과 결정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수당은 연구과제를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금전적인 인센티브이며, 연구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 연구수당 적용 사업 및 지급 범위
  - 연구수당은 R&D사업만이 아니라, 비R&D성격의 사업에도 낮은 비율이라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구수당 지급 대상은 연구인력만이 아니라, 연구지원인력에게 일부 할당하는 것도 필요함. 그 이유는 연구과제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지원인력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임

방안	내용	비고
현행안	– 연구수당을 연구직접인력에 주로 지급	
제안(1)	– 연구간접인력에 10% 정도 배정함	선호안
제안(2)	– 비R&D 사업에도 차등비율 연구수당 지급	
선호안 논리	– 연구과제의 수주가 증가하면, 연구지원인력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원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 – 연구인력과 지원인력 들의 공동체적 의식제고에 필요	

– 연구수당 계상기준 및 지급시기

• 연구수당의 수준은 현행과 같이 인건비 총계의 2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연구수당 지급 시기는 현재와 같이 연구 종료 후에 지급하되, 장기 과제의 경우 연차별로 나누어 지급

방안	내용	비고
현행안	– 연구수당의 수준을 인건비 총액의 20% – 연말에 지급	선호안
제안(1)	– 장기연구과제는 연말에 나누어 지급	보완 사항
선호안 논리	– 연구수당의 수준은 현행과 같이 인건비 총계의 20%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설문 결과에서 나타남	

– 능률성과급에 대한 보완점

• 연구수당과 능률성과급은 기술료인센티브와 함께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 수당의 대표적인 항목임

• 출연(연)에서 연봉의 차이는 급여보다는 인센티브성 수당의 다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연구수당과 능률성과급은 연구기관별 연봉 차이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임

• 연구수당은 과제 수주에 따라 결정되나, 능률성과급은 예산 대비 초과잉여금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부 연구소의 경우 능률성과급이 급여의 15%를 넘는 기관도 있으며, 이러한 초과 지급이 매년 계속되는 기관도 있음

• 따라서 예산 설정시 전년도 실적에 준하여 편성케 함으로써 과소한 예산 편성을 예방하고, 초과잉여금의 50%만이 아니라 급여의 일정률 이내로 능률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방안	내용	비고
현행안	– 능률성과급은 잉여금의 50% 이내로 제한	선호안
제안(1)	– 능률성과급에 대하여 잉여금 비율과 합께 급여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 고려 필요.	보완사항
선호안 논리	– 일부 연구소의 경우, 능률성과급의 비중이 매년 높은 기관들이 있어 예산의 과소 설정을 통한 초과잉여금 조성 의혹이 있음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및 분석

제1절 개요

1. 추진배경

○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이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의 자율성 증대, 행정부담 경감 실현 필요

– 이에 정부부처, 전문기관,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도개선 타당성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한다)에 반영함

2. 제도개선 수요조사 실시

○ 미래부는 2014년 1~2월초까지 정부부처, 전문기관, 대학, 출연(연)에 제도개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18개 기관에서 81개 과제의 개선 요구를 함.

구분	기관수	제출건수
정부 부처	5	30
대 학	3	9
출연(연)	7	23
전문기관	3	19
총 합계	18	81

– 정부부처에서는 미래부가 14건, 산업부가 7건, 특허청이 4건, 해수부가 3건, 국토부가 1건 등 총 29건을 제출

– 대학에서는 성균관대 5건, 서울대 1건, 포항공대 1건 등 총 7건을 제출

–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건, 기초기술연구회 1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건, 기초과학지원연구원 3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건, 국가핵융합연구소 1건 등 총 26건을 제출

– 전문기관은 연구재단 11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7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건 등 총 19건을 제출

제2절 수요 조사 · 분석 실적

1. 제도개선 분석결과

○ 제도개선 요구 81건에 대하여 2014. 2~3월까지 약 2개월간 검토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음.

제안요구		건수
총칙	총칙	4
기획 · 관리 · 평가	기획 · 공고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5
	협약	1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참여기업부담기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등 포함)	31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	8
	연구개발비 정산	3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2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기술료 징수 및 사용	2
보안 및 정보관리	보안 및 정보관리	7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2
보칙	보칙	5
부칙	부칙	1
기타	기타	6
계		81

– 제도개선 수요조사 결과 기획 · 관리 ·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52건(64.2%)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가 31건(38.2%)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개선을 요구함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차 개정

1. 추진경과

- 2014.1~2월 초: 수요조사실시(총 18개 기관*에서 81개 개선요구과제 제출)

  * 정부부처 5개, 대학 3개, 출연(연) 7개, 전문기관 3개

- 2014.2~3월 :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 2014.4.14.~5.23 : 입법예고(48개 과제)
- 2014.5.24.~8.11 :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
- 2014.8.12. : 공포 · 시행(42개 반영)

2. 개정사유

- 창조경제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선도형 국가연구개발 환경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연구비 규제 완화 등 국가연구개발제도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 지원과 연구성과의 관리 · 유통 효율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제7조제4항, 별표 1의4 및 별표 2)

-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신규채용 인정기간을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서 6개월 이전까지로 확대함.

나.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제12조제2항)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함.

다.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제도의 정비(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8항)

- 지식재산권과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 소유 원칙에서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이 소유하는 개발자 소유 원칙으로 전환하고, 참여 연구기관에 대해서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권도 인정함.

라. 기술료 제도의 개선(제22조제7항 · 제8항 및 제23조, 안 별표 2의3 신설)

- 경상기술료의 징수 기간을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최대 5년간으로 한정하고, 기술료는 현금 외에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원 간 보상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별 참여 연구원의 연간 누적 보상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적금액에 따라 지급 비율을 하향 조정함.
-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 유지 등의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는 지식재산권 관련 경비로 확보하여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마. 연구성과 관리 · 유통의 효율화(제25조제27항)

- 연구성과의 유지 · 보관 ·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성과를 등록 · 기탁받는 기관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규제의 완화(별표 2의2)

- 현재 회의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이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던 것을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만으로 집행을 허용함.

4. 신구조문대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7.21., 타법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8. - 금액- - - - -.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범위)**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생　략)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② - - - - - - - - - - - -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7.21., 타법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국내외 ---------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7. ------------ 기술 동향, 표준화 ---- 표준특허 ------ -------------------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② (생 략)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	③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7.21., 타법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정한다.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④ －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생 략)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 － － － － － － －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18> (생 략)	③ ~ <18>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7.21., 타법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② (생 략)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45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 ④ (생 략)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1항 −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⑦ (생 략)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⑧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7.21., 타법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보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생 략)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 협약에서 － － － － － － － － －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 － － － － －.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 ⑦ (생 략)	**제2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연구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7.21., 타법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생 략)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기술실시 보고서 -.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기술료 징수 및 납부 - - - - - - - - - - - - - - -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 연구개발결과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7.21., 타법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신 설>	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 - - - - - - - 소유기관- - - - - - - - - - - - - - - - - -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 - -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2호- - - - - - - - - - - - - - 별도 계정-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 - - - - - - - 소유기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③ - 3개월 - - - - - - - - - - - - - - - - -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삭 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7.21., 타법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⑧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 . 다만, - .
1. ~ 4. (생　략) ②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② (생　략) <신　설>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2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7.21., 타법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생 략)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24조의4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 별표 2의4와 -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2의3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 별표 2의4- .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⑬ (생 략)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제13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 · 유통체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성과의 유지 · 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⑭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⑮ ~ <26> (생 략)	⑮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성과의 유지 · 보관 ·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7.21., 타법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제26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26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1. -- 중소기업청, 특허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 ⑤ (생 략)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 제5항------------------------------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 제5항에 따른 ------------------------------------ .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7.21., 타법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u>다른</u>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2. ‐ <u>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u>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② (생 략)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u>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u>	<u>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4(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 ⑦ (생 략)	**제33조의4(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⑧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u>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7.21., 타법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신 설>	**제33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무 5. 제22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8. 제31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차 개정

1. 추진경과

- 2014.8.4.~9.15 : 공동관리규정 2차 개정 입법예고
- 2014.9.16.~11.26 :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
- 2014.11.28. : 공포 · 시행

2. 개정사유

- 당초의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673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과 관련한 기준과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실의 안전조치가 불량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성과 보고 시 연구실의 안전조치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협약의 해약사유에 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 추가(제11조 및 제15조)

- 협약의 해약사유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 제출하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을 포함하도록 함.

나.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마련(제27조의2 신설)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음에도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감경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을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로 정함.

다.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마련(제27조의3 및 별표 6 신설)

- 연구비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율을 정하고, 용도 외로 사용한 사유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을 정함.

4. 신구조문대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 및 제16조의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연구개발성과를-- ----------.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 연구개발성과를-- ---------- 연구개발성과를-- ----------.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9. ---------- 연구개발성과를--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 연구개발성과를-- ---------- 연구개발성과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생 략)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개발성과----------.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 ③ (생 략)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② (생 략)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	③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7. 연구개발성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8. ---------- 연구개발성과----------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④ ---------- ---------- ---------- ---------- ----------.
1. 최근 3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1. ---------- 연구개발성과----------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 ---------- ---------- ---------- ---------- --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실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공표한 연구실의 -.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제9조(협약의 체결) ①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
6. 연구성과(「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2. ---------- 연구개발성과 ----------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연구개발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 ③ (생 략)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연구개발성과----------.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①·② (생 략)	제14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연구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5. 연구개발성과----------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	⑦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명한 집행, 연구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연구개발성과---------- ---------- ---------- ----------.
제5절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5절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생 략)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5. 연구개발성과---------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7. 연구개발성과---------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 ----------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의 -------- ---------- ----------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 ----------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 연구개발성과----------. ----------.
⑤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성과----------.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생 략)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 연구개발성과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 우수성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④ ---------- 연구개발성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⑥ ---------- 연구개발성과----------.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 연구개발성과----------.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⑧ ---------.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1. 연구개발성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결과물 중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⑨ ----------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 연구개발성과----------.
제18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생 략)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연구개발성과----------.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 연구개발성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9조제4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⑤ ---------- 연구개발성과----------.
제3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 성과는--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 --- 성과는-- ---------- ----------. -------- ---------- ---------- ---------- ---------- ---------- ---------- -.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1. ---------- 성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2. ---------- 연구개발성과를--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3. ---------- ---------- ---------- 연구개발성과----------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 -- 연구개발성과를-- ---------- ---------- ---------- ----------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 연구개발성과를--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를-- ---------- 연구개발성과를-- ----------.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1. ----------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 성과----------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2. ----------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 연구개발성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를-- ---------- 연구개발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 ---------- ---------- ----------.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② ---------- 연구개발성과--- ---------- ---------- ---------- -------.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1. 연구개발성과를-- ---------- ---------- --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2. ---------- ------- 연구개발성과를--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3.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다.---------- 연구개발성과----------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 ---------- ----------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 -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 -. ----------.
⑦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⑦ ---------- 연구개발성과 ----------.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 연구개발성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 연구개발성과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 ------ 제3호---------- --.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1.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 전문기관을 거쳐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 ------- 연구개발성과-- ----------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제24조의4(분류기준) ① ---------- ----------.
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1. -------- 연구개발성과-- ---------- ---------- ---------- ----------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제24조의8(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24조의5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24조의6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제24조의8(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 연구개발성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 ----------.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 연구개발성과----------.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	⑩ ---------- 연구개발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⑪·⑫ (생 략)	⑪·⑫ (현행과 같음)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⑬ ----------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
⑭ 제13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⑭ ----------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⑮ ~ <21> (생 략)	⑮ ~ <21> (현행과 같음)
<22>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22>---------- 연구개발성과----------.
<23>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제13항에 따른 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23>---------- 연구개발성과----------.
<24> 제13항에 따른 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연구개발성과 ----------.
<2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 및 제14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유통체계의	<25>---------- 연구개발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구축·운영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다.	----------.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성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 다만, 법 제11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라 중단 또는 실패의 원인,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을 평가하여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6. ---------- 연구개발성과인--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	⑨ ---------- 환수하거나 법 제11조의5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 결정사실,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의 금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다.	--------.
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 ---------- ---------- ---------- ---------- 있으며, 법 제11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라 중단 또는 실패의 원인,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을 평가하여 -.
<신 설>	⑪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29조(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① ---------- 연구개발성과----------.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 연구개발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1. ----------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2. ---------- 연구개발성과 ---------- ---------- 연구개발성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생략)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성과 창출지원·보호·활용	2. 연구개발성과 ----------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연구개발성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	④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79호, 2014.11.28., 일부개정]
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구개발성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의4(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33조의4(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 ---------- 연구개발성과----------.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1. 추진개요

가.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외 각 부처별로 관리규정을 제정 · 운영하고 있으며*, 부처 간 상이한 규정으로 인하여 연구현장의 혼란을 야기
  - 공통규범인 '공동관리규정'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준용하여 규정간의 부정합 및 실효성 문제 노정

    * 현재 총 19개 부처가 379개의 연구개발관리 규정(법 97건, 시행령 97건, 시행규칙 74건, 규정 111건)을 운영

- 각 부처의 규정을 공동관리규정 중심으로 표준화하여 통일성 제고('13.1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공동관리규정에 명시된 원칙은 각 부처가 통일적으로 이행
  - 부처별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공동관리규정에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처별로 자율 정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연구관리절차별 세부 연구관리 기준을 담은 범 부처 공통 연구관리 매뉴얼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7항〉
>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 · 보호 · 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나. 기본방향

- 각 부처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 · 운영하는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비교 · 분석하여, 연구관리 단계별 수요자(연구자)의 이해를 위한부분과 표준화 시키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

- 기획 · 선정 등 부처별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내용은 연구관리 규정과 연구관리지침에 정한 사항을 연구자나 연구관리자가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
- 협약 및 연구비 집행관리, 정산 등 부처별 절차 및 방법 등이 상이함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별 통일이 필요한 부분은 표준화 수행

* 부처별 특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 각 부처별 하위지침에 명시 권고

다. 추진전략

○ 범 부처 연구관리 기준* 표준(안) 마련

-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세부 연구관리 기준을 비교 · 분석하여 설명위주로 작성되어야 할 부분과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하되(전문가 자문단 활용),
-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규율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표준(안)을 만들고(부처협의 진행),
- 특정 부처만 운영 중인 사항이더라도 투명한 연구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인 경우 표준안에 포함 · 운영

* 훈령 · 지침 및 소관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작성 · 배포 한 연구관리 매뉴얼 등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연구비 사용기준

2. 추진방법

가. 매뉴얼 작성 추진방법

○ 규정 및 제도 조사 · 분석

- 각 부처 연구관리 기준 조사 · 분석 실시
- 부처별 쟁점사항 도출

○ 전문기관 법령 · 제도 담당자 및 연구현장 연구관리 전문가 자문

- 연구관리 전문기관(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기관) 담당자, 대학 · 출연(연) 연구관리 부서 담당자 등 5명 내외
- 자문위원 별로 연구관리 분야별 담당을 선정하여 표준화(안) 작성 지원

○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 상정

-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 안건상정 및 협의

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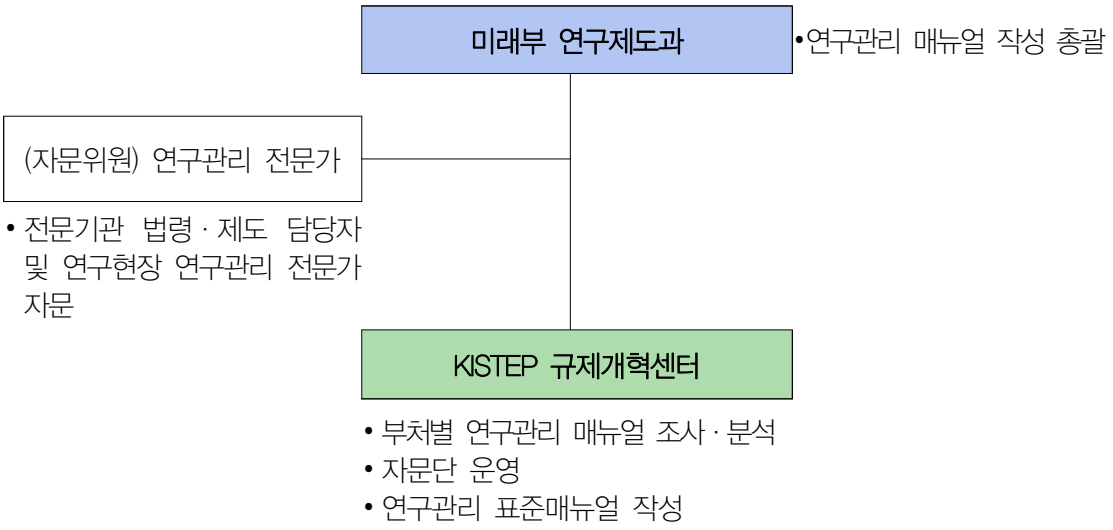

○ 자문단 구성

구분	소속	부서 및 직위	성명
연구관리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기획총괄팀 과장	배찬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책임연구원	이주훈
대학	성균관대학교	연구진흥팀 계장	장동익
출연(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관리2팀 팀장	김형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사업관리팀 팀장	박진선
기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과관리팀 팀장	김승군

다. 추진경위

○ '14. 3월 초 : 연구관리 매뉴얼 기본계획작성

○ ~'14. 3. 17 : 부처별 연구관리제도 현황분석

○ ~'14. 4월 : 매뉴얼에 대한 분류 체계화 및 1차 조사 · 분석(전문가 자문)

○ ~'14. 5월 : 유관기관 검토(부처협의)

○ ~'14. 6월 : 연구관리 매뉴얼 초안작성

○ ~'14. 5월 : 유관기관 검토(부처협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설명회 진행(2014.11.25/27)

-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2014.11.26.)
- '14. 12. 2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배포
- 적용시기 : 2015.1.1 이후 부처별 소관 규정 개정이후부터 적용

3. 추진실적

가. 표준매뉴얼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및 연구관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 과제공모 및 공모정보 제공, 연구계획서제출, 협약 및 연구비청구, 연구과제등록, 연구계획 변경 및 승인, 결과보고, 사용실적보고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절차 별로 부처별 규정이 불일치하여 연구현장에 혼란을 주는 쟁점에 대해서는 표준화 작업 수행

  – 매뉴얼이 기 작성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업데이트하여 별도 첨부

  *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기술료제도, 학생인건비, 보안매뉴얼 등

〈표 4-1〉 부처별 규정 불일치 사례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용어정의	출연금의 정의 및 전문기관–전담기관 용어 상이 주관연구책임자, 지정공모, 자유공모, 계속과제 등 공동관리 규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추가로 사용	
과제선정시 우대기준	대부분의 부처에서 우대기준을 다르게 적용 산업부, 중기청 등은 자체 인증제도(세계일류상품, 이노비즈 등)와 연계하여 기준마련 ※ 반면 감점기준은 공동관리규정과 대부분 유사	
연구비 관리	연구비 지급방식, 계상기준 등이 부처 간 상이 연구비 정산절차 및 증빙서류 등이 부처 간 상이	– 연구비표준매뉴얼 별도 자료로 첨부 – 연구비표준매뉴얼 이외의 내용은 본문내 작성
과제협약	협약체결 및 변경시 관련서류가 과다하고 부처별로 상이 공동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해약사유 과다 설정(산업부, 중기청)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관련 기준이 부처별로 상이 산업부의 경우 사업비 환수 외에 제재부과금 제도 운영	
기술료	관련 기준이 부처별로 상이	별도자료로 첨부
학생인건비	부처별 학생인건비 인정여부가 상이	별도자료로 첨부

나. 주요내용

○ 본 매뉴얼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과 R&D수행 전(全) 주기에 대해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그림 4-1〉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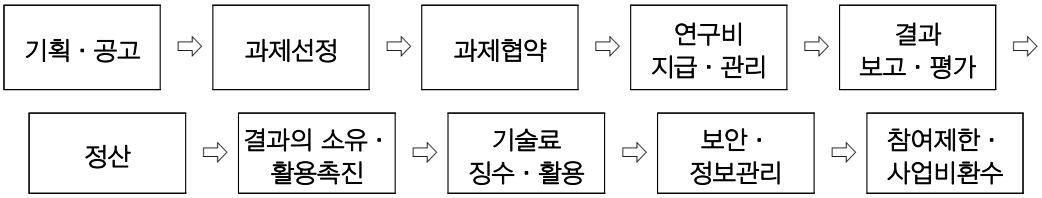

- 제1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의 작성배경과 목적, 적용범위와 근거조항 및 구성에 대해 정리함
- 제2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의와 법령체계, 용어정의, 추진체계에 대해 정리하고, 용어에 대한 부처별 표준화(안)을 제시함
- 제3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공통내용을 정리하였고, 참여자격, 가점 및 감점, 협약체결 및 변경 서류, 협약해약 사유, 이의신청제도, 제재사유 및 부과기준에 대한 부처별 표준화(안)을 제시함
- 제4장에서는 연구비관리 제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기술료제도 및 보안관리에 대해 정리함

다. 주요 표준화(안)

1) 국가연구개발사업 용어 표준화(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통일

- '전담기관'은 연구성과의 등록·기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리

  * 공동관리규정 [별표 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등록·기탁기준 및 절차) 명시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기관'으로 통일

-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과 연구를 함께 수행하기 위해 참여하는 협동연구기관, 위탁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리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위탁연구기관'으로 통일

※ 연구개발예산의 명칭은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한 대로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라고 사용하고, 환수조치 할 경우는 '사업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표준화(안)

- 부처별 운영중인 규정의 참여자격 '지원제외조건'에 대한 7개 공통기준을 도출하고 내용을 표준화
- 우수 기술을 보유한 소자본 벤처 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를 제외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참여 요건 완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표준화(안)

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3)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점 및 감점 표준화(안)

- (공통 적용사항 도출) 부처별 유사하고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가점 및 감점 항목을 선별하여 통일화 하되, 산업별/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부처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가점 및 감점 항목 조정
  - 현행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한 가점 및 감점 항목과 각 부처별 항목을 비교 검토하고 유사한 내용은 공동관리규정의 내용으로 표준화

가점 및 감점 표준화(안)

구분	기 준
가점 항목	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최종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4.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감점 항목	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 또는 불성실중단 및 불성실수행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점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4) 협약 체결 서류 표준화(안)

- (협약 체결양식 표준화) 필수 협약서식과 관련서식으로 2원화하여 분류하며, 필수 협약서식은 '표준협약서'와 '연구개발과제 계획서'로 한정
  - 관련서식 중 계약 당사자를 위한 필수서류 등은 별도 온라인 등록으로 표준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필수 협약서식	협약 관련서식
o 표준협약서 o 연구개발과제 계획서	o 기관등록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o 기업 고유서식 (필요시) – 신용상태 · 정보제공 · 거래내역조회동의서, 위임장

– 단순 안내를 위한 자료*등은 협약양식에서 제외하고 별도 공지

* 연구노트 작성요령, 윤리자체규정, 협약변경 사유별 처리기준, 계약자 확인을 위한 참여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RCMS를 위한 전자문서 수신동의서 등 사업 공지를 통한 개별 문서들은 별도 사업별 안내를 통해 협약 진행

○ (주관기관 자격관리 → 서류 중복제출 감소)

– 관련 서식 중 계약 당사자를 위한 필수서류 등은 기관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등록으로 표준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단, 기업의 재무상태 건전성 등 파악을 위해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연구협약관리시스템 개선 → 오프라인 서류 감소)

– 오프라인으로 협약관리를 진행하는 기관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온라인 협약관리 방식으로 개선

※ 오프라인서식을 스캔하여 사용하는 방식 → 연구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변경 신청 프로세스 모듈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

5)협약 변경 서류 표준화(안)

○ (협약변경 서식의 간소화)

– 협약변경 시 기관별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변경 신청서 및 변경사유 (의견)서 양식의 표준화(안) 마련(별첨)

(별첨) 협약변경 표준 신청서

협약변경 신청서

<table>
<tr><td rowspan="8">대상과제
개 요</td><td>과제번호</td><td colspan="2"></td><td>예산연도</td><td colspan="2"></td></tr>
<tr><td>사 업 명</td><td colspan="5"></td></tr>
<tr><td>과제구분</td><td colspan="5">□ 사업단 □ 연구단 □ 일반과제</td></tr>
<tr><td>과제명</td><td colspan="5"></td></tr>
<tr><td>주관연구기관</td><td colspan="2"></td><td>주관연구책임자</td><td colspan="2"></td></tr>
<tr><td>해당연차
연구기간</td><td colspan="2"></td><td>참여기업</td><td colspan="2"></td></tr>
<tr><td>해당연차
연 구 비</td><td>정부</td><td>천원</td><td>민간</td><td>천원</td><td>계</td><td>천원</td></tr>
<tr><td colspan="7">OOOO사업 운영규정 OO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3">변경내역 및 변경사유</td></tr>
<tr><td>변 경 전</td><td>변 경 후</td><td>변 경 사 유</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붙임 : 변경사유(의견)서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ㅇ ㅇ ㅇ ㅇ 장 귀하</td></tr>
</table>

붙임

변 경 사 유 (의 견) 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해당 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책임자 의견)

주관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6) 협약 해약 사유 표준화(안)

- (공동관리규정 협약해약 사유로 일원화) 부처별로 기술한 세부적인 추가 해약 조항을 공동관리규정으로 일원화 추진
  - 모호하고 추상적인 주관기관의 장의 협약해약 사유는 부처별 삭제 유도
- (공동관리규정 내 협약사유 개정 및 신설)
  -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 반영하여 개정
  - 참여기업 부담금액에 대한 규정과 부정한 방법에 의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 대한 해약사유 신설

〈 공동관리규정(제11조제1항제1호) 개정(안) 〉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된 경우,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및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 공동관리규정(제11조제1항제10호~11호) 신설(안) 〉

10.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이 참여기업 부담금액 미 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별첨)

현행(공동관리규정 제11조 제1항 각호)		개정안(협약해약사유 표준화(안))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연구개발 목표상실	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연구개발 목표상실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된 경우,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및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협약위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협약위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수행포기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수행포기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수행지연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행지연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 중단조치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 ·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연구개발 중단조치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 ·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연구수행 능력상실	부도 · 법정관리 ·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수행 능력상실	부도 · 법정관리 ·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리 문제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리 문제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신설〉		참여기업 부담금액 미이행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이 참여기업 부담금액 미 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설〉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7)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의신청제도 표준화(안)

- (이의신청 범위 명확화) 이의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화 및 사전 고지

〈이의신청 범위 예시(과제평가의 경우)〉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연구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위원회 심의 강화) 이의신청 심의는 가능한 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는 관련과제 선정평가 시 참여위원은 배제함

- (이의신청 대상, 절차 등 표준화) 전문기관별로 상이한 이의신청 대상, 절차, 신청기한, 신청횟수 및 이의신청 양식 등 구체화 및 표준화

이의신청 관련 항목별 표준화(안)

◇ **이의신청 대상** : 연구개발과제 선정·중간·최종평가결과, 연구비 정산 결과, 제재조치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
※ 기타 기술료, 협약해약 사항 등은 해당 전문기관 관련 규정에 따름

◇ **이의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검토	⇒	심의위원회	⇒	결과통지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이의신청 기한** :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이의신청 횟수** : 이의신청은 1회에 한정

◇ **이의신청서 양식** : (별첨)

(별첨)

이 의 신 청 서

1. 과제현황

이의 신청 분야	선정 평가	중간 평가	최종 평가	정산 결과	제재 조치	기타

과제코드				
사업구분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및 연구비	총 연구기간	정부(A)	민간(B)	계(A+B)
참여기업				
상 대 국 (국제공동 연구시)		상대국 연구기관		

2. 결과 통보일 :

3. 결과 접수(통보 받은)일 :

4. 결과 :

5. 이의신청 사유 :

상기과제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연구기관의 장 : (직인)

8)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 표준화(안)

- 공동관리규정의 8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을 기준으로 부처별 규정의 사유별 상세 기준 제시
  - 부처가 임의로 참여제한 기간을 경감할 수 없도록 함
  -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연구개발 관련 규정상의 기준을 사례 형태로 제시하되, 예외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
  - '연구비 용도외 사용 금액'에 따른 제재 기준 외 '연구비 용도외 사용 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제시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면제	-
나. 실패,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1)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를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경우 2)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3)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면제	-
4)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경감	
다.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해외인 경우 5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비공개 최종보고서 임의 공개 포함)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다. 그 밖에 보안관리, 비밀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가. 포기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1)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 2) 홍수 ·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면제	-
나. 총 수행기관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
다.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이내
가. 미납의 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홍수 ·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2) 시장 · 표준 · 법 · 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3)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에 의해 실용화 지연 및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등으로 납부연장 요청이 승인되는 경우	면제	-
나.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년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다.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지한 경우	2년	
라.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 파산의 경우	2년	
2)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2년	
3) 폐업, 부도의 경우	2년	
4)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2년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2년	-
바. 기술료납부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년	
사. 해당 기관(기업)이 경상기술료 보고서/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감 가능	5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流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3년	편취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
다)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거짓·과다계상 집행금액
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회수한 금액
마)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바)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부정집행금액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점검시 계정에 회복)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전용금 이내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2년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4년 이내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流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4년	편취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
다)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 · 설치 · 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거짓 · 과다계상 집행금액
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회수한 금액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마)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바)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부정집행금액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점검시 계정에 회복)하여 사용한 경우	3년	전용금 이내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3년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5년 이내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流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5년	편취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
다)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거짓·과다계상 집행금액
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회수한 금액
마)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바)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부정집행금액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점검시 계정에 회복)하여 사용한 경우	4년	전용금 이내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4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
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	면제	-
나.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가. 외부 압력, 중복 수행, 기(旣) 개발품 신청,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진도보고서(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다.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라.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나.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 회생·파산의 경우	1년	회생·파산 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2)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1년	해당 금액
3) 폐업, 부도의 경우	1년	해당 금액
4)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가)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
나)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1년	해당 금액
5)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해당 금액
6)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
7)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
다.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라.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마.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바.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사.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중단되거나, 최종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1년	-
아. 그 밖에 중요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2년 이내	-

제2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

1. 추진개요

■ 2009년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구(舊)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주요 연역

〈표 4-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주요 연혁

일자	내용
2008. 12.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시행근거 반영
2009. 1. 30	2009년 풀링제 시행대학 26개교 고시(교과부 제2009-5호)
2010. 3. 9	2010년도 풀링제 시행계획 범부처적 시행 확정 · 통보 ※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등 9개 부처 255개 사업에 대해 풀링제 적용
2010. 5. 4	2010년 풀링제 시행대학 14개교 고시(교과부 제2010-23호)
2011. 2. 10	2011년 풀링제 시행대학 10개교 고시(교과부 제2011-8호)
2011. 12. 2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확정
2012. 5. 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추진근거 규정화
2013. 1. 9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고시(국과위 제2013-1호)
2013. 5. 21 ~ 6. 5	2013년도 상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총 54개 기관 대상)
2013. 7.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 지정취소 고시(미래부 제2013-24호)
2013. 10. 15 ~ 10.24	2013년도 하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총 25개 기관 대상)
2013. 11. 2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 지정취소 고시(미래부 제2013-178호)

-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미래부 고시 제2014-21호 2014.3.7. 일부개정 · 시행)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학생

-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하고 잔액의 반납 및 정산 면제
- 연구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만들어 해당 계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 연구책임자 계정 내 학생연구원에게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학생인건비 일부 지급 가능

■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하여 학생연구원 운영에 유연성을 제고하고 학생인건비 부정 집행을 근절

- 연구과제 종료 후 후속과제가 없을 경우 대학 연구실 내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학생연구원을 탄력적으로 운영
- 학생인건비 집행을 투명화하여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재분배하거나 공동 사용하는 등의 관행을 근절

2. 추진방법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신청대상 기관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A등급을 받은 대학
  - 학연협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정연구기관**중 미래창조과학부가 동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하여 시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근거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신청자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함
  - 통합관리기관 신청시 지정신청서, 전산시스템 구축완료보고서(자체점검표) 제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대상과제
  - 「공동관리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대상과제로 함

■ 연 2회(상반기, 하반기)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 점검 실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 체계

〈그림 4-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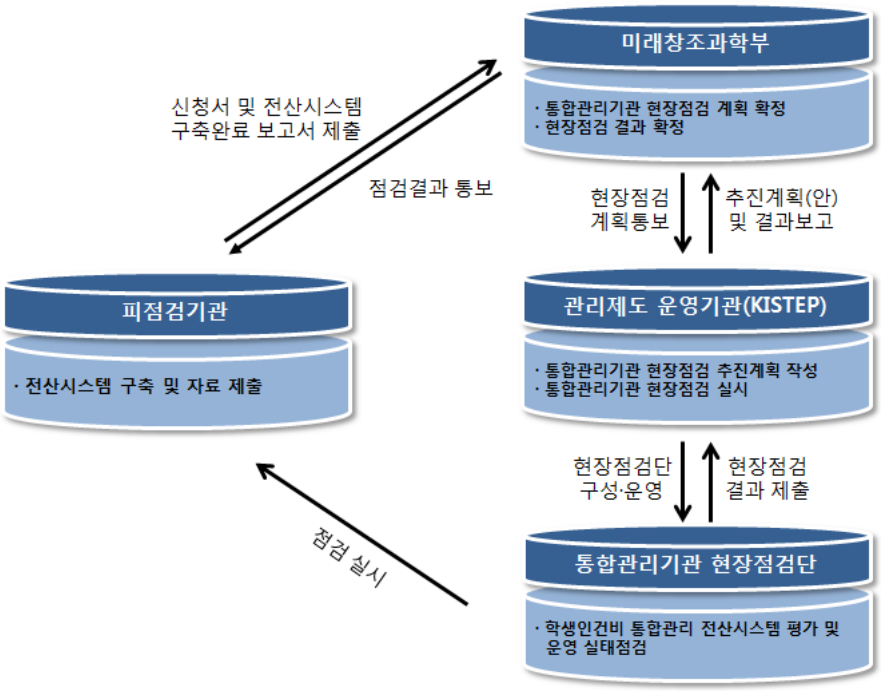

- 자율성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연 2회의 범위 이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중대한 잘못 발견 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과도한 잔액반납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률 제한

2014년 상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자시스템 구축 점검내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표 4-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미래부 고시 제2014-21호「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별표2)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세부내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현황 관리가능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 설정	■ 연구책임자별 계정 설정 및 과제별 수입·지출 현황 관리가능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관리	■ 연구책임자별 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연구책임자 : 학생인건비 지급 발의 → 연구관리 부서 :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학생 지급계좌 등록	■ 학생연구원 1인 1계좌 등록관리 * 권장사항 : 학생연구원 본인이 직접 계좌 등록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관리	■ 학생연구원 1인이 참여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월별 참여율 100%(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 연동) 사전 방지가능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 과제별 학생인건비의 지급액·지급일 등 지급내역 확인 및 인건비를 지급받은 학생연구원의 지급내역 직접 확인가능
	학생인건비 변경 관리	■ 학생인건비 예산의 변경현황 조회 가능

※ 선입선출(first in-first out)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과제에서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등록 가능

2014년 하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현황 점검

- 학생인건비 부당 집행 현황, 집행비율 등 자체점검결과 서면접수(~8월말)
- NTIS 상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서면제출자료 검토(8월말~9월중)
- 검토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자료 접수 및 확인(9월중~10월초)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현황점검 전략회의(10월중)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현황 점검내용

〈표 4-4〉 점검내용(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제10조)

점검내용	점검방법	피점검기관 준비사항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 점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에 따라 시연 준비(컴퓨터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터 등 준비)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① NTIS 등록과제 및 대학 자체 DB에서 점검대상 과제내역 확인 ※ '13.1.9 이후 공고(또는 시작), '13.12.31 이전 종료과제 중 학생인건비 계상금액이 있는 과제 ②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학생인건비 지급내역(지급과제, 지급대상월, 지급일, 지급액 등)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③ 학생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후 수정사항 발생 시 집행비율 재산정	사전에 배포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과제내역 및 학생인건비 지급내역(지급과제, 지급대상월, 지급액, 지급일 등) ※ 별도로 인쇄자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평가위원용 컴퓨터(4대)에 각각 전자문서로 준비 ※ 학생인건비 지급내역 중 일부에 대해 전산시스템 상의 실제 데이터 조회 예정(전산시스템 시연시스템 활용)
학생인건비 잔액 과대발생 방지를 위한 소급지급 여부	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점검을 위해 준비된 지급내역에서 월 2회 이상 지급건, 기준연도 종료 임박 과다 지급 내역 확인 ② 학생인건비 소급지급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건이 잔액 과대발생 방지와 무관한지 여부를 판별	동일 과제에서 동일 학생연구원에게 월 2회 이상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2013.12.31.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의 지급내역 및 소급지급사유 ※ 별도로 인쇄자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평가위원용 컴퓨터(4대)에 각각 전자문서로 준비
학생인건비 회수 · 공동사용 관련 사업비 환수액	당해 점검 시 해당사항 없음	당해 점검 시 해당사항 없음

▢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단 구성

- ○ 미래부(2인), 대학 소속 전문가(2인), KISTEP 담당자(1인)로 구성
  - – 전문가는 연구관리부서 업무* 경력자 또는 유사서비스 설계 · 운영 경험자를 활용

    * 연구기획 · 예산, 협약, 정산, 평가 · 진행관리, 재무 · 회계, 성과, 학생인건비 관리 · 운영 등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요건
  - – (학생인건비 환수처분) 운영현황 점검일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회수 및 공동 사용 관련 연구비 환수처분을 받은 금액이 운영현황 점검일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지출한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 원 이하 : 2천만 원/ 운영현황 점검일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지출한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 원 초과 : 학생인건비 총액의 2% 를 초과한 경우
  - – (학생인건비 집행률 저조)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전산시스템 미구축) 학생인건비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학생인건비 소급 지급)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인건비를 소급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시 사후조치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관련 사항

- 지정취소일 현재 종료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은 해당과제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반납
- 지정취소일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는 반납하지 않되, 과제 종료 후 정산하여 잔액을 반납

3. 추진실적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

○ 중앙행정기관은 사업 공고 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 사업임을 명시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제도 적용 여부를 포함

○ 지정기관은 해당 연구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월 인건비 지급 상한액: (학사) 1,000천원, (석사) 1,800천원, (박사) 2,500천원, (박사후연구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 과정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연구관리부서는 해당기관 소속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개정을 개설하여 통합관리
-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은 연구비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각 과제 계정과 연동하여 수입 · 지출 및 지급내역 확인 등이 가능해야 함

○ 학생인건비 지급신청

-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월별 지급상한액을 고려하여 연구관리부서에 지급 신청

- 학생인건비 지급
  - 연구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의 신청과 연구관리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학생인건비 이체
  - 과제별 학생인건비를 당초 계획 대비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필요
  - 학생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는 학생인건비를 모두 소진한 후 5년간 기관내부 규정에 따라 보존

학생인건비 정산

-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제출 시, 연구관리부서는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
- 중앙행정기관은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를 정산하지 않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제도 운영현황*과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년 2회 범위에서 점검

  * 학생인건비 집행 실적, 학생인건비 회수 및 공동 사용으로 인한 환수처분 내역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 대상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신규신청 기관 및 신청 자격(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제4조)
  -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A등급 또는 연구비 중앙관리 우수인증 획득 및 전산시스템 구축
  - 출연(연): 학연협동 석 · 박사과정 운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 특정(연): 석 · 박사과정 운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 2013년도 상 · 하반기에 지정된 기존 기관들 대상 현장점검은 2014년도 하반기에 실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서면점검 · 검토내용

- 학생인건비 부당 집행 현황, 기관 평균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전산시스템 개편 기관 대상)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점검
- 통합관리기관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NTIS 과제 정보와 대조하여 불일치 사항에 대한 소명 및 보완

2014년 하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현황 서면점검

- 통합관리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환수현황

※ 작성대상 : 2013.1.9. (신규지정된 경우 지정고시일) 이후 공고된 과제 중 2013.12.31. 까지 환수처분을 받은 건(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적용 과제 대상)

2014년 상 · 하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현장점검 실시

- (상반기) 5.8(목) ~ 5.12(월) 간 4개 기관 대상 현장점검 실시
  - 2014년 신규신청 4개 기관 현장점검
- (하반기) 11.5(수) ~ 11.20(목) 간 6개 기관 대상 현장점검 실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현황점검 전략회의」를 통해 자체점검결과가 미흡한 기관 중 전산시스템 개편 여부, 누락 및 오류과제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 기관을 선정

2014년 상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신규신청기관 현장점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확인
  - 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등
  - Ⅱ.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학생지급계좌등록, 학생연구원 참여율 관리 등

※ Ⅲ.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의 운영관리' 부문은 지침 개정으로 구축요건을 간소화하며 삭제

- 상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현황 현장점검 결과
  -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가(○), 부(X)로 구분하여 현장점검

〈표 4-5〉 2014년 상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현황 현장점검 결과

구분	평가항목	점검대상 (○: '가', X: '부')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천대학교	계명대학교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가.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	○	○	○
	나.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X	○	○	X
	다.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X	○	X	○
	라.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	○	○	○
2.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가. 학생지급계좌등록	X	○	○	○
	나. 학생연구원 참여율 관리	X	○	X	○
	다.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	○	X	○
	라. 학생인건비 변경 관리	○	○	○	X
종합 결과		4개 항목 부적격	전부 적격	3개 항목 부적격	2개 항목 부적격

2014년 하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의 지정취소 요건 해당여부 등 운영현황 점검

- 서면점검결과 미흡한 기관 중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 하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현황 현장점검 결과
  - 문제없음(◎), 필수사항 보완필요(X), 부가사항 보완필요(○), 필수사항 보완완료(△)로 구분하여 현장점검

〈표 4-6〉 2014년 하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현황 현장점검 결과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경남 대학교 (11/05)	동아 대학교 (11/06)	연세 대학교 (11/12)	포항 공과 대학교 (11/13)	전북 대학교 (11/19)	한국 과학 기술원 (11/20)
전산시스템 ※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가.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	◎	◎	◎	◎	X
		나.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	◎	◎	◎	◎	○
		다.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	◎	◎	◎	○	○
		라.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	◎	◎	◎	◎	◎
	2.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가. 학생지급계좌등록	X	◎	◎	◎	X	◎
		나. 학생연구원 참여율 관리	X	○	◎	X	◎	○
		다.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	◎	X	◎	◎	X
		라. 학생인건비 변경 관리	◎	◎	◎	◎	◎	◎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100.00%	99.18%	97.22%	81.14%	재산정 필요	99.56%
학생인건비 잔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한 소급지급 여부			◎	◎	◎	◎	◎	◎
종합 결과			전산시스템 2개 항목 보완필요	이상 없음	전산시스템 1개 항목 보완필요	전산시스템 1개 항목 보완필요	전산시스템 1개 항목 보완필요	전산시스템 2개 항목 보완필요

※ ◎: '문제없음', X: '필수사항 보완필요', ○: '부가사항 보완필요', △: '필수사항 보완완료'

○ 하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현황 현장점검 지적사항 보완보고서 검토내용

- 점검결과 문제없음(○), 보완완료(△), 보완사항 확인불가(X)로 구분하여 지적사항 보완보고서 검토

〈표 4-7〉 2014년 하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현황 현장점검 보완보고서 검토내용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경남 대학교 (11/05)	동아 대학교 (11/06)	연세 대학교 (11/12)	포항 공과 대학교 (11/13)	전북 대학교 (11/19)	한국 과학 기술원 (11/20)
전산시스템 ※	1.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가.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	○	○	○	○	X
		나.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	○	○	○	○	○
		다.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	○	○	○	○	○
		라.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	○	○	○	○	○
	2. 학생 인건비 지급 관리	가. 학생지급계좌등록	X (12월중 보완예정)	○	○	○	△	○
		나. 학생연구원 참여율 관리	△	○	○	△	○	○
		다.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	○	△	○	○	X
		라. 학생인건비 변경 관리	○	○	○	○	○	○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100.00%	98.70% (조완섭과제 보완필요)	97.22%	81.14%	84.12%	99.56%
학생인건비 잔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한 소급 지급 여부			○	○	○	○	○	○
종합 결과			미보완 사항에 대한 계획서등 제출필요	문제 없음	문제 없음	문제 없음	문제 없음	서면검토로 확인이 어려움

※ ○: '점검결과 문제없음', △: '보완완료', X: '보완사항 확인불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현황

○ 2014.7 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현황

〈표 4-8〉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현황(2014.7.)

구 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비고
'13년 상반기 지정 (총 30개 기관)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13.7.1 ~ '16.6.30
'13년 하반기 지정 (총 17개 기관)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경희대학교, 배재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13.11.25 ~ '16.11.24
'14년 상반기 지정 (총 3개 기관)	계명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7.2 ~ '17.7.1

제3절 기술료 제도 기획 · 운영

1. 추진배경

■ 기술료 제도의 효율적 운용

○ 국가 R&D사업 종료 후 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영리법인은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기술료로 납부

* 징수요율(정부출연금 기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 산업부 등에서는 경상기술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납부기간 장기화 등으로 실제 운용이 미흡

○ 기업의 국가 R&D 참여확대와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액기술료 요율인하 및 경상기술료 제도 확대 필요

▢ 정부 납부 기술료 관련 기준 표준안 마련

- 부처별로 기술료 징수기간, 감면조건, 납부수단 등의 기준이 상이하여 연구현장의 혼선 초래
- 기술료 납부 범부처 표준안 마련 및 부처의 사업특성을 고려한 기술료 감면기준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2. 추진경위

▢ 2013년 12월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통과

- 기술료 부담 완화 추진 및 정부 납부 기술료 관련 기준 표준안 마련
- VIP회의, 규정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각 부처, 연구현장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정부납부기술료 제도개선 보고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입세출내'운용으로 변경

3. 추진실적

▢ 주요내용1. 기술료 제도 개관

▢ 기술료 제도 운영체계

- 기술료 제도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실시의 대가를 징수하는 ①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영리법인)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 또는 제3자실시하여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에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납부하는 ②기술료 납부
- (i) 중앙행정기관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국고 또는 기금에 산입하여 사용하거나, (ii)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참여연구원 보상금,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한 경비, 연구개발재투자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등에 직접 사용하는 ③기술료 사용으로 구분

※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하는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제3자실시하여 징수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정부납부 기술료'로 칭하여 민간 기술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기술료(로열티–Royalty)'와 구분

〈그림 4-3〉 기술료 제도의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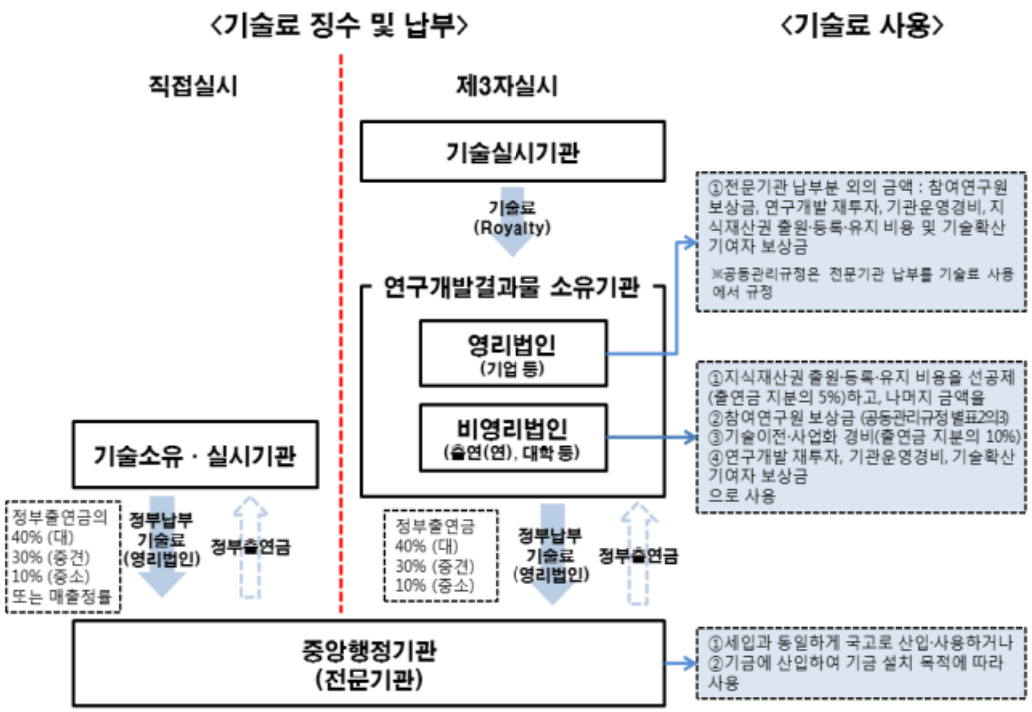

▢ 기술료의 징수 및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제3자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의 규모 및 납부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전문기관에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를 제출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제3자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영리법인의 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40%(대기업), 30%(중견기업), 10%(중소기업)를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한 경우 정액기술료 방식에 따라 영리법인의 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40%(대기업), 30%(중견기업), 10%(중소기업)을 징수,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최초로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의 사용

○ 비영리법인은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에서 지식재산경비(출원 · 등록 · 유지비 등)로 정부출연금 지분의 5%를 우선 적립 ·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

– 참여연구원 보상금 :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10%*. 기술이전 · 사업화 경비 : 정부출연금 지분의 10% 이상.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경비(필요시), 기술이전 기여자보상금 등

〈표 4-9〉 * 참여연구원의 한 해 누적 보상금 20억 원 초과 시 지급 기준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영리법인은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40%(대기업), 30%(중견기업), 10%(중소기업)를 전문기관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참여연구원 보상금, 연구개발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경비,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등 자율적으로 사용

○ 정부(전문기관)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 또는 제3자실시하는 영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정부납부 기술료를 국고 또는 기금에 산입하여 사용

▢ 주요내용2.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2014.2.3.)

▢ 기술료 징수대상

○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영리법인(공동관리규정 개정)

○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부처 특성이 반영된 경우는 부처 특성*과 표준화 방안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

* 산업부, 중기청 : 연구개발 평가결과 '성공인 과제'를 대상으로 징수

○ 징수대상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는 표준화 방안을 참조하여 징수대상 기준을 다른 부처와 유사하게 정비할 필요

기술료 징수금액 관련

- 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대기업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10% 징수 (공동관리규정 제22조제1항)
  - 정액기술료는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모든 부처가 적용하는 기업 유형에 따른 징수금액을 적용할 필요
- 경상기술료 : 매출액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총 금액을 정부출연금 범위 내로 설정 (훈령 · 지침 개정)
  - 경상기술료는 현재 부처에서 정부출연금 범위 내로 운영되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제도를 기 도입한 부처(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제도개선 내용을 토대로 제도 미 도입 부처는 제도 도입을 추진

    * 산업부, 경상기술료 제도개선(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율 인하) 마련
      미래부,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료 징수기간 관련

- 정액기술료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2년 범위 내 연장 (훈령 · 지침 개정)
  - 정액기술료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적정기간 3년 희망)와 중소기업청의 징수기간 제도*를 참고하여 적용할 필요

    * 중기청 : 3년 동안 균등분할 납부, 필요시 2년 범위 내 연장
- 경상기술료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 후 3개월 이내, 경상기술료는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납부(공동관리규정 개정)
- 착수기본료 납부기한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참조하여 현행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를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 후 3개월 이내'로 조정, 기업의 납부부담을 완화할 필요

기술료 감면기준 관련

- 기업의 기술료 납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시 · 조기납부의 경우는 다수 부처에서 적용하는 감면 비율인 40%를 동일하게 적용

기술료 납부수단 관련

- 기술료 납부수단에 '신용카드' 포함

- 기업의 기술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기술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범부처로 확대할 필요

  ※ 현금, 유가증권 및 신용카드 등 이상 3가지 종류 모두 가능(공동관리규정 및 훈령 · 지침 개정)

○ 유가증권의 범위를 가치평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수단인 약속어음, 공증어음 및 신용보증기금증권으로 명확화(훈령 · 지침 개정)

- 주식의 경우 가치평가액 변동이 심하며, 비상장기업 주식의 경우 기업 부도 등의 사유 발생 시 가치소멸에 따른 문제 상존

□ 기술료 납부서식 관련

○ 기술실시 보고서,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 기술료 감면 신청서 등 4종으로 간소화(훈령 · 지침 개정)

○ '기술실시 보고서'는 내용은 유사하나 부처별로 서로 다른 7종*의 양식을 1개의 양식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할 필요

* ①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국토부, 해수부) ② 기술사업화계획서(국토부) ③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미래부, 농진청, 국토부, 해수부) ④ 기술활용보고서(국토부, 해수부) ⑤ 기술료 납부계획서(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환경부, 농진청,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⑥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복지부), ⑦ 경상기술료 납부확약서(미래부, 산업부)

○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와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는 부처별로 유사한 명칭*과 서식을 각각 1개의 양식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할 필요

* '기술료 징수결과보고서',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

○ '기술료 감면 신청서'는 부처별로 내용은 동일하나 서식이 조금씩 다른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서식으로 일원화할 필요

- 기술료 감면에 대한 조건은 부처별로 상이하나, 감면신청 서식은 차이를 둘 필요성이 적어 일원화할 필요(현 양식이 대체로 유사함)

□ 경상기술료 제도 표준화(2014.8.8.)

○ 부처별 규정 개정 시 착수기본료 및 경상기술료의 표준화 징수요율을 반영하고 '16.1.1.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

-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부처별 시범운영 기간을 가이드라인 통보후~'15.12.31까지 운영

※ (착수기본료 징수요율) 출연금 기준, 중소기업 2%, 중견기업 6%, 대기업 8%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1%, 중견기업 3%, 대기업 4%

■ 주요내용 3. 기술료 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2013.10.10.)

○ (발명자)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기여한 자

○ (기여자)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기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에 소속된 자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시장성평가, 가치평가, 기술소개서 작성 등을 통해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자, 미활용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설명회 주관 및 참여, 국 · 내외 기업 대상 홍보 등을 통해 실시기업을 발굴하는데 기여한 자,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경상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연구개발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적발하거나 기술적 · 법적 지원을 통해 권리확보에 기여한 자, 연구개발결과물과 관련한 심판 · 소송 · 중재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한 기술료 징수에 기여한 자, 기타 연구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기여자로 인정하는 자,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를 통해 성과 배분을 받은 연구원은 기술이전 기여자 대상자에서 제외, 주관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에 속한 자는 기관의 기여 대상자에서 제외

※ 타 기관에 속한 자는 별도로 체결된 중개계약 조건에 따라 보상

○ 발명자, 기여자 범위에 속한 사람 중 '(가칭)기술료 보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발명자)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 (공동관리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 (기여자) 정부출연금 지분의 10% 기준으로 기관 자율로 결정(평가위원회)

– (발명자, 기여자 공통) 발명자, 기여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결과물 또는 기술이전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일률 또는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수급자에 대한 지급 금액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면 3개월 이내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조치. 단, 기술료를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받았을 경우는 유가증권의 현금화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가칭)기술료 보상 평가위원회 구성(발명자, 기여자 공통) 및 운영 시 고려사항

– (임무) 평가위원회는 기여자 선정, 지급 기준 마련, 기여도 산정 등 기술료 수입을 통한 보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

- (구성) 평가위원회는 주관연구기관의 부기관장 또는 임원 중 기관장이 지정한 자, 기술이전 ·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1인(1개 과제 평가 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중 1인, 2개 이상 과제를 동시에 평가 시는 가장 많은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중 1인), 참여연구원과 기관 내 감사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의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할 간사는 기술이전 ·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중간관리자로 함
- (대상자선정) 해당 연구개발결과와 관련하여 발명자 및 기여자 대상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충분히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지 여부
- (지급 기준)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무 부처 및 해당 부처의 관련 규정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지 여부, 단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별도 사유 첨부
- (지급 절차) 보상금 지급 기여자의 기여 정도의 객관적, 합리적 논리적 산출 근거의 확보와 보상금의 적절한 지급 기한 설정
- (기타) 발명자 및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등을 위한 연구기관 내부의 지침 또는 규정 등이 있어 충분히 객관적, 합리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관련(2014.8.8.)

- 경상기술료 징수 금액은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④ 경상기술료 징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전문기관은 영리법인이 제출한 ①~③항의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매출액에 대한 검증을 실시
  -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은 영리법인이 국세청 세무신고를 위해 작성한 서류를 통해 확인,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은 영리법인이 제출한 '재고자산수불부'를 통해 기업 전체의 제품 판매금액 중 연구개발결과물의 제품 판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는 연구개발에 투입된 총사업비(영리법인이 추가로 투자한 금액 포함) 중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

관서운영비 집행 관련(2014.8.8.)

- 비영리법인의 '기관운영경비'의 집행은 '기술사업화 또는 연구개발 재투자'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운영
  - 최근 3년간의 통계조사 결과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사용 시 기관운영경비 집행이 늘어나고 연구개발재투자 비용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술료의 연구개발 선순환 집행을 저해하는 사례 발생

제4절 R&D도우미센터 운영

1. 운영개요

▢ 설치목적

- ‘연구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08.7월)’ 등에서 연구자들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의견제시 창구 필요성 제기
  - 입법예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에 일선 연구현장의 연구자들이 적시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이에 국가R&D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법령과 제도에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의 상시적인 제공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의 창구로서 2009년 4월 ‘R&D도우미센터’를 개소

▢ 추진경과

- ’09.3 ‘국가R&D 제도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
- ’09.3~4 R&D 도우미센터 홈페이지(www.rndcall.go.kr) 구축
- ’09.4.28 R&D 도우미센터 개소
- ’09.7~12 R&D 도우미센터 홈페이지 수정 · 보완
- ’10.1~2 R&D 도우미센터 홍보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대상
- ’11.3 도우미센터 운영기관 변경(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 ’11.4 도우미센터 상담사례집 발간
- ’12.4 2012년 R&D도우미센터 상담사례 발간
- ’14.5.27~6.30 R&D도우미센터 개편

주요내용

- (전화/온라인상담) 국가R&D사업관리 중 발생하는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질의·애로사항의 신속한 상담처리

  * 전화 : 02-1800-7109 / 홈페이지 : www.rndcall.go.kr

- (상담결과 활용) 홈페이지 내 유사질의·FAQ 등을 통한 질의응답 공유 확산 및 법령·제도개선 수요로 활용

〈표 4-10〉 접수·처리 절차

질의사항 접수		답변 제공		후속조치
• (대상)국가R&D사업 제도 관련 애로사항 • (수단)전화, 홈 페이지	⇒	• 접수 후 신속하게 답변 •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협의, 전문가 자문 진행	⇒	• FAQ, 유사질의검색서비스 • R&D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 시 검토 및 반영

운영실적

- 상담건수 : '09.4월~'14.12월까지 총 8,917건(전화6,571, 온라인2,346)
  - 2009년 R&D도우미센터가 개설된 이래 총 8,917건 처리되었고, 이중 전화로 처리된 건수는 6,571건(73.7%)이며, 온라인으로 처리된 건수는 2,346(26.3%)
  - 이를 연도별로 살펴볼 때, 2009년도에 355건(4.0%), 2010년도에는 656건(7.3%), 2011년도에는 1,013건(11.5%), 2012년도에는 2,299건(25.7%), 2013년도에는 1,994건(22.3%), 2014년도에는 2,600건(29.2%)
  - 특히 2014년도에 가장 많은 상담 사례가 발생한 사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이전의 내용과 많은 변화가 있어 상당 사례가 증가
  - 아울러, 소속기관별로 살펴볼 때, 기업체의 상담사례가 가장 낮은 반면 기타 및 정부부처, 대학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산업계에 대한 홍보 방안 등 필요

〈표 4-11〉 연도별 상담실적

구분	'09. 4~12	'10. 1~12	'11. 1~12	'12. 1~12	'13. 1-12	'14. 1~12
산	36	31	40	118	85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계수집이 안 되어 합계만 계산
학	103	198	198	445	305	
연	38	67	125	279	164	
관	36	168	353	759	679	
기타	142	192	297	698	761	
합계	355	656	1,013	2,299	1,994	2,600

○ 2009년 상담건수 (전화:243/온라인:112/계: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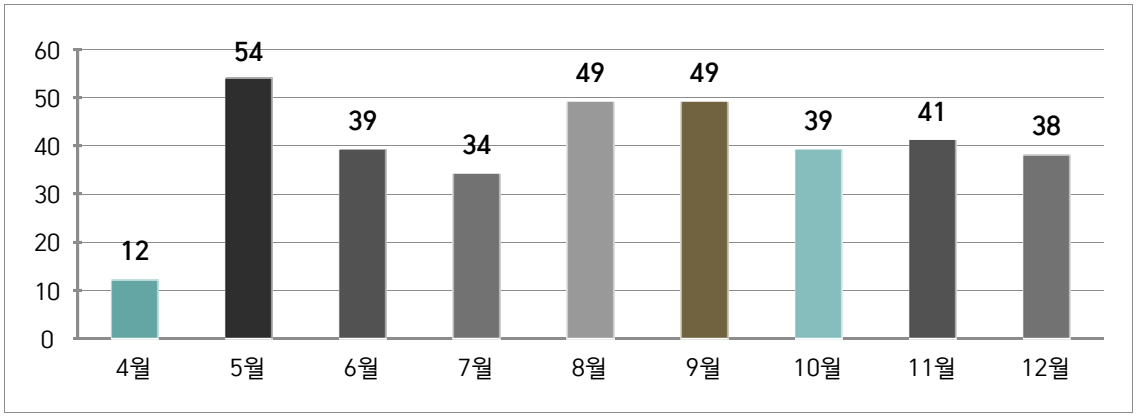

* '09.4.28 도우미센터 개소

○ 2010년 상담건수 (전화:412/온라인:244/계: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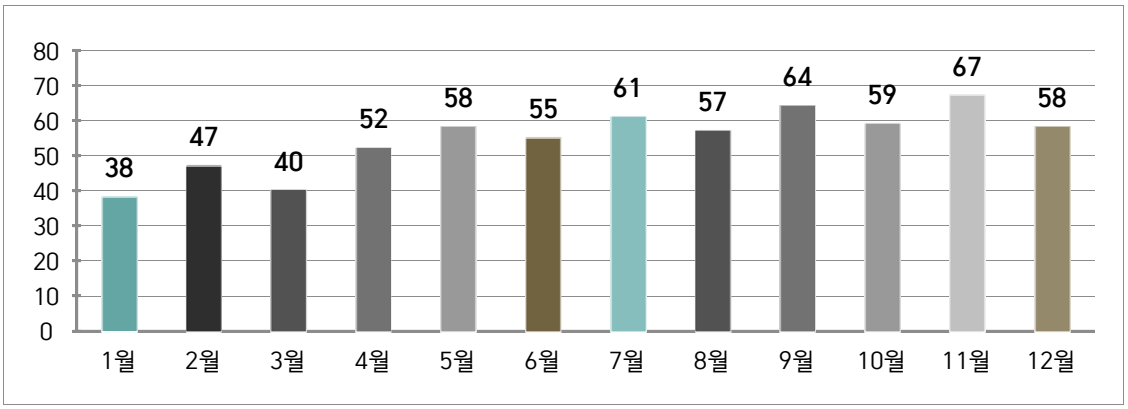

○ 2011년 상담건수 (전화:699/온라인:314/계: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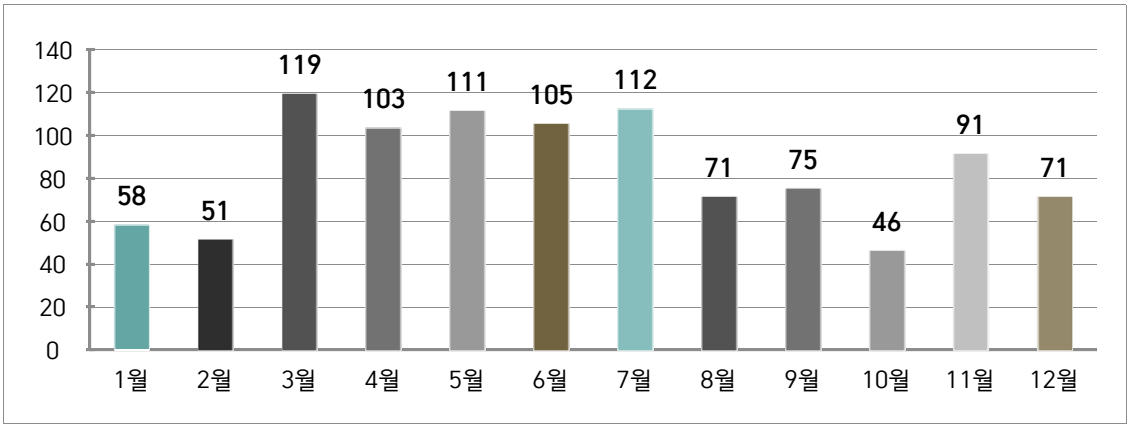

○ 2012년 상담건수 (전화:1,776/온라인:523건/계:2,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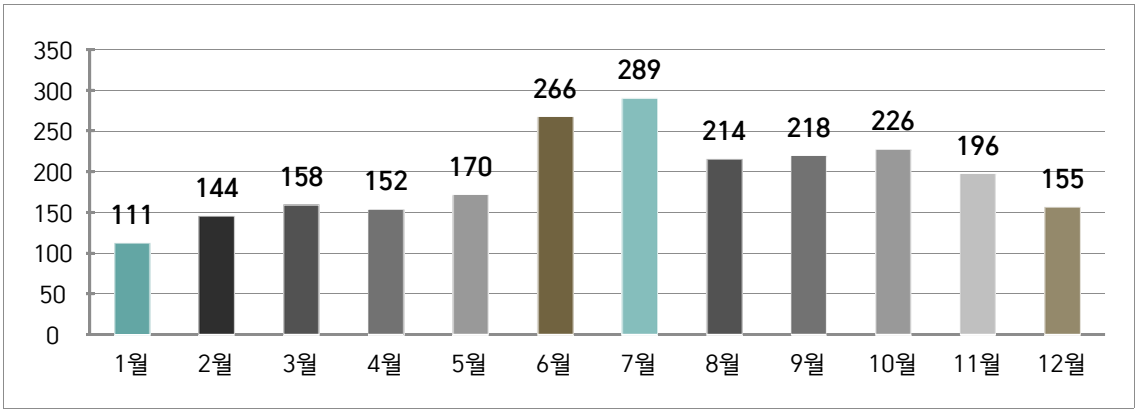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공포('12.5.14) 이후 (특히 6월, 7월) 상담건수 증가

○ 2013년 (전화:1,530건/온라인:464건/계:1,99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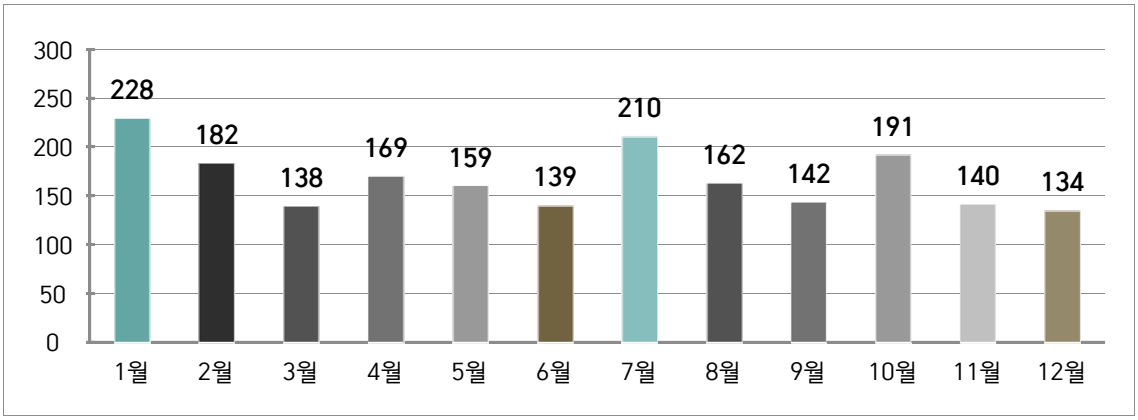

○ 2014년 (전화: 1911건/온라인: 689건/계: 260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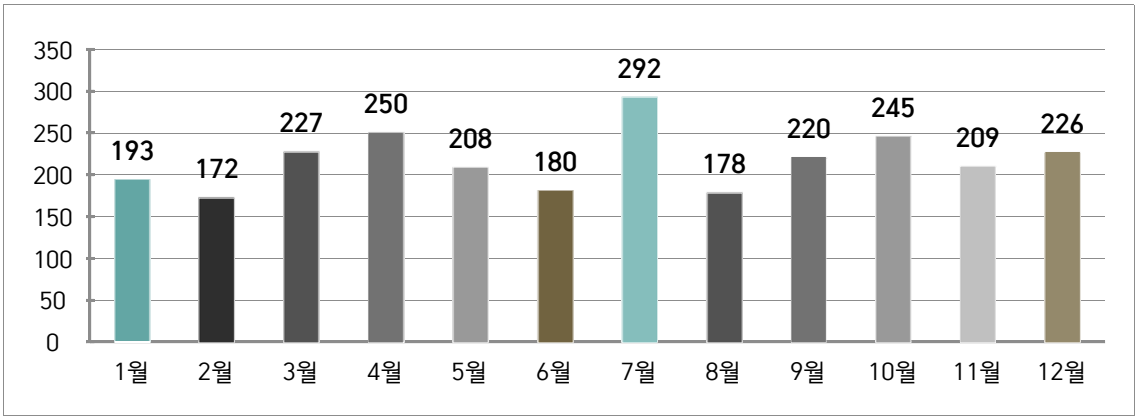

2. 상담사례

○ 질의내용 분포를 살펴볼 때, 연구관리 규정 및 제도에 대한 질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연구비관리에 대한 질의는 상대적으로 적은편.

– 연구비관리 질의사항 중에서는 직접비, 인건비, 기타연구비에 대한 질의사항이 많았으며,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한 질의사항이 가장 적었음

〈표 4-2〉 소속기관, 질의내용별 상담실적 ('09.04~'14.12)

질의내용		질의자 소속기관							
		산	학	연	관	기타	'09~13년	'14	계
연구비관리	인건비	31	165	88	241	212	737	428	1,165
	직접비	28	212	106	197	369	912	556	1,468
	위탁연구개발비	1	3	6	14	5	29	34	63
	간접비	16	150	38	128	146	478	165	643
	기타(연구비)	39	98	68	192	169	566	224	790
연구관리 (규정, 제도)	규정	45	211	157	479	354	1,246	548	1,794
	제도	19	188	35	139	143	524	135	659
	기타(연구관리)	81	176	151	546	476	1,430	427	1,857
기타		50	46	24	59	216	395	83	478
계		310	1,249	673	1,995	2,090	6,317	2600	8,917

3. 홈페이지 개선 실적

가 추진배경

▢ 연구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미흡

○ 제도개선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해 민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시 의견수렴이 가능한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

※ 현재 운영 중인 R&D도우미센터의 경우, R&D법령 · 제도에 대한 질의 · 응답기능만 제한적으로 수행

○ 또한, 제도 개선 이후 실효성 점검 등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미흡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13.12.19)〉

○ 상시적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 운영

– 제도개선 후에도 수시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 · 반영할 수 있는'(가칭) 온라인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

※ 당초 제도개선 취지 ·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 발생시 발생요인 등을 파악하여 수시 환류 할 수 있도록 추진 등

나. 추진경과

□ 출연(연), 대학, 과총, 정부부처 제도개선 수요 조사('13.8~9)

□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제도개선 추진위원회 운영('13.9~10)

* (위원장)미래부 제1차관, (정부위원)산업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8개 부처 실장급 공무원, (민간위원) 13인

○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제도 개선방안 논의 및 조정, 개선과제 추진현황 종합점검 등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심의 ('13.12.19)

다. R&D도우미센터 온라인 개편 방안

□ 개편목적 및 내용

○ (개편목적) 홈페이지 전반적인 디자인 · 메뉴 배치 · 연결 서비스 개선

○ (개편내용) R&D도우미센터의 정체성 강화, 회원가입 및 관리 모듈 수정 · 개발, 기존 기능 일부 조정 및 삭제, 웹 접근성 향상,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 소개, 국가R&D 사업 전반 사항 소개, 각 메뉴의 기능 통합 및 내용 수정, 알림 기능 강화 등

구분	개선내용
공통	ㅇ R&D도우미센터의 아이덴티티 표현 – 시스템의 대표성("도우미" 기능 강조)을 표현할 수 있는 심볼 제작 ㅇ 회원가입 및 관리 모듈 수정 · 개발 – 기존 회원가입 방법 수정(예: 간편가입 또는 회원가입 폐지) 및 이에 대한 관리 모듈 개발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구현 ㅇ 기존 기능 일부 조정 및 삭제 – 타 부처 질문 이관 기능 삭제 및 관련 메뉴 · 관리권한 삭제 등 ㅇ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 다양한 OS환경에서 모두 접근 가능한 웹 표준 준수 – 장애인의 정보접근 수준 향상을 위한 웹 접근성 지침 준수
사용자	ㅇ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 및 국가R&D사업 전반 사항 소개 – R&D도우미센터의 업무범위 및 홈페이지 이용 관련 소개 – 국가R&D사업의 정의, 법령체계, 신청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 안내 ㅇ 각 메뉴의 기능 통합 및 내용 수정 – '신문고' 메뉴 이름 및 내용 수정 – '온라인 상담' 메뉴 수정(질의방법 등) 및 'Q&A'와 메뉴 통합 – '자료실' 메뉴 하위 카테고리 수정 ㅇ 알림 기능 강화 – 국가R&D사업 관련 알림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알림판 신설
관리자	ㅇ 통계 관련 기능 추가 – 질의자 소속별 통계 추가 ㅇ '오프라인 자료등록' 메뉴 오류 수정 – 기존 구성 메뉴의 오류 수정(예: 일괄등록 불가능 등)

개편 세부내용

R&D도우미센터의 아이덴티티 표현

- "도우미" 기능을 강조하여 홈페이지의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심볼(signature) 제작
- 전체 서비스 기능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메뉴 및 디자인* 구성

  * 특히, '온라인 상담' 및 '온라인 신문고'는 눈에 띌 수 있도록 메인페이지에 '바로가기'로 디자인

회원가입 및 관리 모듈 수정 · 개발

- 기존 회원가입 방법 폐지* 또는 수정**
  - 원칙은 개인정보 수집은 안 함.

    * 1안) '회원가입' 및 '마이페이지' 기능 삭제하더라도 상담자가 자기 상담 내용 및 결과를 찾을 수 있으면 됨

    ** 2안) 1안이 불가능 한 경우 간편가입(ID/PW만으로 가입)으로 관리 및 기존 '마이페이지' 기능 유지
- 일반회원 가입 시 ID 및 기타회원정보를 통한 중복 검증 시행

기존 기능 일부 조정 및 삭제

- '타 부처 협조' 관련 기능* 삭제

  * 관리자모드에서 'Q&A', '타 기관 지정' 기능 등
- 회원가입 방법 변경에 따른 관련 기능 조정 및 삭제
  - 회원가입 방법 폐지 : '회원가입' 및 '마이페이지' 기능 삭제 등
  - 회원가입 방법 수정 : '회원가입' 절차 수정, 기존 회원의 ID 유지에 따른 기존 회원별 질의답변 데이터 유지 등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 다양한 OS 환경에서 모두 접근 가능하도록 웹 표준 준수
- 장애인의 정보접근 수준 향상을 위한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WCAG 2.0)

정보보호 준수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안전행정부)에 따라 구현
  -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화면은 SSL 적용
- 구축 이후 웹 취약점 보완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 소개-사용자

- R&D도우미센터의 소개 및 메뉴별 기능 안내 페이지 제공
  - R&D도우미센터의 업무 처리 절차 등 안내,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범부처 공통기준 차원의 답변만이 가능함을 명시
  - 각 메뉴별 사용법 설명 및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각 메뉴로의 '바로가기' 기능 신설

국가R&D사업 전반 사항 소개

- 국가R&D사업의 정의, 법령체계,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페이지 제공
- NTIS에서 제공하는 'R&D사업 공고'와 서비스 연계

각 메뉴의 기능 통합 및 내용 수정

- '신문고' 메뉴 수정
  - '신문고' 메뉴 제목을 '온라인 신문고'로 수정
  - '신문고'에 등록된 내용을 제안자가 '공개'로 설정 시, 일반사용자 모두에게 공개되도록 수정
  - 제안자가 본인의 제안 처리절차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신문고' 메뉴 안에 처리절차를 도식화
- '온라인 상담' 메뉴 수정
  - 기존에 '온라인 상담'과 'Q&A'로 구분되어 있던 메뉴를 '온라인 상담'으로 통일
  - 사용자가 질의 전에 기존 상담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메뉴 안에 상담내용 목록을 제시
  - 질의자 맞춤형 답변을 위해 질의 시 질의자 정보 체크항목* 추가

    * 질의자의 소속기관, 직위 등(연구자, 연구기관 연구비관리담당자, 전문기관, 부처담당자 등)
  - 각 부처 개별 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해당 전문(전담)기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시 카테고리* 제시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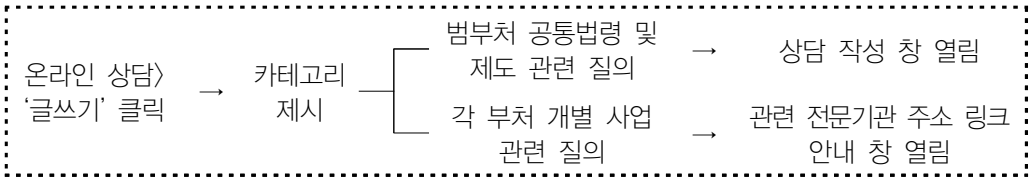

– ‘자료실’ 하위메뉴 수정

• ‘기타자료’의 성격이 불명확하므로 ‘기타자료’ 중 ‘국가R&D사업 관련 제도 자료’를 별도 하위메뉴로 구성

○ 알림 기능 강화

– 국가R&D사업 관련 알림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메인페이지에 ‘알림판’*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의 알림판 기능 참고

– 국가R&D사업과 관련된 법 및 제도개선 사항 또는 관련 행사 등 홍보에 적극 활용

– ‘알림판’ 내용 클릭 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또는 별도 안내페이지로 링크

○ 통계 관련 기능 추가–관리자

– 질의 시 질의자 정보를 추가 입력하도록 함에 따라 ‘질의자 소속기관별 통계’를 기존 통계 기능에 추가

○ ‘오프라인 자료등록’ 메뉴 오류 수정

– ‘전화상담’ 기록을 홈페이지에서 통합 ·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오프라인 자료등록’ 메뉴(일괄등록 기능 등)가 불안정하여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오류 수정 필요

■ 예산 및 계약 규모

○ (추진재원) ‘14년도 종합조정지원사업* 예산 3.3억원으로 추진

○ (예산)온라인 홈페이지 대폭 개편, 관련 웹디자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고 본 사업의 예산을 감안하여 20백만원* 이내로 추진 예정

※ 본 사이트의 개편내용, 요구사항, 구축기간 등을 감안할 때 19.8백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본원 지식정보실 검토결과)

– (계약)국과심 의결사항의 조속한 후속조치 필요, 기업의 규모나 인력, 비용,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추진 예정

■ 추진방향 및 기관별 역할

○ KISTEP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첨부3] 참조) 및 용역수행기관인 ㈜야긴스텍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일반국민, 연구자, 연구관리자, 정부부처 담당자 등이 자유로이 의견개진 및 답변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편

○ 온라인 사이트 운영 등은 미래부에서 수행(KISTEP지원)

결과 활용

- R&D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상시적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해결 창구로 활용

라. 개선실적

1) 메인

① **로그인**
- 클릭 시 로그인 팝업 출력

② **새소식**
- 새소식의 최신글 출력

③ **자료실**
- 자료실의 최신글 출력

④ **바로가기**
- 관련부처 및 전문기관과 관련기관 바로가기

2) 로그인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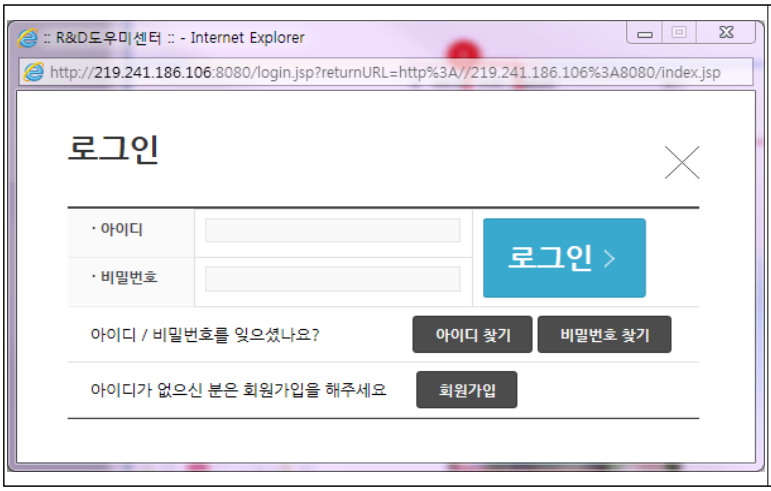

① **로그인**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로그인시 메인으로 이동

②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 해당 버튼 클릭시 아이디 찾기 화면, 비밀번호 찾기 화면,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

3) 온라인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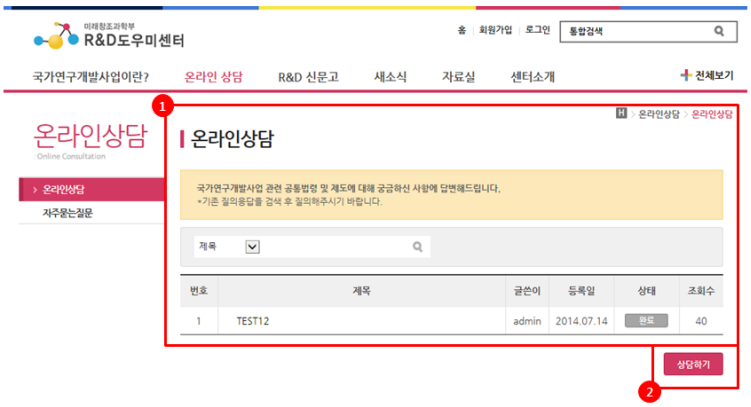

① 온라인 상담 리스트
- 온라인상담 리스트를 보여줌
- 온라인상담 제목 클릭 시 보기 페이지 이동

② 상담하기 버튼
- 클릭 시 상담 허브 페이지로 이동

① 온라인 상담 질의 바로가기
- 클릭시 온라인상담 등록 페이지 이동

② 행정기관별 질의 바로가기
- 클릭 시 중앙행정기관의 링크 주소 페이지 이동

① 온라인 상담 비밀번호 입력창
- 비회원 등록 시 비밀번호 입력

② 등록 버튼
- 클릭 시 온라인 상담 글 등록

4) 자주묻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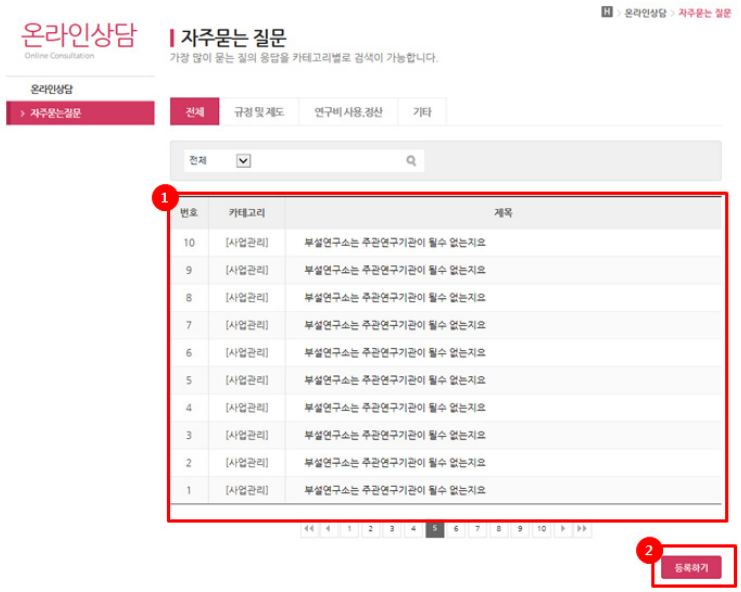

① 자주묻는 질문 리스트

- 자주묻는 질문 리스트를 보여줌
- 자주묻는 질문 제목 클릭 시 보기 페이지 이동

② 등록하기 버튼

- 관리자 로그인 후 클릭 시 등록하기 페이지 이동

5) R&D 신문고

① R&D 신문고 비밀번호 입력창

- 비회원 등록 시 비밀번호 입력

② 등록 버튼

- 클릭 시 R&D 신문고 글 등록

6) 새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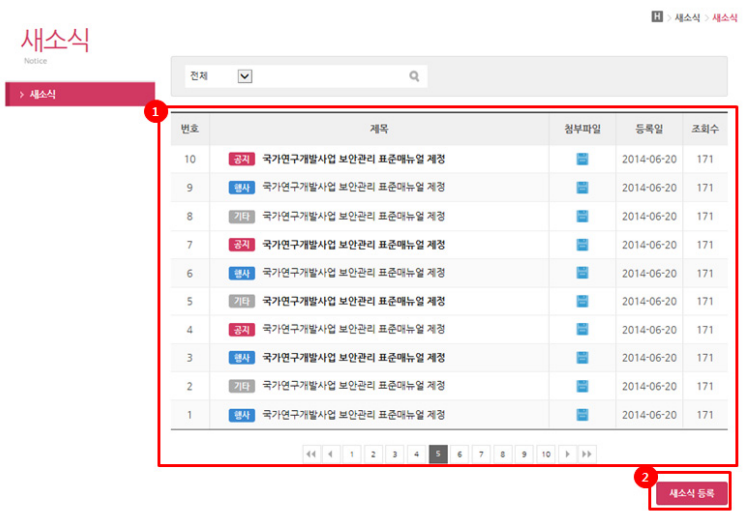

① 새소식 리스트
- 자주묻는 질문 리스트를 보여줌
- 자주묻는 질문 제목 클릭 시 보기 페이지 이동

② 새소식 등록 버튼
- 관리자 로그인 후 클릭 시 등록하기 페이지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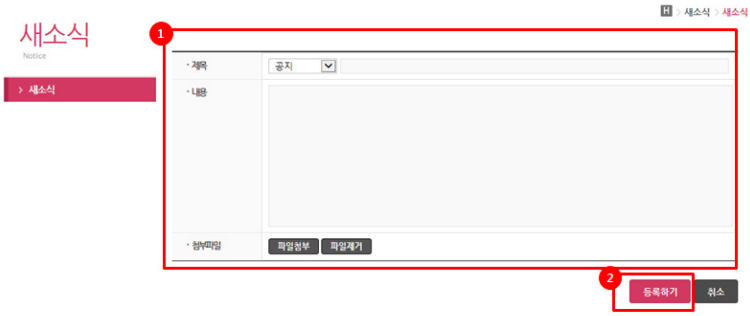

① 새소식 등록
- 분류, 제목, 내용, 파일첨부 입력

② 등록하기 버튼
- 클릭시 새소식 등록 페이지 이동

7)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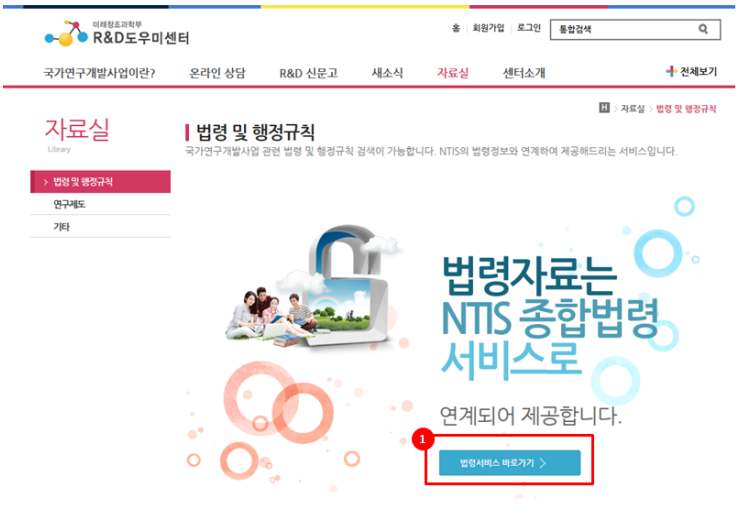

① 법령서비스 바로가기 버튼
- 클릭시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사이트로 이동 (새창)

① **연구제도 리스트**
- 연구제도 리스트를 보여줌
- 연구제도 제목 클릭 시 보기 페이지 이동

② **자료실 등록 버튼**
- 관리자 로그인 후 클릭 시 등록하기 페이지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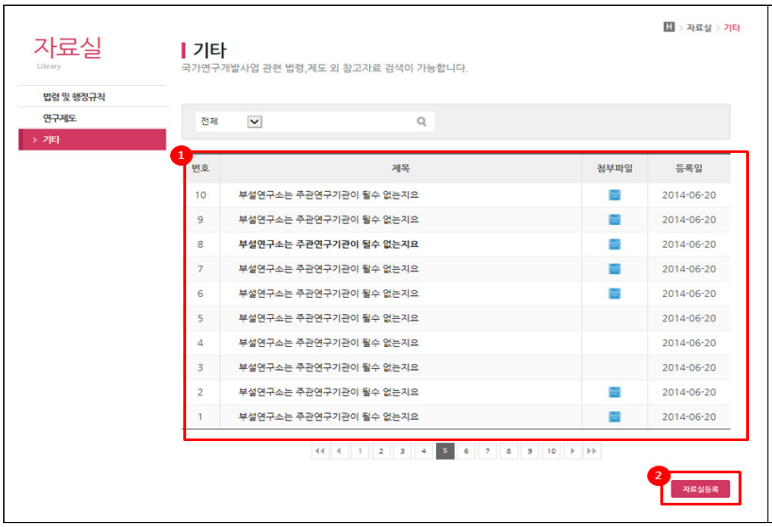

① **기타 리스트**
- 기타 리스트를 보여줌
- 기타 제목 클릭 시 보기 페이지 이동

② **자료실 등록 버튼**
- 관리자 로그인 후 클릭 시 등록하기 페이지 이동

8) 관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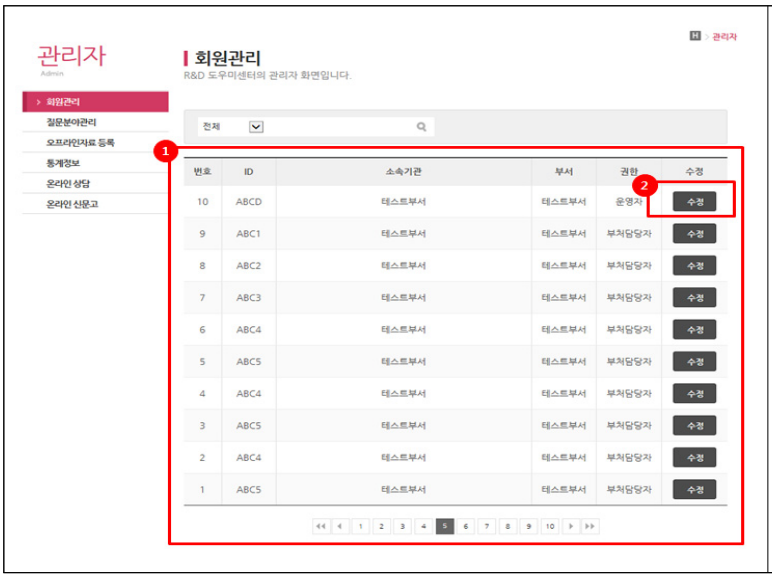

① **회원관리 리스트**
- 연구제도 리스트를 보여줌

② **수정 버튼**
- 클릭시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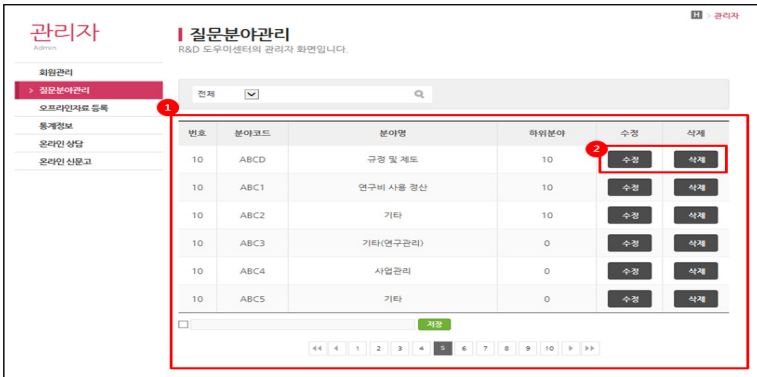

① **질문분야관리 리스트**
- 연구제도 리스트를 보여줌

② **수정, 삭제 버튼**
- 클릭시 질문분야 수정 및 삭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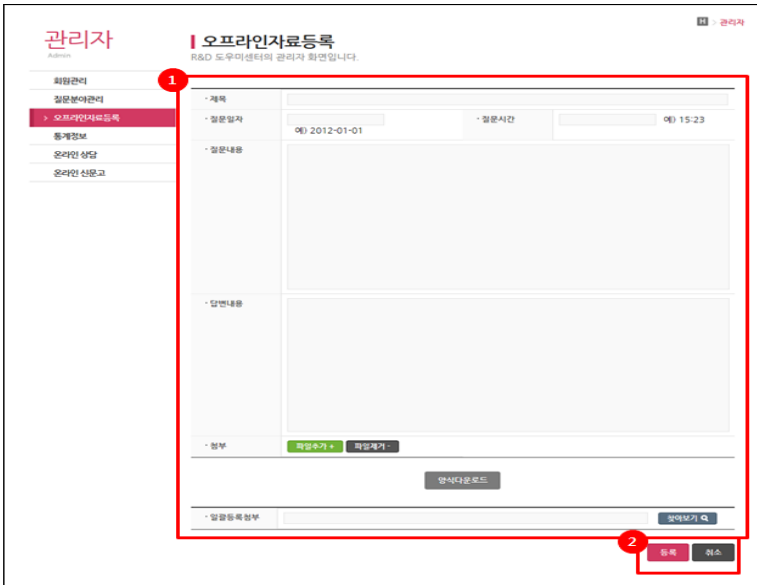

① **오프라인 자료 등록**
- 제목, 질문일자, 질문시간, 질문내용, 답변내용, 파일첨부 입력

② **오프라인자료 등록 버튼**
- 클릭시 오프라인자료 등록

① **통계정보 리스트**
- 통계정보 리스트를 보여줌

② **엑셀 다운로드 버튼**
- 통계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기능

① **온라인 상담 메뉴**
- 클릭시 온라인상담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

② **온라인 신문고 메뉴**
- 클릭시 온라인 신문고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

제5절 국가 R&D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1. 조사개요

▢ 추진배경

- 국무조정실 정책조정위위원회의에서 국가R&D사업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필요성 제기
-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이후 연구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국가R&D사업 관리 효율화 노력의 일환으로,
  - 과학기술계의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구현장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제도개선 한 내용들이 연구현장에 얼마나 잘 정착 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향후 제도개선 수요를 발굴하기 위함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이후 연구현장 중심 제도개선 실적

◇ 범 부처 연구관리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경쟁형 R&D제도 도입, 연구비 규제완화, 제재부과금 부과 등 국가 R&D사업 제재 강화 등
◇ 「연구비관리 표준 매뉴얼」마련을 통한 연구비사용 기준 통일성 도모('13.10)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운영 매뉴얼」마련을 통한 지정요건 완화('14.3)
◇ 「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한 연구비 부당 집행 예방('14.3)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리 매뉴얼」을 통한 보안정책('14.4)
◇ 「기술료 제도개선 매뉴얼」마련을 통한 기술료 관련 기준 통일('14.8)

▢ 조사 목적

- 2013~2014년 실시된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 제도개선의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 제도개선의 수요 발굴

▢ 조사 Framework

- 본 조사는 '조사준비', '조사수행', '보고서 작성 및 사후지원'의 프레임으로 구성됨

〈그림 4-4〉 조사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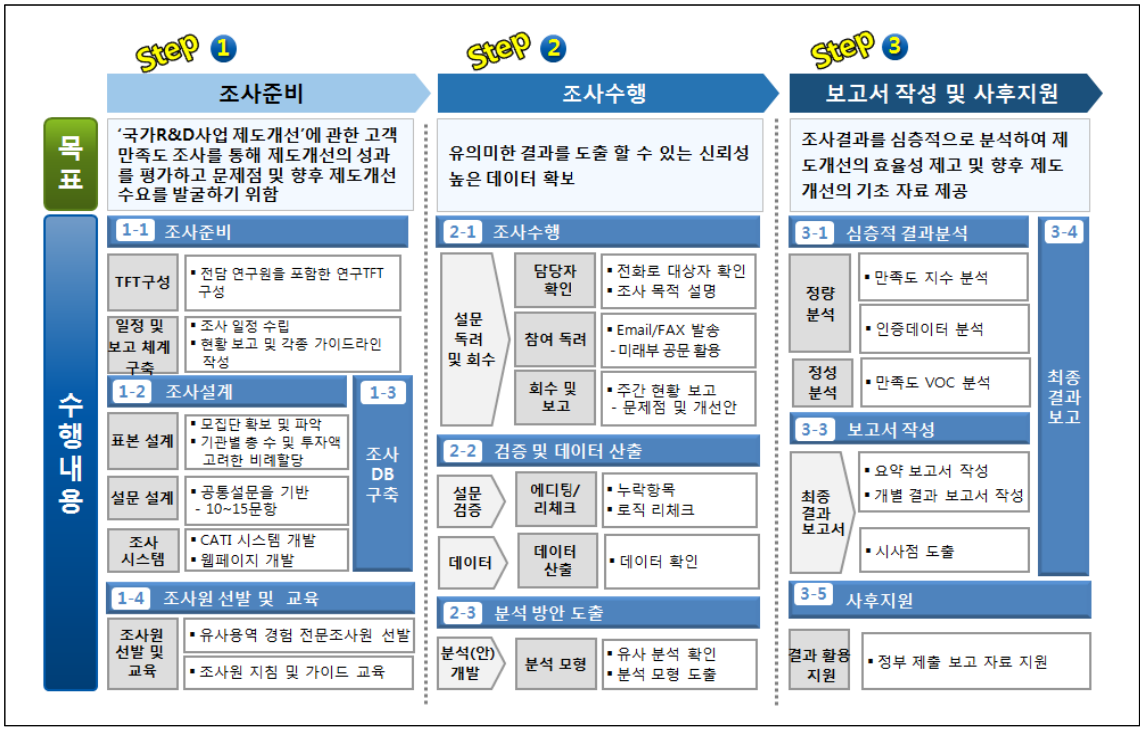

2. 조사설계 및 수행계획

▢ 조사 설계

○ 공동관리규정 개정, 연구비관리, 기술료, 학생인건비 등 국가R&D사업 제도개선 추진현황에 대하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및 특정(연), 대학, 기업, R&D부처 산하 전문기관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만족도 조사

〈표 4-12〉 조사 설계 요약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및 특정(연), 대학, 기업, 전문기관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등 ※ 2013년 정부출연금 수탁규모 따라 표본수 차별화 ※ 출연(연) 및 특정(연): 정부출연금 100억이상 수탁기관, 대학 : 정부출연금 100억 이상 수탁한 69개 대학, 전문기관 10개 기관 ※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회원사 31,500개사
목표 표본 수	400표본 이상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Email/Fax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조사(미래부 행사시)를 병행함 ※ 출연(연), 특정(연) 및 대학은 정부출연금 규모에 따라 설문대상자를 추천받아 추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어려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사 31,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구 분	내 용
조사 기간	2014. 11. 20 ~ 12.12(22일간)
조사 항목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현장 만족도 제도개선 절차·방법의 적절성 향후 제도개선 발굴 사항 등 약 10문항
주관 기관	KISTEP
조사 기관	포커스컴퍼니

◎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 도출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연구관리 담당자 등을 균형있게 구성(약 7:3 비율)

〈표 4-13〉 조사 표본수

조사대상 집단		100억이상 대상자 (인원 : 명)	기관 수	연구자와 연구관리자 구성 비율 (약 7:3)
○ 총계		1,004	111	1,004
○ 정부출(연) 및 특정연		362	32	362
– 연구원		254	–	253
– 연구관리자		108	–	109
○ 대학		612	69	612
– 연구자		447	–	428
– 연구관리자		165	–	184
○ 전문기관		30	10	30
연구관리자	– 팀장급	10	–	9
	– 연구관리자	20	–	21

※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회원사 31,500개사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대상

– 대상기관 선정기준

- 출연(연) 및 특정(연) : 정부출연금 100억이상 수탁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및 특정(연) 32개기관
- 대학 : 정부출연금 100억 이상 수탁기관 69개 대학
- 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회원사 31,500개사
- 전문기관 : 주요 R&D부처 산하의 10개 전문기관

– 대상자 선정기준

기준금액	기관당 대상자수	대상자수 구성	
		연구자	연구관리자
3,000억 이상	16	12	4
2,000억 이상	14	10	4
1,000억 이상	12	8	4
500억이상~999억	10	7	3
100억이상~499억	8	6	2
100억 미만	6	4	2

표본 설계

- 표본 설계 프로세스 : 2013~2014년 국가R&D사업 제도개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을 위해 총 3단계의 표본설계 절차를 거침

– 모집단 선정 원칙

① 국가R&D사업 정부출연금 수탁규모 100억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표 4-14〉 조사 설계 프로세스

Step1. 투자규모별 모집단 DB 구축	■ KISTEP으로부터 2013년도 국가R&D사업 정부출연금 수탁액 현황 확보 ■ R&D 투자액 기준으로 층별 표본규모 결정
⬇	
Step 2. 모집단 특성 파악	■ 모집단 특성파악 및 분류 – 투자액 규모에 따라 분류 * 투자액 규모는 정부출(연), 특정(연) 및 대학은 100억 이상으로 분류 ※ 인문사회분야 및 국방분야 관련 출연(연) 및 특정(연)은 제외 *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회원사 31,500개사
⬇	
Step 3. 기관 연구인원 수에 따른 비례할당	■ 투자 규모 및 기업특성에 따른 비례할당 ■ 연구인원수(연구관리자 포함) 수에 따라 비례할당

○ 표본 설계(안)은 다음과 같음

〈표 4-15〉 표본 설계(안)

구분	정부출연 및 특정 연구소	대학	기업	전문 기관	합계
연구자	92	155	25	3	275
연구관리자	39	67	11	8	125
합계	131	222	36	11	400

※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회원사 31,500개사의 응답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설문 설계

○ 2013~2014년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설문 문항 개발은 총 4단계의 절차를 거침

〈그림 4-5〉 설문 개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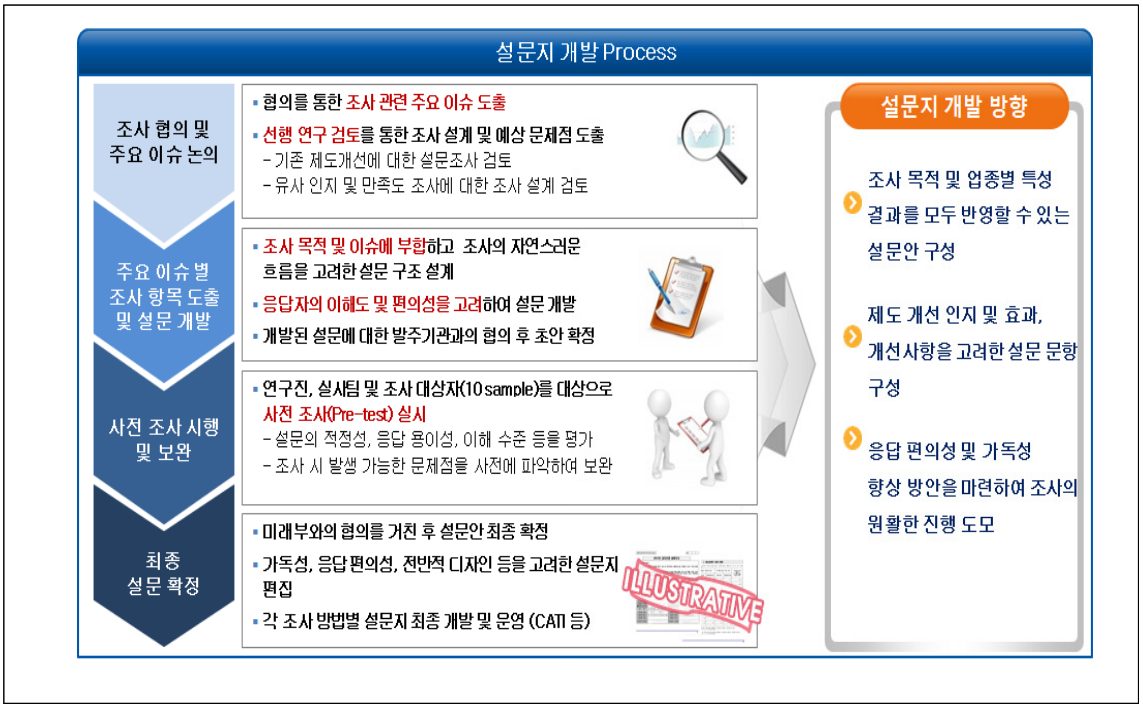

설문 내용

- 2013~2014년 국가R&D사업 제도개선 8대 분야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등을 평가
- 8대 개선 분야는 다음과 같음
  -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 경쟁형 R&D 제도 도입
  -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 연구비 규제 완화
  - 기술료 제도개선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완화
  - R&D도우미센터 개편/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 R&D사업 제재 강화

세부 설문 내용

- 선문
  - 응답자 기본정보(소속, 소재지, 기업규모 등), 담당 직무
- 제도개선 분야별 인지도
- 제도개선 분야별 중요성
- 제도개선의 품질과 내용
  - 제도개선 취지와 목적의 부합 정도
  - 연구현장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정도
- 제도개선 절차 · 방법 및 홍보
  -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
  - 제도개선 결과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이 충분했는지 정도
- 제도개선의 효과
  - 제도개선 결과에 대한 연구현장의 문제점 해소 정도
- 제도개선 만족도 및 필요한 개선 분야
  -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제도개선 8개 세부분야 중 지속적인 개선 확대가 필요한 분야
  - 제도개선과 관련한 추가 개선 분야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Email/Fax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조사 병행

※ 온라인 조사는 인터넷 조사방식

※ 현장조사(미래창조과학부 행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당일 배포 및 회수

–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법 제33조를 통한 응답자 비밀보장

※ 별도로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참여인력별 보안각서 요청

– 조사항목은 20개 내외(인적사항 4~5개 포함)

※ 조사항목은 기관별, 조사대상자별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

〈그림 4-6〉 조사 방법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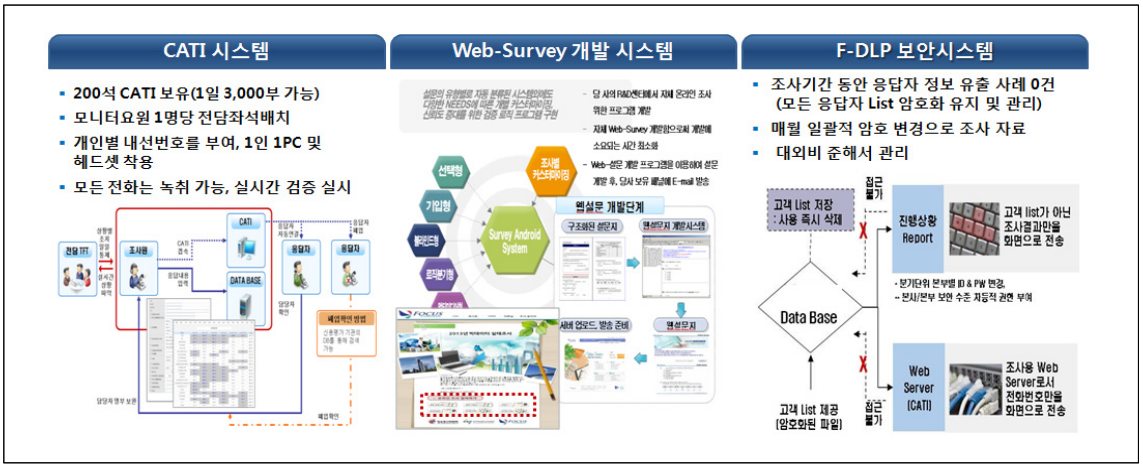

〈그림 4-7〉 CATI 시스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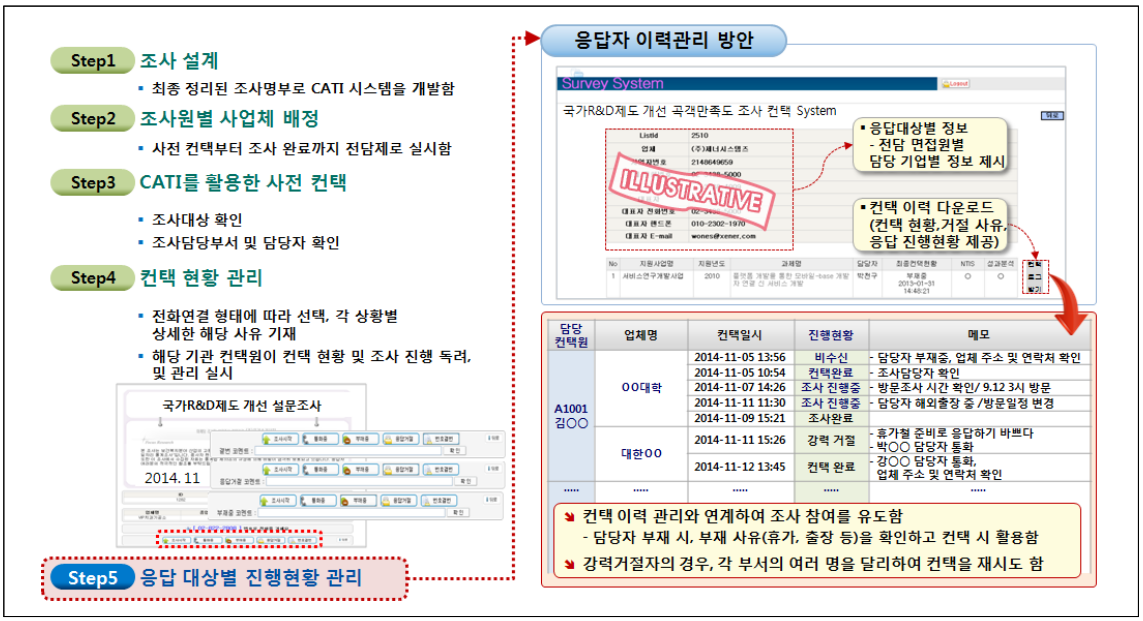

▢ 결과 분석 모형(안)

- ○ 조사 결과, 제도개선에 대한 적합성 및 만족도 등의 세부 항목을 평가함
  - – 적합성 및 만족도 평가에 대한 지수 분석, 차원 및 항목별 분석
  - – 적합성 및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을 통해 IPA 및 개선효용도 분석을 통해 통계적 개선사항 도출

종합만족도(인지도) 분석	세부 만족도(인지도) 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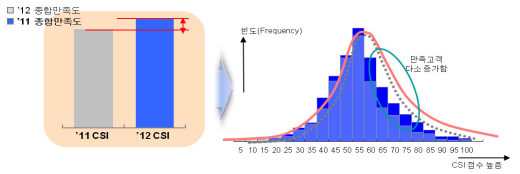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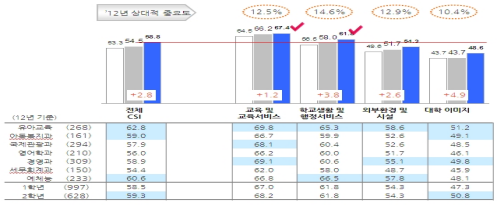
IPA	**개선효용도 분석**

2. 연구체계 및 추진일정

▢ 연구 체계

- ○ 연구 전담 채널을 구성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
  - – 주 1회 보고를 원칙으로 문제 상황 발생시 수시 보고 체계 가동
  - – 주 4주차 중간 보고를 통해 실사 문제점 및 개선 안을 도출 할 예정

〈그림 4-8〉 추진 체계 및 보고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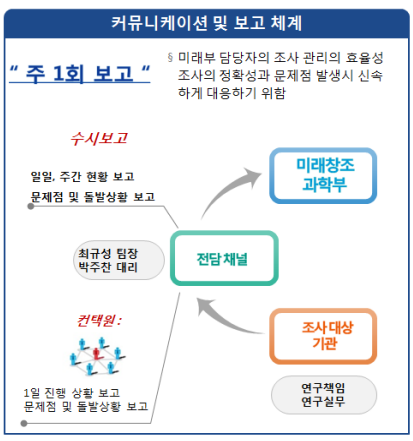

구분	내용	방법 및 검토사항	시기	제출물
착수 보고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참여인력 및 TF팀 편성표 ▪ 기타 보안각서	착수 후 2일 이내	▪ 착수보고서 ▪ 수행일정안
일일 보고	진행상황 보고	▪ 담당자 확인 등의 컨택 현황 보고 ▪ 설문 회수 현황 ▪ 강력 거절 현황 ▪ 문제점 및 특이 사항 보고	매일 11:00 AM	▪ 회수 및 검증현황
주간 보고	진행상황 보고	▪ 주간업무 진척상황 공유 및 점검 ▪ 향후 추진계획 ▪ 문제점 해결 방안 제시 등	매주 금요일 오전	▪ 주간 진행 현황표
중간 보고	조사결과 점검	▪ 데이터 오류 최종 확인 ▪ 최종 분석 방향 검토 ▪ 자료처리 상황 보고 ▪ 산출물 작성상황 보고	4주차	▪ 회수 결과 ▪ 분석 방법안
최종 보고	조사결과 제출	▪ 최종보고서 (초안제출→검수→수정→최종안 확정) ▪ 최종보고회 개최 ▪ Raw data 및 통계표	6주차	▪ 최종 보고서 ▪ Raw Data ▪ 자료 신뢰도 보고서 등

3. 조사결과

가. 응답자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R&D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4-16〉 응답자 Profile

구 분			사례수	비율(%)
전 체			838	100.0
소속기관	출연(연) 및 특정(연)		76	9.1
	대학		144	17.2
	기업	전체	605	72.2
		– 대기업	22	3.6
		– 중견기업	20	3.3
		– 중소기업	543	89.6
		– 무응답	20	3.5
	전문기관		13	1.6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47.9
	비수도권		437	52.1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19.0
	연구원(학생포함)		161	19.2
	연구관리 부서장		163	19.5
	연구관리 담당자		355	42.4

나. 주요 결과 비교 · 분석

1)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별 인지도

○ 국가R&D 제도개선 8개 분야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연구비 규제 완화'(69.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69.6%), '혁신도약형 R&D사업 확대'(69.5%)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가R&D 제도개선 8개 분야 중 인지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제재부가금부과등 국가R&D사업 제재강화'(59.8%)로 나타남

〈표 4-17〉 각 분야별 인지도

(단위 : %)

구 분	전혀 모르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알고 있다	인지도 (들어본 적 있다 + 잘 알고 있다)
– 연구비 규제 완화	30.2	50.0	19.8	69.8
–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30.4	47.6	22.0	69.6
–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30.5	54.4	15.1	69.5
– 기술료 제도개선	33.3	52.6	14.1	66.7
– R&D도우미센터개편/연구비 사용 상담 사례집 발간	36.2	50.6	13.2	63.8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 요건완화	36.8	51.4	11.8	63.2
– 경쟁형 R&D제도도입	39.1	50.7	10.2	60.9
– 제재부가금부과 등 국가R&D 사업 제재강화	40.2	45.1	14.7	59.8

2)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별 중요도

○ 국가R&D 제도개선 8개 분야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연구비 규제 완화'(80.2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분야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완화'(63.1점)인 것으로 나타남

– 중요도 상위 5개 분야와 인지도 상위 5개의 분야는 같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중요도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4-18〉 각 분야별 중요도

(단위 : 점)

구 분		5점 평균	100점 평균	구 분		5점 평균	100점 평균
1	– 연구비 규제 완화	4.21	80.2	5	– R&D도우미센터개편/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3.87	71.8
2	–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4.09	77.1	6	– 제재부가금부과등 국가 R&D사업 제재강화	3.72	68.1
3	–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4.07	76.7	7	– 경쟁형R&D제도도입	3.57	64.2
4	– 기술료 제도개선	3.97	74.1	8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완화	3.52	63.1

3) 국가R&D사업 제도개선 종합 만족도

- 국가R&D 제도개선 종합 만족도 결과는 '만족'(만족+매우만족)이 38.3%로 '불만족'(매우불만족+불만족) (10.1%)에 비해 28.2%p 높게 나타남
  -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기업은 '만족'(40.5%)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불만족'에 대한 응답은 '전문기관'(15.4%)이 타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담당직무별로 살펴보면, '연구책임자'의 '만족'(44.7%) 비율이 타 직무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불만족'은 '연구원'(12.4%)에서 타 직무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4-9〉 국가R&D사업 제도개선 종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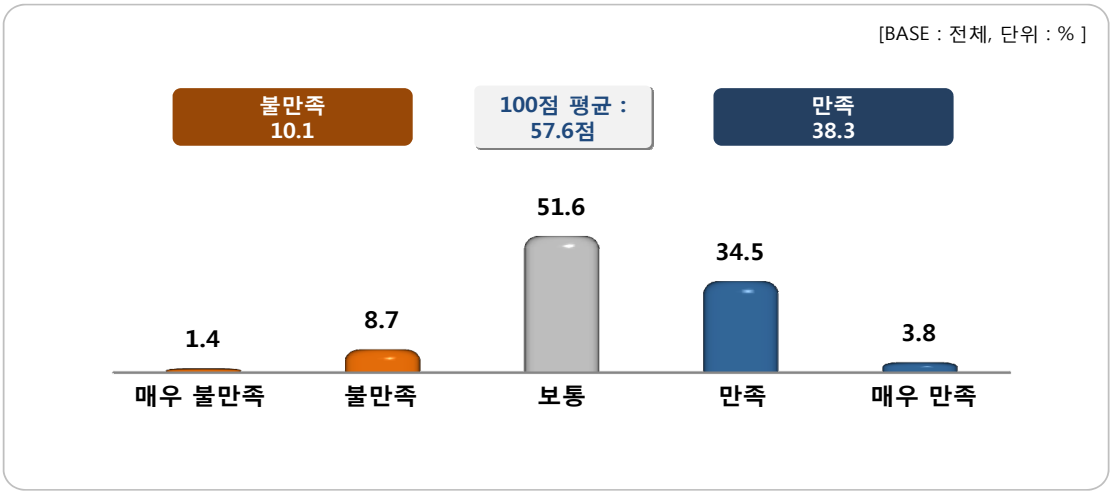

〈표 4-19〉 국가R&D사업 제도개선 종합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결과

구 분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838	10.1	51.6	38.3	3.31	57.6
소속기관	출연(연) 및 특정(연)	76	10.5	60.5	28.9	3.20	54.9
	대학	144	10.4	54.9	34.7	3.27	56.8
	기업	605	9.9	49.6	40.5	3.33	58.3
	전문기관	13	15.4	53.8	30.8	3.15	53.8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11.9	43.4	44.7	3.34	58.5
	연구원(학생포함)	161	12.4	54.0	33.5	3.24	55.9
	연구관리 부서장	163	11.7	46.0	42.3	3.33	58.1
	연구관리 담당자	355	7.6	56.6	35.8	3.31	57.8

※ 척도 환산방법

○ 각 설문항목별 5점 척도를 다음과 같이 100점으로 환산하여 만족도 점수를 산출함

〈표 4-20〉 척도 환산 방식

원 점수		100점 환산치	
1점 (1번)	⇒	0.0점	(매우 불만족)
2점 (2번)	⇒	25.0점	(불만족)
3점 (3번)	⇒	50.0점	(보통)
4점 (4번)	⇒	75.0점	(만족)
5점 (5번)	⇒	100.0점	(매우 만족)

4) 지속적인 개선 확대가 필요한 분야

○ 국가R&D 제도개선에서 지속적인 개선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연구비 규제 완화' (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기업에서 '혁신도약형 R&D사업 확대'(49.6%)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과 출연(연) 및 특정(연)에서는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각각 41.7%, 36.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담당직무별로는 '혁신도약형 R&D사업 확대'가 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관리 부서장에서 지속적인 개선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 응답하였으나, 연구관리 담당자는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확대'에 대한 응답이 31.8%로 타 분야 대비 높게 나타남

〈표 4-21〉 지속적인 개선 확대가 필요한 분야 Top 4_1순위

구 분		사례수	혁신도약형 R&D사업 확대	연구비 규제 완화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경쟁형 R&D제도 도입
전 체		838	42.7	22.0	20.3	5.8
소속기관	출연(연) 및 특정(연)	76	27.6	21.1	36.8	7.9
	대학	144	22.2	28.5	41.7	1.4
	기업	605	49.6	20.7	13.1	6.4
	전문기관	13	38.5	15.4	23.1	15.4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55.3	23.9	3.8	8.2
	연구원(학생포함)	161	42.9	23.0	16.1	6.2
	연구관리 부서장	163	49.1	23.3	15.3	6.1
	연구관리 담당자	355	34.1	20.0	31.8	4.5

5) 시사점

- 제도개선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3~2014년 약 2년 동안 추진되었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약 30%이상이 '국가R&D제도 개선'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정부의 홍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8개 세부분야에 대한 중요도 결과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신규 제도도입 또는 관련 가이드 마련 등의 지원책 보다는 '연구비의 규제 완화' 및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등 연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개선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해 실무자(연구원+연구관리 담당자)는 책임자(연구책임자+연구관리 부서장)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실제 실무자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연구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대학과 출연(연)에서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확대 노력이 높은 것은 정부 연구비에 비중이 높은 기관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반면에, 기업의 경우 '혁신도약형 R&D사업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확대 노력의 비중이 높은 것은 변화하는 시장환경 대응에 민감한 기관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6)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 정부는 제도개선에 대해 실제 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 및 안내 등의 정책이 필요함
- 연구비 사용과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기관별 직무별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사항이 마련되어야 함

다. 응답자 특성 비교 · 분석 결과

1) 소속기관명

- 국가R&D사업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대한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기업이 7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17.2%), 출연(연) 및 특정(연)(9.0%), 전문기관(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0〉 소속기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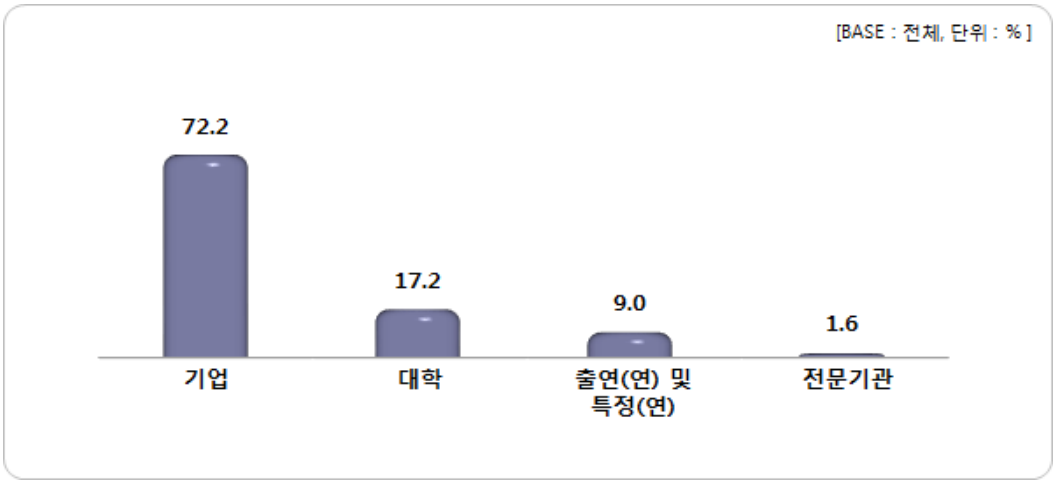

〈표 4-22〉 소속기관명

구 분		사례수	기업	대학	출연(연)및 특정(연)	전문기관
전 체		838	72.2	17.2	9.0	1.6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75.1	18.0	6.0	1.0
	비수도권	437	69.6	16.5	11.9	2.1
담당 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82.4	9.4	8.2	0.0
	연구원(학생포함)	161	62.1	29.8	7.5	0.6
	연구관리 부서장	163	87.1	4.9	6.7	1.2
	연구관리 담당자	355	65.4	20.6	11.3	2.8

2) 소속기관 소재지

○ 국가R&D사업 제도개선 고객만족도에 대한 응답자 소속기관 소재지는 경기가 2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19.0%), 대전(9.1%), 경남(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1〉 소속 기관 소재지(시, 도,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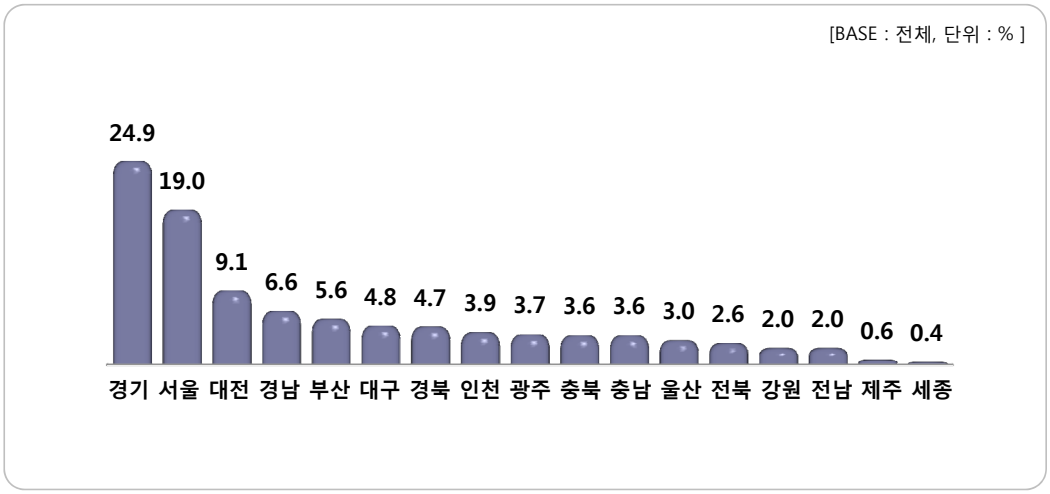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속기관이 기업, 담당직무가 연구책임자(교수포함)의 경우 경기 소재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전문기관에 소속한 응답자의 경우 소재지가 대전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3〉 소속 기관 소재지(시, 도, 별)_1

구 분		사례수	경기	서울	대전	경남	부산
전 체		838	24.9	19.0	9.1	6.6	5.6
소속 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17.1	7.9	47.4	3.9	5.3
	대학	144	11.1	36.1	4.2	6.3	6.9
	기업	605	29.6	16.2	4.5	7.1	5.5
	전문기관	13	7.7	23.1	53.8	0.0	0.0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52.1	39.7	0.0	0.0	0.0
	비수도권	437	0.0	0.0	17.4	12.6	10.8
담당 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30.2	14.5	10.7	6.9	6.3
	연구원(학생포함)	161	20.5	14.9	6.8	7.5	4.3
	연구관리 부서장	163	27.0	20.9	7.4	6.7	3.7
	연구관리 담당자	355	23.7	22.0	10.1	5.9	6.8

〈표 4-24〉 소속 기관 소재지(시, 도, 별)_2

구 분		사례수	대구	경북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 체		838	4.8	4.7	3.9	3.7	3.6	3.6
소속 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1.3	0.0	6.6	5.3	1.3	1.3
	대학	144	3.5	6.3	2.8	3.5	4.2	1.4
	기업	605	5.6	5.0	4.0	3.6	3.5	4.5
	전문기관	13	0.0	0.0	0.0	0.0	15.4	0.0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0.0	0.0	8.2	0.0	0.0	0.0
	비수도권	437	9.2	8.9	0.0	7.1	6.9	6.9
담당 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5.0	3.8	1.3	2.5	4.4	3.1
	연구원(학생포함)	161	6.2	8.1	5.0	5.6	3.7	3.1
	연구관리 부서장	163	5.5	3.7	3.1	3.7	3.7	4.9
	연구관리 담당자	355	3.7	3.9	5.1	3.4	3.1	3.4

〈표 4-25〉 소속 기관 소재지(시, 도, 별)_3

구 분		사례수	울산	전북	강원	전남	제주	세종
전 체		838	3.0	2.6	2.0	2.0	0.6	0.4
소속 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0.0	1.3	0.0	0.0	0.0	1.3
	대학	144	2.8	2.8	4.2	2.8	1.4	0.0
	기업	605	3.5	2.8	1.8	2.1	0.5	0.3
	전문기관	13	0.0	0.0	0.0	0.0	0.0	0.0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0.0	0.0	0.0	0.0	0.0	0.0
	비수도권	437	5.7	5.0	3.9	3.9	1.1	0.7
담당 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3.8	2.5	1.3	1.9	1.3	0.6
	연구원(학생포함)	161	6.2	3.1	1.9	3.1	0.0	0.0
	연구관리 부서장	163	1.2	3.1	1.8	2.5	0.6	0.6
	연구관리 담당자	355	2.0	2.3	2.5	1.4	0.6	0.3

3) 기업규모

○ 국가R&D사업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응답자 중 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9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기업(3.8%), 중견기업(3.6%)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2〉 기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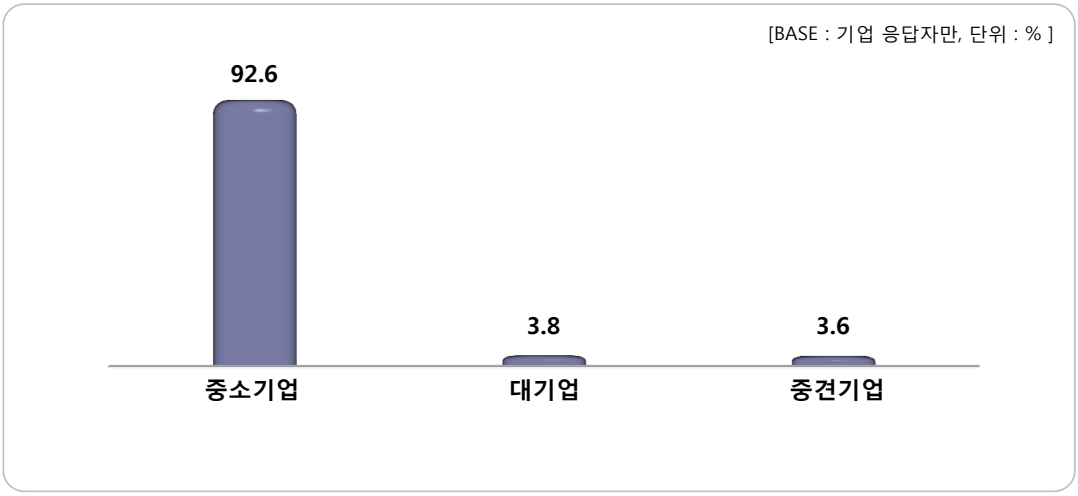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관 소재지가 수도권, 담당직무가 연구책임자(교수포함)인 경우 중소기업에 속해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4-26〉 기업규모

구 분		사례수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전 체		585	92.6	3.8	3.6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294	93.9	3.7	2.4
	비수도권	291	91.4	3.8	4.8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28	98.4	0.0	1.6
	연구원(학생 포함)	98	79.6	9.2	11.2
	연구관리 부서장	139	95.7	2.9	1.4
	연구관리 담당자	220	93.2	4.1	2.7

4) 담당직무

- 국가R&D사업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응답자의 담당 직무는 연구관리 담당자가 가장 많은 42.4%였으며, 다음으로 연구관리 부서장(19.4%), 연구원(학생포함)(1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3〉 담당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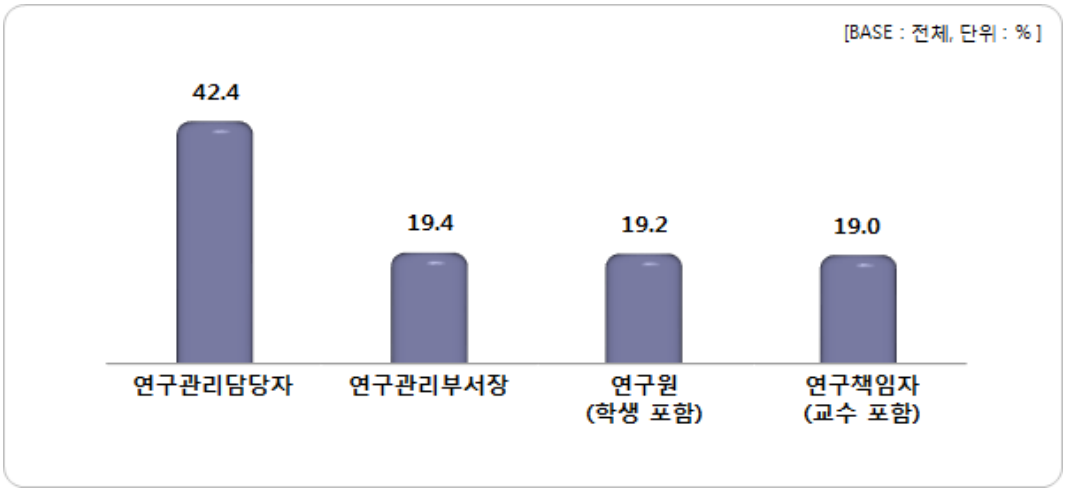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속기관이 전문기관, 기관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연구관리 담당자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4-27〉 담당직무

구 분		사례수	연구관리 담당자	연구관리 부서장	연구원 (학생포함)	연구책임자 (교수포함)
전 체		838	42.4	19.4	19.2	19.0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52.6	14.5	15.8	17.1
	대학	144	50.7	5.6	33.3	10.4
	기업	605	38.3	23.5	16.5	21.7
	전문기관	13	76.9	15.4	7.7	0.0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44.9	20.7	16.2	18.2
	비수도권	437	40.0	18.3	22.0	19.7

라. 항목별 비교 · 분석결과

1)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별 인지도

1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 중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잘 알고 있다는 15.0%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14〉 인지도 -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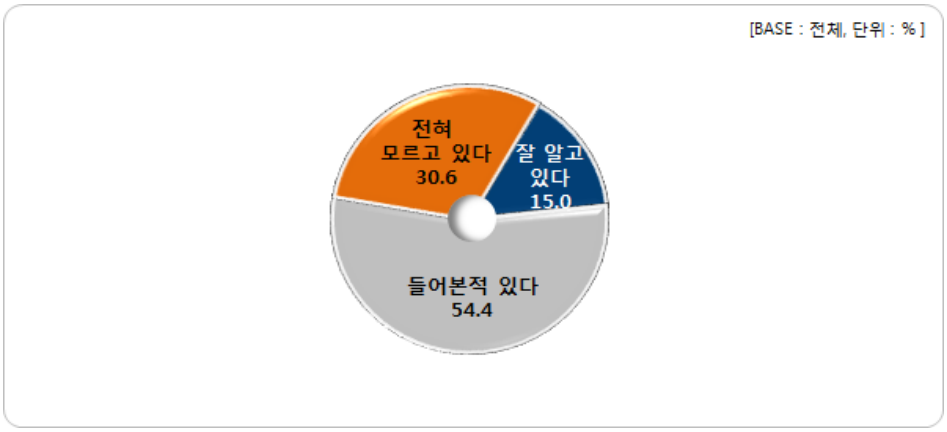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속기관이 출연(연) 및 특정(연), 비수도권 소재, 담당직무가 연구관리 부서장의 경우에서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인지강도를 나타내는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은 전문기관, 비수도권, 연구책임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8〉 인지도 -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구 분		사례수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 체		838	54.4	30.6	15.0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52.6	38.2	9.2
	대학	144	43.1	42.4	14.6
	기업	605	57.5	27.1	15.4
	전문기관	13	46.2	15.4	38.5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52.1	33.9	14.0
	비수도권	437	56.5	27.5	16.0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52.8	25.8	21.4
	연구원(학생포함)	161	47.2	44.7	8.1
	연구관리 부서장	163	57.1	25.2	17.8
	연구관리 담당자	355	57.2	28.7	14.1

2 경쟁형 R&D 제도 도입

-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 중 경쟁형 R&D 제도 도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2%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15〉 인지도 - 경쟁형 R&D 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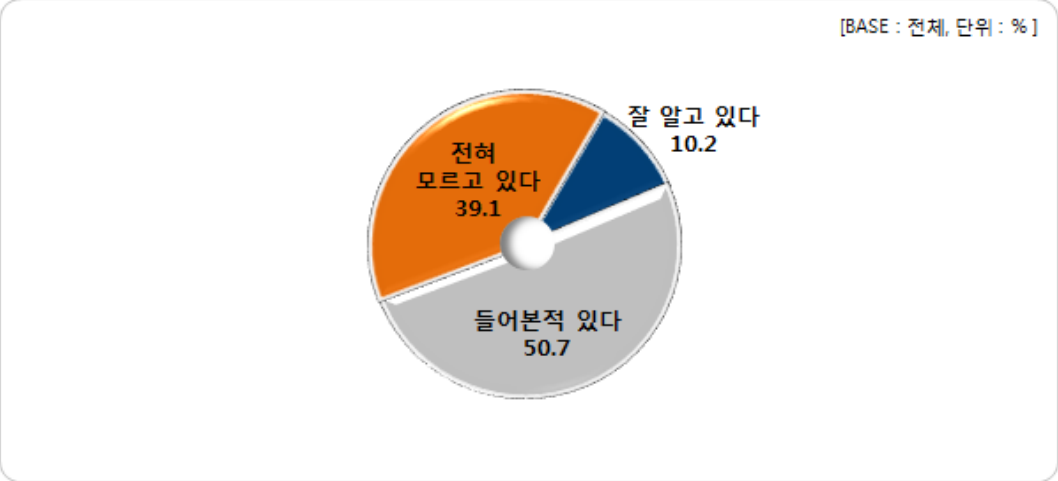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속기관이 출연(연) 및 특정(연), 비수도권 소재, 담당직무가 연구관리 담당자의 경우 경쟁형 R&D 제도 도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전문기관과 연구관리 부서장에서 인지강도(잘 알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9〉 인지도 - 경쟁형 R&D 제도 도입

구 분		사례수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 체		838	50.7	39.1	10.2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56.6	32.9	10.5
	대학	144	41.0	45.8	13.2
	기업	605	53.1	38.3	8.6
	전문기관	13	15.4	38.5	46.2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48.4	42.9	8.7
	비수도권	437	52.9	35.7	11.4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50.9	38.4	10.7
	연구원(학생포함)	161	44.7	49.7	5.6
	연구관리 부서장	163	51.5	35.6	12.9
	연구관리 담당자	355	53.0	36.3	10.7

3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 중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4%로 나타남

〈그림 4-16〉 인지도 -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속기관이 기업, 수도권 소재, 담당직무가 연구관리 부서장의 경우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업과 연구원(학생포함) 집단에서 인지강도(잘 알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0〉 인지도 -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구 분		사례수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 체		838	47.6	30.4	22.0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31.6	56.6	11.8
	대학	144	27.8	61.8	10.4
	기업	605	54.4	19.5	26.1
	전문기관	13	46.2	38.5	15.4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48.1	26.2	25.7
	비수도권	437	47.1	34.3	18.5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52.8	25.2	22.0
	연구원(학생포함)	161	46.0	23.0	31.1
	연구관리 부서장	163	54.0	24.5	21.5
	연구관리 담당자	355	43.1	38.9	18.0

4 연구비 규제 완화

-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 중 연구비 규제 완화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9.8%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17〉 인지도 - 연구비 규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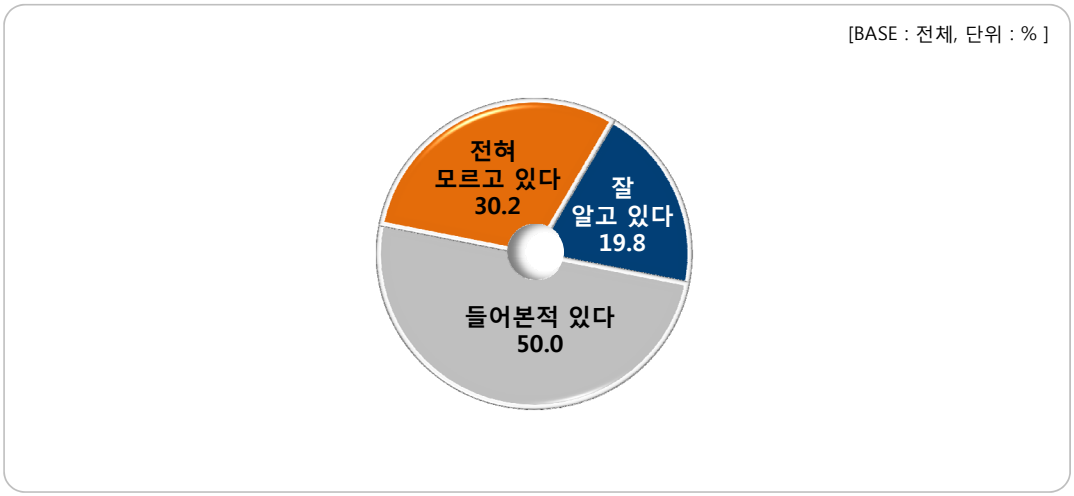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속기관이 기업, 비수도권 소재, 담당직무가 연구관리 부서장의 경우 연구비 규제 완화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인지강도를 나타내는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은 전문기관과 연구관리 담당자에서 높게 나타남

〈표 4-31〉 인지도 - 연구비 규제 완화

구 분		사례수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 체		838	50.0	30.2	19.8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46.1	22.4	31.6
	대학	144	38.2	20.1	41.7
	기업	605	53.6	33.9	12.6
	전문기관	13	38.5	15.4	46.2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47.9	33.4	18.7
	비수도권	437	51.9	27.2	20.8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46.5	36.5	17.0
	연구원(학생포함)	161	51.6	38.5	9.9
	연구관리 부서장	163	52.8	26.4	20.9
	연구관리 담당자	355	49.6	25.4	25.1

5 기술료 제도개선

-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 중 기술료 제도개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1%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18〉 인지도 - 기술료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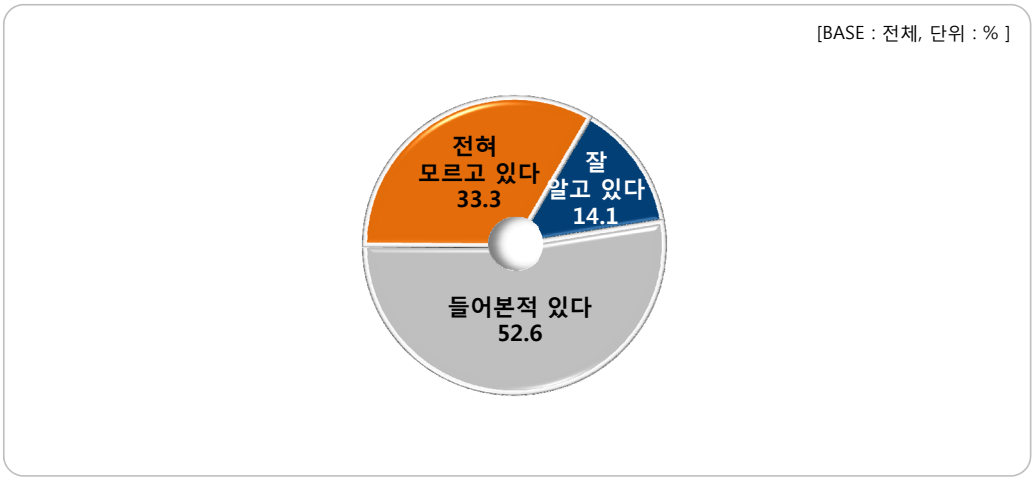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속기관이 출연(연) 및 특정(연), 비수도권 소재, 담당직무가 연구관리 부서장의 경우 기술료 제도개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인지강도(잘 알고 있다)는 전문기관과 연구관리 담당자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기업과 연구원(학생포함) 집단의 인지도는 낮게 나타남

〈표 4-32〉 인지도 - 기술료 제도개선

구 분		사례수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 체		838	52.6	33.3	14.1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55.3	27.6	17.1
	대학	144	47.9	37.5	14.6
	기업	605	53.4	33.6	13.1
	전문기관	13	53.8	7.7	38.5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47.9	38.4	13.7
	비수도권	437	57.0	28.6	14.4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49.7	34.6	15.7
	연구원(학생포함)	161	50.3	42.9	6.8
	연구관리 부서장	163	59.5	25.8	14.7
	연구관리 담당자	355	51.8	31.8	16.3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완화

-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36.8%로 나타난 반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8%로 나타남

〈그림 4-19〉 인지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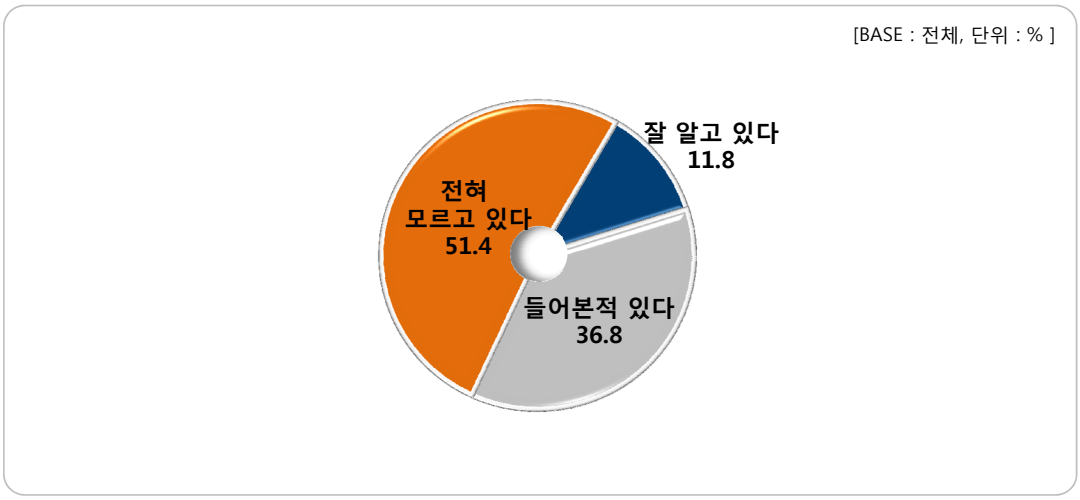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속기관이 기업, 수도권 소재, 담당직무가 연구책임자(교수포함)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인지강도(잘 알고 있다)의 경우 대학과 연구관리 담당자에서 높게 나타남

〈표 4-33〉 인지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완화

구 분		사례수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 체		838	36.8	51.4	11.8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50.0	38.2	11.8
	대학	144	38.9	24.3	36.8
	기업	605	34.5	59.8	5.6
	전문기관	13	38.5	38.5	23.1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35.7	54.6	9.7
	비수도권	437	37.8	48.5	13.7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32.7	59.1	8.2
	연구원(학생포함)	161	36.0	55.9	8.1
	연구관리 부서장	163	35.6	53.4	11.0
	연구관리 담당자	355	39.4	45.1	15.5

7 R&D 도우미센터 개편/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 중 R&D 도우미센터 개편/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3.2%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20〉 인지도 - R&D 도우미센터 개편/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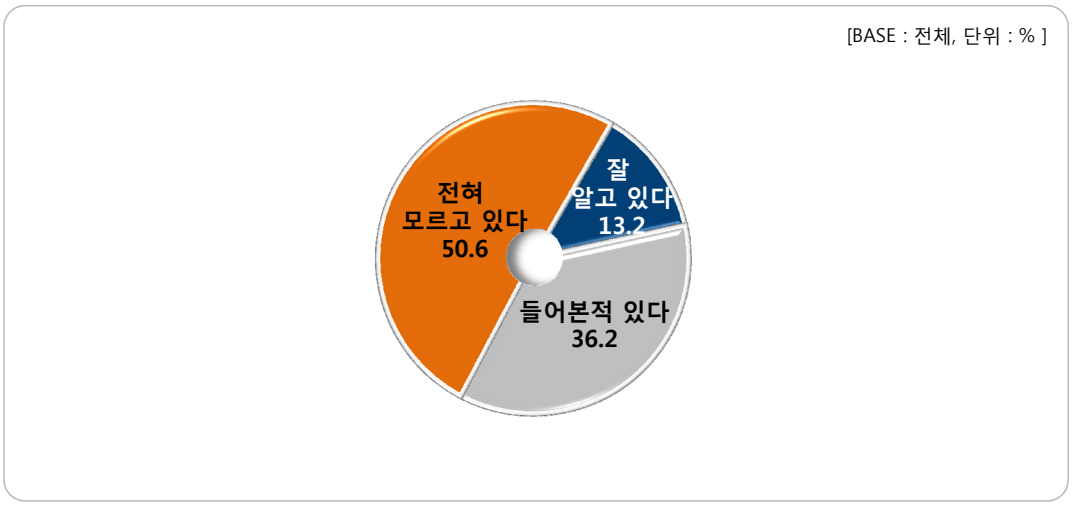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속기관이 출연(연) 및 특정(연), 비수도권 소재, 담당직무가 연구관리 부서장의 경우 R&D 도우미센터 개편/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인지강도(잘 알고 있다)의 경우는 대학과 연구관리 담당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4〉 인지도 - R&D 도우미센터 개편/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구 분		사례수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 체		838	36.2	50.6	13.2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46.1	31.6	22.4
	대학	144	33.3	37.5	29.2
	기업	605	35.7	56.4	7.9
	전문기관	13	30.8	38.5	30.8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32.2	55.1	12.7
	비수도권	437	39.8	46.5	13.7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35.8	56.0	8.2
	연구원(학생포함)	161	31.1	64.0	5.0
	연구관리 부서장	163	43.6	42.9	13.5
	연구관리 담당자	355	35.2	45.6	19.2

8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R&D사업 제재 강화

-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 중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 R&D사업 제재 강화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7%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21〉 인지도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 R&D사업 제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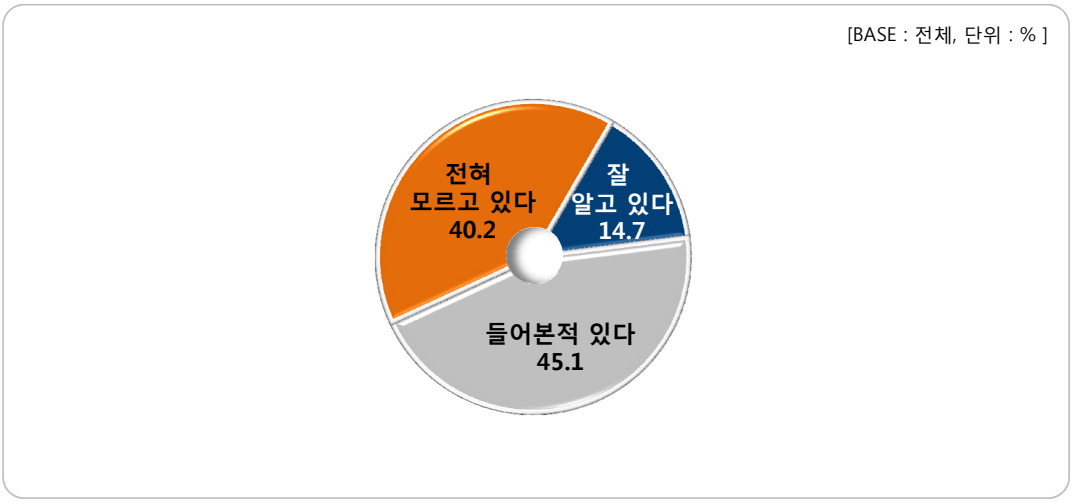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속기관이 출연(연) 및 특정(연), 비수도권 소재, 담당직무가 연구관리 담당자의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 R&D사업 제재 강화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전문기관과 연구관리 부서장 집단의 인지강도(잘 알고 있다)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5〉 인지도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R&D사업 제재 강화

구 분		사례수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 체		838	45.1	40.2	14.7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47.4	38.2	14.5
	대학	144	43.1	34.7	22.2
	기업	605	45.5	42.0	12.6
	전문기관	13	38.5	30.8	30.8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43.6	44.6	11.7
	비수도권	437	46.5	36.2	17.4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45.9	36.5	17.6
	연구원(학생포함)	161	38.5	55.3	6.2
	연구관리 부서장	163	46.6	33.7	19.6
	연구관리 담당자	355	47.0	38.0	14.9

2)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 중요도

-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 중요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이 100점 평균 8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구비 규제완화(77.1점), 혁신도약형 R&D 사업확대(76.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완화는 100점 평균 63.1점으로 제도개선 분야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22〉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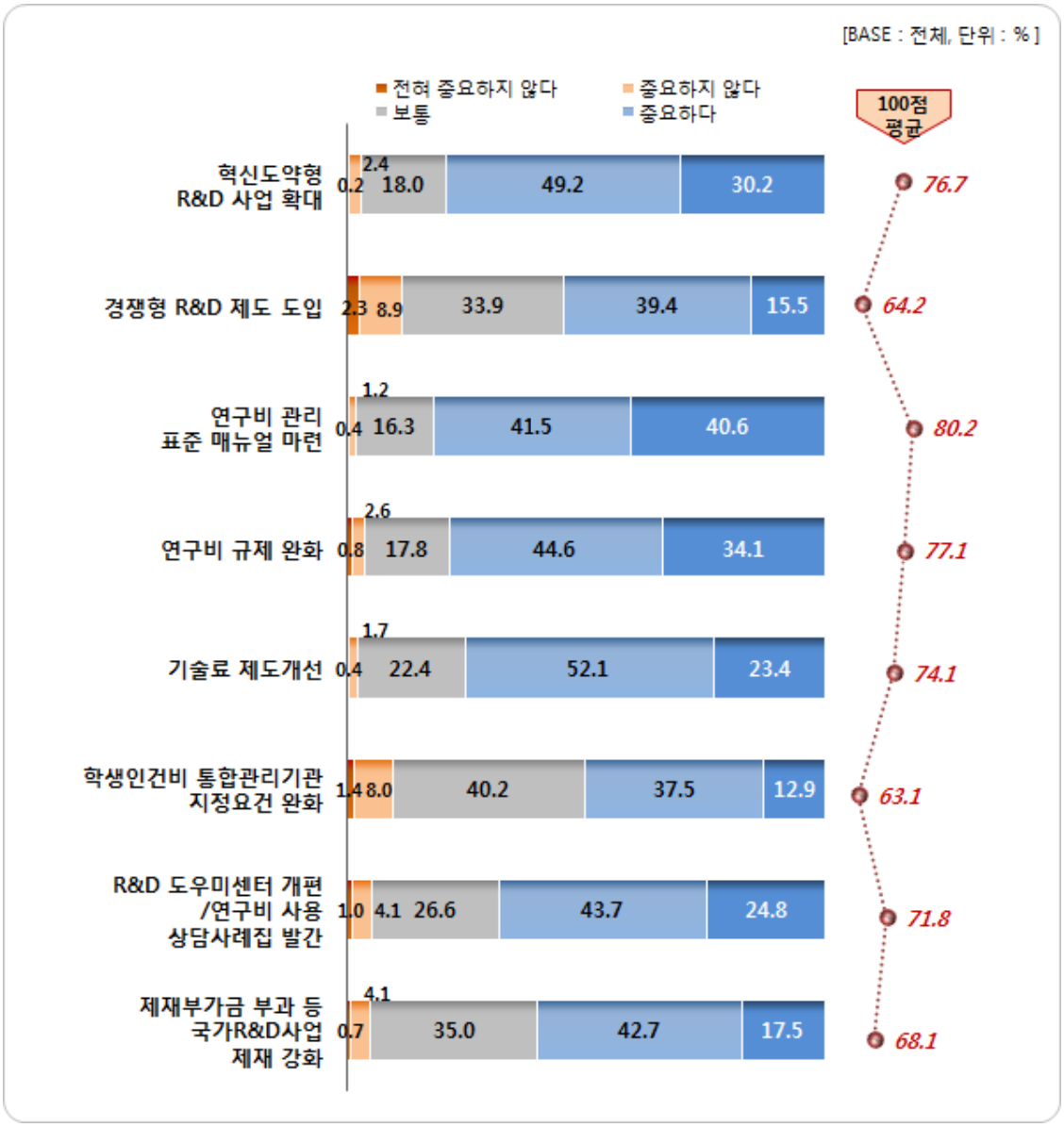

〈표 4-36〉 중요도 -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838	0.2	2.4	18.0	49.2	30.2	4.1	76.7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0.0	0.0	25.0	51.3	23.7	4.0	74.7
	대학	144	0.7	2.8	25.0	41.7	29.9	4.0	74.3
	기업	605	0.2	2.5	15.7	50.6	31.1	4.1	77.5
	전문기관	13	0.0	7.7	7.7	53.8	30.8	4.1	76.9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0.2	2.7	20.4	47.9	28.7	4.0	75.5
	비수도권	437	0.2	2.1	15.8	50.3	31.6	4.1	77.7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0.6	3.8	5.0	51.6	39.0	4.2	81.1
	연구원(학생포함)	161	0.6	3.1	19.3	49.7	27.3	4.0	75.0
	연구관리 부서장	163	0.0	2.5	17.8	44.8	35.0	4.1	78.1
	연구관리 담당자	355	0.0	1.4	23.4	49.9	25.4	4.0	74.8

〈표 4-37〉 중요도 - 경쟁형 R&D 제도 도입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838	2.3	8.9	33.9	39.4	15.5	3.6	64.2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2.6	9.2	38.2	38.2	11.8	3.5	61.8
	대학	144	4.2	8.3	27.8	41.7	18.1	3.6	65.3
	기업	605	1.8	9.3	34.9	38.8	15.2	3.6	64.1
	전문기관	13	0.0	0.0	30.8	46.2	23.1	3.9	73.1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2.5	9.5	34.9	40.1	13.0	3.5	62.9
	비수도권	437	2.1	8.5	33.0	38.7	17.8	3.6	65.4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4.4	11.9	25.8	39.6	18.2	3.6	63.8
	연구원(학생포함)	161	3.7	10.6	36.6	36.6	12.4	3.4	60.9
	연구관리 부서장	163	2.5	9.8	33.7	33.1	20.9	3.6	65.0
	연구관리 담당자	355	0.6	6.5	36.3	43.4	13.2	3.6	65.6

〈표 4-38〉 중요도 -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838	0.4	1.2	16.3	41.5	40.6	4.2	80.2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0.0	2.6	13.2	34.2	50.0	4.3	82.9
	대학	144	0.7	0.0	9.0	27.8	62.5	4.5	87.8
	기업	605	0.3	1.3	18.3	45.8	34.2	4.1	78.1
	전문기관	13	0.0	0.0	23.1	38.5	38.5	4.2	78.8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0.5	0.5	19.7	40.1	39.2	4.2	79.2
	비수도권	437	0.2	1.8	13.3	42.8	41.9	4.2	81.1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0.0	1.3	15.1	52.2	31.4	4.1	78.5
	연구원(학생포함)	161	1.2	1.2	18.6	45.3	33.5	4.1	77.2
	연구관리 부서장	163	0.0	0.6	19.0	44.2	36.2	4.2	79.0
	연구관리 담당자	355	0.3	1.4	14.6	33.8	49.9	4.3	82.9

〈표 4-39〉 중요도 - 연구비 규제 완화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838	0.8	2.6	17.8	44.6	34.1	4.1	77.1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0.0	2.6	15.8	38.2	43.4	4.2	80.6
	대학	144	0.7	1.4	13.2	41.0	43.8	4.3	81.4
	기업	605	0.8	3.0	18.5	46.9	30.7	4.0	76.0
	전문기관	13	7.7	0.0	46.2	15.4	30.8	3.6	65.4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1.2	3.0	17.7	46.4	31.7	4.0	76.1
	비수도권	437	0.5	2.3	17.8	43.0	36.4	4.1	78.1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0.6	2.5	17.6	42.8	36.5	4.1	78.0
	연구원(학생포함)	161	1.2	3.7	18.0	47.2	29.8	4.0	75.2
	연구관리 부서장	163	0.0	4.3	18.4	44.8	32.5	4.1	76.4
	연구관리 담당자	355	1.1	1.4	17.5	44.2	35.8	4.1	78.0

〈표 4-40〉 중요도 - 기술료 제도개선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838	0.4	1.7	22.4	52.1	23.4	4.0	74.1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0.0	0.0	27.6	56.6	15.8	3.9	72.0
	대학	144	1.4	1.4	27.8	52.8	16.7	3.8	70.5
	기업	605	0.2	2.0	20.5	51.2	26.1	4.0	75.3
	전문기관	13	0.0	0.0	23.1	61.5	15.4	3.9	73.1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0.2	2.2	22.2	51.1	24.2	4.0	74.2
	비수도권	437	0.5	1.1	22.7	53.1	22.7	4.0	74.1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0.0	3.1	15.1	51.6	30.2	4.1	77.2
	연구원(학생포함)	161	1.2	0.6	29.2	51.6	17.4	3.8	70.8
	연구관리 부서장	163	0.0	0.0	18.4	55.2	26.4	4.1	77.0
	연구관리 담당자	355	0.3	2.3	24.5	51.3	21.7	3.9	73.0

〈표 4-41〉 중요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완화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838	1.4	8.0	40.2	37.5	12.9	3.5	63.1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1.3	2.6	51.3	35.5	9.2	3.5	62.2
	대학	144	1.4	2.8	20.1	43.1	32.6	4.0	75.7
	기업	605	1.5	10.1	43.3	36.4	8.8	3.4	60.2
	전문기관	13	0.0	0.0	53.8	38.5	7.7	3.5	63.5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1.7	8.5	40.4	37.9	11.5	3.5	62.2
	비수도권	437	1.1	7.6	40.0	37.1	14.2	3.6	63.9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1.3	11.9	34.6	43.4	8.8	3.5	61.6
	연구원(학생포함)	161	1.2	6.2	39.8	37.9	14.9	3.6	64.8
	연구관리 부서장	163	2.5	8.0	42.3	34.4	12.9	3.5	61.8
	연구관리 담당자	355	1.1	7.0	42.0	36.1	13.8	3.5	63.6

〈표 4-42〉 중요도 - R&D 도우미센터 개편/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838	1.0	4.1	26.6	43.67	24.8	3.9	71.8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0.0	1.3	31.6	38.2	28.9	3.9	73.7
	대학	144	2.8	3.5	15.3	39.6	38.9	4.1	77.1
	기업	605	0.7	4.3	28.9	45.3	20.8	3.8	70.3
	전문기관	13	0.0	15.4	15.4	38.5	30.8	3.8	71.2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0.7	4.0	27.9	44.1	23.2	3.9	71.3
	비수도권	437	1.1	4.1	25.4	43.0	26.3	3.9	72.3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0.6	3.8	28.9	53.5	13.2	3.7	68.7
	연구원(학생포함)	161	3.1	5.0	28.0	46.0	18.0	3.7	67.7
	연구관리 부서장	163	0.0	4.9	30.1	39.3	25.8	3.9	71.5
	연구관리 담당자	355	0.6	3.4	23.4	40.0	32.7	4.0	75.2

〈표 4-43〉 중요도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R&D사업 제재 강화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838	0.7	4.1	35.0	42.7	17.5	3.7	68.1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1.3	5.3	46.1	36.8	10.5	3.5	62.5
	대학	144	0.7	4.9	29.9	43.1	21.5	3.8	70.0
	기업	605	0.7	3.8	34.7	43.5	17.4	3.7	68.3
	전문기관	13	0.0	0.0	38.5	38.5	23.1	3.8	71.2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0.7	5.0	36.7	41.4	16.2	3.7	66.8
	비수도권	437	0.7	3.2	33.4	43.9	18.8	3.8	69.2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1.3	5.7	30.8	44.0	18.2	3.7	68.1
	연구원(학생포함)	161	1.2	5.0	39.1	39.1	15.5	3.6	65.7
	연구관리 부서장	163	0.6	4.9	32.5	42.3	19.6	3.8	68.9
	연구관리 담당자	355	0.3	2.5	36.1	43.9	17.2	3.8	68.8

3)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문항 중, 국가R&D사업 제도개선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는 응답이 100점 평균 6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과에 대한 홍보 및 안내의 충분함 정도는 49.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23〉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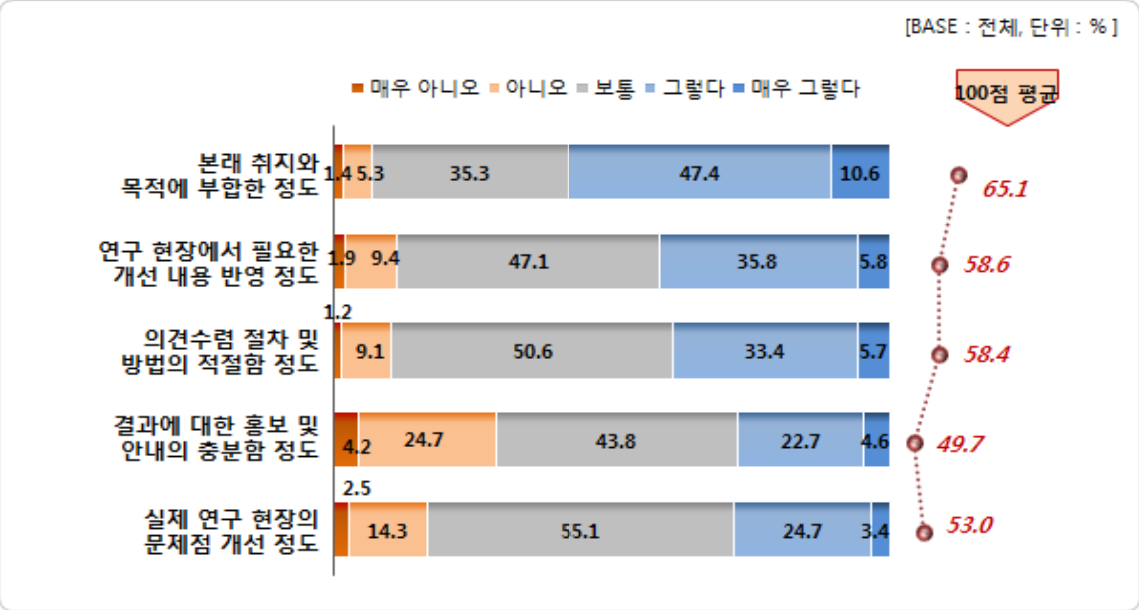

〈표 4-44〉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정도

구 분		사례수	매우 아니오	아니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838	1.4	5.3	35.3	47.4	10.6	3.6	65.1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0.0	11.8	34.2	48.7	5.3	3.5	61.8
	대학	144	2.8	7.6	29.9	50.0	9.7	3.6	64.1
	기업	605	1.3	3.8	36.7	46.6	11.6	3.6	65.8
	전문기관	13	0.0	7.7	38.5	46.2	7.7	3.5	63.5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1.5	5.0	40.9	43.9	8.7	3.5	63.3
	비수도권	437	1.4	5.5	30.2	50.6	12.4	3.7	66.8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1.9	3.1	29.6	53.5	11.9	3.7	67.6
	연구원(학생포함)	161	1.9	6.8	39.8	47.2	4.3	3.5	61.3
	연구관리 부서장	163	1.8	4.9	31.9	45.4	16.0	3.7	67.2
	연구관리 담당자	355	0.8	5.6	37.5	45.6	10.4	3.6	64.8

〈표 4-45〉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내용 반영 정도

구 분		사례수	매우 아니오	아니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838	1.9	9.4	47.1	35.8	5.8	3.3	58.6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0.0	15.8	47.4	34.2	2.6	3.2	55.9
	대학	144	3.5	13.2	42.4	36.1	4.9	3.3	56.4
	기업	605	1.7	7.6	48.3	35.9	6.6	3.4	59.5
	전문기관	13	0.0	15.4	46.2	38.5	0.0	3.2	55.8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2.0	10.7	49.6	33.2	4.5	3.3	56.9
	비수도권	437	1.6	8.2	44.9	38.2	7.1	3.4	60.2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1.3	6.3	47.8	39.0	5.7	3.4	60.4
	연구원(학생포함)	161	1.9	13.7	48.4	32.3	3.7	3.2	55.6
	연구관리 부서장	163	3.1	8.6	46.6	33.1	8.6	3.4	58.9
	연구관리 담당자	355	1.4	9.3	46.5	37.2	5.6	3.4	59.1

〈표 4-46〉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의 적절함 정도

구 분		사례수	매우 아니오	아니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838	1.2	9.1	50.6	33.4	5.7	3.3	58.4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1.3	14.5	53.9	28.9	1.3	3.1	53.6
	대학	144	2.8	11.1	55.6	23.6	6.9	3.2	55.2
	기업	605	0.8	7.9	49.1	36.2	6.0	3.4	59.6
	전문기관	13	0.0	7.7	46.2	38.5	7.7	3.5	61.5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1.0	11.0	53.9	28.4	5.7	3.3	56.7
	비수도권	437	1.4	7.3	47.6	38.0	5.7	3.4	59.8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1.3	10.1	44.0	39.6	5.0	3.4	59.3
	연구원(학생포함)	161	1.9	11.2	56.5	27.3	3.1	3.2	54.7
	연구관리 부서장	163	2.5	8.6	46.6	34.4	8.0	3.4	59.2
	연구관리 담당자	355	0.3	7.9	52.7	33.0	6.2	3.4	59.2

〈표 4-47〉 결과에 대한 홍보 및 안내의 충분함 정도

구 분		사례수	매우 아니오	아니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838	4.2	24.7	43.8	22.7	4.6	3.0	49.7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2.6	30.3	52.6	14.5	0.0	2.8	44.7
	대학	144	4.2	28.5	41.0	20.1	6.3	3.0	49.0
	기업	605	4.3	23.1	43.8	23.8	5.0	3.0	50.5
	전문기관	13	7.7	23.1	23.1	46.2	0.0	3.1	51.9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5.2	27.4	43.4	20.0	4.0	2.9	47.5
	비수도권	437	3.2	22.2	44.2	25.2	5.3	3.1	51.8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6.3	23.3	45.9	21.4	3.1	2.9	48.0
	연구원(학생포함)	161	4.3	34.8	36.6	20.5	3.7	2.8	46.1
	연구관리 부서장	163	6.1	19.0	38.7	29.4	6.7	3.1	52.9
	연구관리 담당자	355	2.3	23.4	48.5	21.1	4.8	3.0	50.7

〈표 4-48〉 실제 연구 현장의 문제점 개선 정도

구 분		사례수	매우 아니오	아니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838	2.5	14.3	55.1	24.7	3.3	3.1	53.0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1.3	15.8	59.2	22.4	1.3	3.1	51.6
	대학	144	3.5	16.0	56.3	21.5	2.8	3.0	51.0
	기업	605	2.5	13.7	54.0	26.0	3.8	3.1	53.7
	전문기관	13	0.0	15.4	69.2	15.4	0.0	3.0	50.0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2.7	17.7	56.9	19.7	3.0	3.0	50.6
	비수도권	437	2.3	11.2	53.5	29.3	3.7	3.2	55.2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3.8	10.1	50.3	32.7	3.1	3.2	55.3
	연구원(학생포함)	161	3.1	20.5	52.8	20.5	3.1	3.0	50.0
	연구관리 부서장	163	4.9	11.7	50.9	25.8	6.7	3.2	54.4
	연구관리 담당자	355	0.6	14.6	60.3	22.5	2.0	3.1	52.7

4) 전반적 만족도

-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100점 평균 57.6점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는 응답은 38.3%, 불만족은 10.1%로 나타남

〈그림 4-24〉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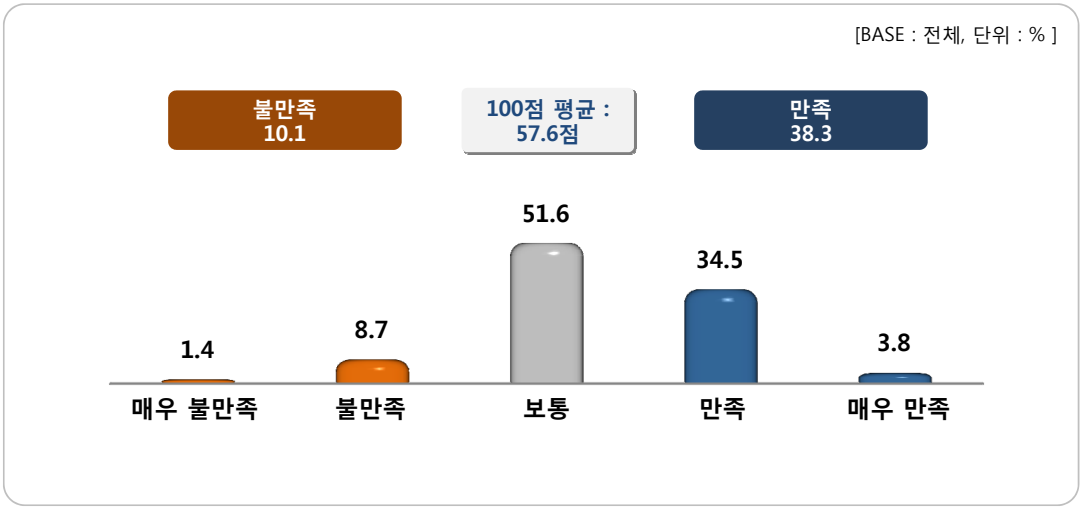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속기관이 기업, 비수도권 소재, 담당직무가 연구책임자(교수포함)의 경우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49〉 전반적 만족도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838	1.4	8.7	51.6	34.5	3.8	3.3	57.6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1.3	9.2	60.5	26.3	2.6	3.2	54.9
	대학	144	0.7	9.7	54.9	31.3	3.5	3.3	56.8
	기업	605	1.7	8.3	49.6	36.4	4.1	3.3	58.3
	전문기관	13	0.0	15.4	53.8	30.8	0.0	3.2	53.8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1.2	11.0	54.9	30.2	2.7	3.2	55.5
	비수도권	437	1.6	6.6	48.5	38.4	4.8	3.4	59.6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2.5	9.4	43.4	40.9	3.8	3.3	58.5
	연구원(학생포함)	161	1.2	11.2	54.0	29.8	3.7	3.2	55.9
	연구관리 부서장	163	3.1	8.6	46.0	37.4	4.9	3.3	58.1
	연구관리 담당자	355	0.3	7.3	56.6	32.4	3.4	3.3	57.8

5) 지속적인 개선 확대 필요 분야

-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 중 지속적인 개선 확대가 필요한 분야 1순위는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가 4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연구비 규제 완화(22.0%),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2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5〉 지속적인 개선 확대 필요한 분야 -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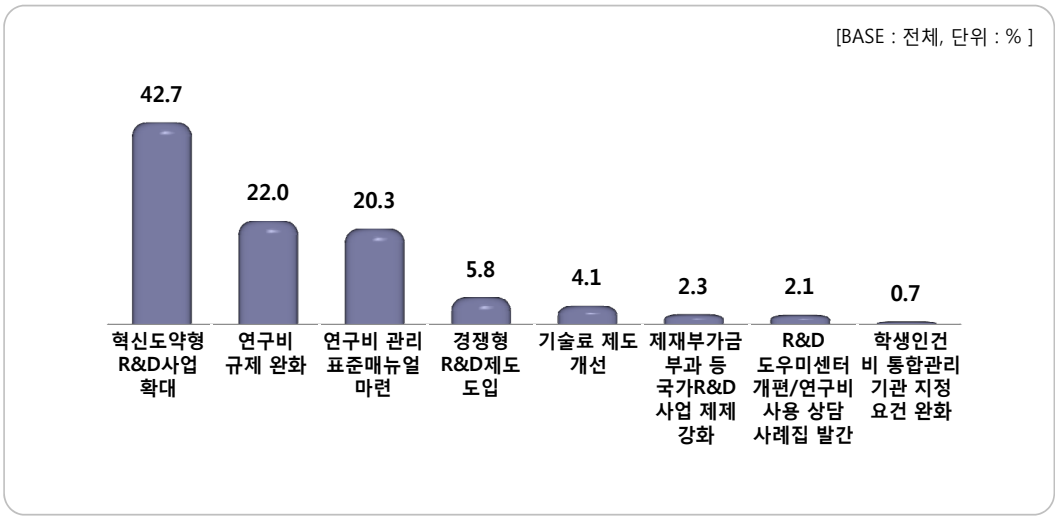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속기관이 기업, 비수도권 소재, 담당직무가 연구책임자(교수포함)의 경우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과 연구관리 담당자는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음

〈표 4-50〉 지속적인 개선 확대 필요한 분야 - 1순위_1

구 분		사례수	혁신도약형 R&D사업 확대	연구비 규제 완화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경쟁형 R&D제도 도입
전 체		838	42.7	22.0	20.3	5.8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27.6	21.1	36.8	7.9
	대학	144	22.2	28.5	41.7	1.4
	기업	605	49.6	20.7	13.1	6.4
	전문기관	13	38.5	15.4	23.1	15.4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42.4	23.4	19.5	4.7
	비수도권	437	43.0	20.6	21.1	6.9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55.3	23.9	3.8	8.2
	연구원(학생포함)	161	42.9	23.0	16.1	6.2
	연구관리 부서장	163	49.1	23.3	15.3	6.1
	연구관리 담당자	355	34.1	20.0	31.8	4.5

〈표 4-51〉 지속적인 개선 확대 필요한 분야 - 1순위_2

구 분		사례수	기술료 제도 개선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R&D 사업 제재 강화	R&D 도우미 센터 개편/ 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요건 완화
전 체		838	4.1	2.3	2.1	0.7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1.3	1.3	2.6	1.3
	대학	144	0.7	2.1	0.7	2.8
	기업	605	5.3	2.5	2.3	0.2
	전문기관	13	0.0	0.0	7.7	0.0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5.0	3.0	2.0	0.0
	비수도권	437	3.2	1.6	2.3	1.4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5.0	1.9	1.9	0.0
	연구원(학생포함)	161	3.7	3.1	1.9	3.1
	연구관리 부서장	163	1.8	2.5	1.2	0.6
	연구관리 담당자	355	4.8	2.0	2.8	0.0

〈표 4-52〉 지속적인 개선 확대 필요한 분야 - 2순위_1

구 분		사례수	연구비 규제 완화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경쟁형 R&D제도 도입	혁신도약형 R&D사업 확대
전 체		838	28.5	19.3	18.1	11.5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35.5	18.4	13.2	10.5
	대학	144	34.7	20.1	10.4	13.2
	기업	605	26.6	19.0	20.8	11.1
	전문기관	13	7.7	30.8	7.7	15.4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26.4	20.0	19.2	9.5
	비수도권	437	30.4	18.8	17.2	13.3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22.0	17.0	25.2	13.2
	연구원(학생포함)	161	26.1	24.2	12.4	14.9
	연구관리 부서장	163	28.8	17.8	17.2	10.4
	연구관리 담당자	355	32.4	18.9	18.0	9.6

〈표 4-53〉 지속적인 개선 확대 필요한 분야 - 2순위_2

구 분		사례수	기술료 제도 개선	R&D 도우미 센터 개편/ 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요건 완화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R&D 사업 제재 강화
전 체		838	11.1	5.3	3.2	3.0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5.3	10.5	5.3	1.3
	대학	144	3.5	6.9	9.0	2.1
	기업	605	13.7	4.1	1.7	3.0
	전문기관	13	7.7	7.7	0.0	23.1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12.0	6.2	3.7	3.0
	비수도권	437	10.3	4.3	2.7	3.0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14.5	1.9	1.9	4.4
	연구원(학생포함)	161	10.6	2.5	6.2	3.1
	연구관리 부서장	163	19.0	2.5	1.8	2.5
	연구관리 담당자	355	6.2	9.3	3.1	2.5

〈표 4-54〉 지속적인 개선 확대 필요한 분야 - 3순위_1

구 분		사례수	연구비 규제 완화	기술료 제도개선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R&D 도우미 센터 개편/ 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전 체		838	17.8	17.1	16.5	14.4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25.0	10.5	18.4	17.1
	대학	144	12.5	8.3	11.8	22.2
	기업	605	18.0	19.5	17.4	12.2
	전문기관	13	23.1	38.5	15.4	15.4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15.0	17.0	16.7	15.2
	비수도권	437	20.4	17.2	16.2	13.7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21.4	14.5	17.6	11.3
	연구원(학생포함)	161	19.3	17.4	14.9	11.2
	연구관리 부서장	163	14.7	24.5	16.0	18.4
	연구관리 담당자	355	16.9	14.6	16.9	15.5

〈표 4-55〉 지속적인 개선 확대 필요한 분야 - 3순위_2

구 분		사례수	혁신 도약형 R&D사업 확대	경쟁형 R&D제도 도입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R&D 사업 제재 강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요건 완화
전 체		838	11.7	9.4	8.8	4.3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9.2	13.2	2.6	3.9
	대학	144	11.1	6.9	12.5	14.6
	기업	605	12.2	9.8	8.9	2.0
	전문기관	13	7.7	0.0	0.0	0.0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13.5	8.5	9.2	5.0
	비수도권	437	10.1	10.3	8.5	3.7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10.1	11.3	9.4	4.4
	연구원(학생포함)	161	14.3	8.7	7.5	6.8
	연구관리 부서장	163	7.4	11.7	5.5	1.8
	연구관리 담당자	355	13.2	7.9	10.7	4.2

6)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항목

- 국가R&D사업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가 3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25.1%), 기타(2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6〉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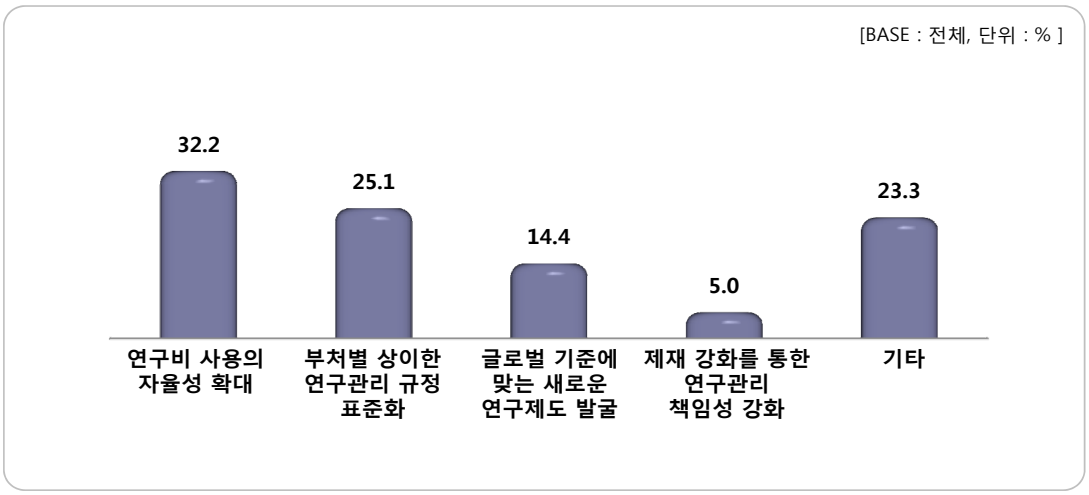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속기관이 기업, 수도권 소재, 담당직무가 연구원(학생 포함)의 경우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응답으로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기관의 경우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새로운 연구제도 발굴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4-56〉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항목

구 분		사례수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새로운 연구제도 발굴	제재 강화를 통한 연구관리 책임성 강화	기타
전 체		838	32.2	25.1	14.4	5.0	23.3
소속기관명	출연(연) 및 특정(연)	76	21.1	46.1	13.2	3.9	15.8
	대학	144	27.1	44.4	6.9	3.5	18.1
	기업	605	35.2	18.0	16.0	5.5	25.3
	전문기관	13	15.4	15.4	30.8	7.7	30.8
소속기관 소재지	수도권	401	33.9	23.2	14.2	4.5	24.2
	비수도권	437	30.7	26.8	14.6	5.5	22.4
담당직무	연구책임자(교수포함)	159	34.6	18.2	18.2	6.9	22.0
	연구원(학생포함)	161	37.3	21.1	12.4	7.5	21.7
	연구관리 부서장	163	31.9	21.5	19.6	3.1	23.9
	연구관리 담당자	355	29.0	31.5	11.3	3.9	24.2

〈표 4-57〉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새로운 연구제도 발굴_의견

구 분	내 용
1	특정(연) 및 출연(연)에 지원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 필요
2	국제공동연구는 강조하고 있으나 연구비 집행이 자유롭지 못해 표준매뉴얼 필요
3	다른 나라의 기술연구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확립
4	주요 선진국(독인 등)의 특/장점 벤치마킹 필요
5	국제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필요
6	글로벌 기준에 대한 안내 및 그 상황에 대한 사전 안내 필요
7	국제 공동연구에서 실험법(방법론)등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제도 필요
8	제도 활성화가 필요
9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른 판로영역 지원 확대
10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전문가그룹(자문단 운영) 확대
11	성과 위주의 연구개발이 아닌 미래지향적 기술 개발 필요
12	평점 위주의 중간 및 최종평가제도 보완

〈표 4-58〉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_의견

구 분	내 용
1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규제 완화 필요
2	항목별 사용한도를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3	예상치 못한 연구비 사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
4	연구비 사용증명에 대한 소요시간이 많고, 부정사용 적발시 제재 강화 필요
5	세제혜택에 대한 확대 필요
6	공개구매시스템 도입을 통한 편리하고 투명한 원부자재 구매 관리 필요
7	관리기관마다 상이한 기준이 아닌 표준화 도입 필요
8	소액결제시 수수료가 높아 이에 대한 보완 필요
9	설비 및 SW 구매시 규제가 너무 많아 이에 대한 완화 필요

〈표 4-59〉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_의견

구 분	내 용
1	사업계획서 양식, 연구부서, 기술 범주 등 통일화된 규정 필요
2	현장과 관리기관과 보는 관점이 달라 평가시 애로사항이 많음
3	연구비 정산시 전문기관(회계법인)이 규제 완화를 적용하지 않음
4	감독/감시기관의 단일화 시급
5	실제 현장과 호흡하는 기관(연구재단 등)이 제도개선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6	행정업무의 간소화

〈표 4-60〉 제재 강화를 통한 연구관리 책임성 강화_의견

구 분	내 용
1	연구비 사용 목적이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필요
2	연구비 사용 투명성 필요
3	국책사업 경과대비 연차별 성공률 집계 공개 도입
4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확대
5	연구비 관리에 대한 교육 확대
7	협약해약과제에 대한 연구비 전액환수 조치 필요
8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강조

〈표 4-61〉 기타_의견

구 분	내 용
1	투명하고 세세한 연구비 관리 필요
2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간소화된 절차 필요
3	구매 조건부 과제 등과 같이 과제 성공시 수요처와의 거래가 성립 되는 성격의 과제는 성공에 따른 수요처에서 구매시 구매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 사업 초기 협약에 명시 바람
4	Kick Starter와 같은 형태의 지원 제도도 연구해볼만 함
5	관련 연구소에 시험(성적서)을 의뢰하여 데이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평가단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음
7	연구비 편중 해소 (현재 IBS 등 일부에게 너무 많은 연구비 편중)
8	영업/마케팅 강화를 위한 사업, 협력업체 발굴을 위한 사업
9	정부의 노력에도 일선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어렵더라도 더 많은 공지와 홍보 필요
10	국내 최초의 제품에 대한 지원 방안이 부족함
11	중견기업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가 필요
12	1개 과제에 1개 업체에 만 선정하는 것은 참여에 한계가 있어 연구에 기회가 적으므로 경쟁을 통한 연구 필요
13	부처별 연구비관리 시스템 통합화 및 특정 은행 통장개설 강제 폐지
14	마케팅과 연계된 제도 필요
15	R&D사업 심사 평가를 위한 위원의 전문성 제고
16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강조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만족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13년 3월부터 현재까지('14년 10월) 연구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국가R&D사업 관리 효율화의 일환으로 국가R&D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와 제도개선 내용들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수요를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바쁜 시간을 내어 작성해 주신 응답 내용은 앞으로 국가R&D사업 제도개선의 발전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관 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조사 기관 : (주) 포커스컴퍼니
담 당 자 : 박주찬 선임연구원

2014. 11

미래창조과학부

Part 1 일반 현황(공통)

문1. 귀하가 속한 기관명과 소재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소속기관명	
소속 기관 소재지 (시, 도 별)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⑯ 제주 ⑰ 세종

문1-1. (기업 연구소 소속 응답자만) 귀하가 속한 기업의 기업규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2조 〉

대기업	아래 각 요건의 하나 이상 충족 시 대기업으로 정의 : 1.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3.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4.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문2.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 )

① 연구책임자(교수 포함) ② 연구원(학생 포함) ③ 연구관리 부서장 ④ 연구관리 담당자

Part 2 국가R&D사업 제도개선 관련

♣ 이하의 내용은 2013~2014년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입니다.

문3. 아래 2013~2014년 국가R&D사업 제도개선 8개 분야 중 각 분야별 인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인지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	응답 선택 (V 체크)		
	전혀 모르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알고 있다
①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①	②	③
② 경쟁형 R&D 제도 도입	①	②	③
③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①	②	③
④ 연구비 규제 완화	①	②	③
⑤ 기술료 제도개선	①	②	③
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완화	①	②	③
⑦ R&D 도우미센터 개편/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①	②	③
⑧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R&D사업 제재 강화	①	②	③

→ 〈별첨 3〉의 지시문이 게재될 예정

문4. 아래 2013~2014년 국가R&D사업 제도개선 8개 분야 중 각 분야별 중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중요성 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분야	응답 선택 (V 체크)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② 경쟁형 R&D 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③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④ 연구비 규제 완화	①	②	③	④	⑤
⑤ 기술료 제도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완화	①	②	③	④	⑤
⑦ R&D 도우미센터 개편/ 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①	②	③	④	⑤
⑧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R&D사업 제재 강화	①	②	③	④	⑤

문5. 다음은 2013~2014년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과 내용 반영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응답 선택 (V 체크)				
	매우 아니오	아니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국가R&D사업 제도개선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했다. (연구자율성 확대, 행정부담 경감, 규제완화, 제재 조치를 통한 책임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5-2. 국가R&D사업 제도개선은 실제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내용이 잘 반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6. 다음은 2013~2014년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응답 선택 (V 체크)				
	매우 아니오	아니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이 적절했다. (제도개선 협의회, 공청회, 부처협의 등)	①	②	③	④	⑤
6-2. 국가R&D사업 제도개선 결과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이 충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7. 다음은 2013~2014년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 효과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응답 선택 (V 체크)				
	매우 아니오	아니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7-1. 국가R&D사업 제도개선 결과를 통해 실제 연구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개선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8. 2013~2014년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문9. 미래창조과학부가 그동안 추진한 국가R&D사업 제도개선 8개 세부 분야 중 지속적인 개선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1,2,3순위를 선정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혁신도약형 R&D사업 확대
② 경쟁형 R&D제도 도입
③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④ 연구비 규제 완화
⑤ 기술료 제도개선
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요건 완화
⑦ R&D 도우미센터 개편/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⑧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R&D사업 제재 강화

문10. 국가R&D사업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 그 세부 내용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 )

①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새로운 연구제도 발굴 ( )
②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 )
③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 ( )
④ 제재 강화를 통한 연구관리 책임성 강화 ( )
⑤ 기타 ( )

※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제1절 국가 R&D 제도개선 홍보 및 부패방지 제도개선

1. 국가 R&D 제도개선 설명

가. 혁신도약형 R&D 사업 확대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목표로 도전성 및 창의성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① 높은 목표수준을 고려하여 실패하더라도 성실한 연구수행이 인정된 경우 불이익을 면제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재도전 기회 부여

② 기술동향 및 환경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 발견 등으로 인하여 연구목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목표 수정 허용

※ “국가연구개발제도 개선방안” (국과심 확정, ’13.12.19)

나. 경쟁형 R&D 제도 도입

▢ 동일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자가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탈락하게 하는 ‘경쟁형 R&D 제도’ 도입

※ “국가연구개발제도 개선방안” (국과심 확정, ’13.12.19)

다.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사용 및 정산 시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집행 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① 인건비 등 8개 세목의 최대 53개 기준을 34개 기준으로 통일

② 인건비 등 8개 세목의 최대 37개 서류를 25개로 간소화

※ “국가연구개발제도 개선방안” (국과심 확정, ’13.12.19)

라. 연구비 규제 완화

▢ 연구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경직적인 연구비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제고

① 10만 원 이하 회의비*는 영수증만으로 집행을 허용

* (기존) 사전 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증빙서류로 제출

②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구매 허용

* (기존) 연구와 직접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비(직접비)로 구매 불가

※ 「공동관리규정」 개정 ('14.8월)

마. 기술료 제도개선

▢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관련 기준의 통일, 보상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경상기술료 제도개선 등

①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비용에 기술료의 10%이상 배분토록 개정

②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③ 정부납부 기술료 통계관리 전문기관 지정 운영

④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징수 및 납부관련 기준 표준화 방안 마련

⑤ 참여연구원 합리적 보상기준(개인 연간 상한액 20억원) 마련 마련

⑥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 및 경상기술료율 인하 및 범부처 확산

⑦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가이드라인 마련

⑧ 2014년도 국가R&D 기술료 제도 매뉴얼 마련

※ ① 기술이전·사업화 기술료 10%(「공동관리규정」개정, '13.9월), ② 기여자 보상('13.10월), ③ 통계관리 전문기관('13.12월), ④ 기준 표준화('14.1월) ⑤ 보상기준(「공동관리규정」개정, '14.8월), ⑥~⑧ 경상기술료 제도개선,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가이드라인 및 기술료 제도 매뉴얼 ('14. 8월)

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완화

▢ 학생인건비 지정취소 요건을 명확화하고 지정요건인 전산시스템 구축항목 완화

① 기관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산정 기준 및 관련 서식 명확화

② 통합관리에 꼭 필요한 전산시스템 항목만으로 통합 · 간소화(17개→8개 항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 (미래부 고시 제2014-21호, ’14.3.7)

사. R&D 도우미센터 개편 / 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 연구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R&D도우미센터 개편

① 연구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 관행 등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R&D신문고” 개설

② 상담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좋은 1800-7109(친한연구)로 변경

- 연구비 부당 집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비 사용 주요 FAQ 및 부정 집행 사례 등을 모아 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 배포

① 제목 : 연구비 사용,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② 제공 : 미래부 홈페이지,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 파일 제공

※ “연구비 사용 상담사례집” 발간 배포 (미래부 연구제도과-371, ’14.3.7)

아. 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가R&D사업 제재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의 자율성은 최대한 확대하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를 추진

①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시 5배 이내(용도외 사용금액)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② 참여제한 제재 대상을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서 참여연구원, 단체, 소속 임직원까지 확대

※ 「과학기술기본법」개정(’14.5월)

자.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 공동관리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관리 수행절차별 세부기준을 담은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① 연구관리 수행절차별 세부기준을 연구현장 운영 중심으로 정리하고 부처별 특성상 개별 기준을 운영하는 사례도 함께 수록

②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중 참여자격, 협약체결서류, 이의신청제도 및 가감점 등 7개 항목에 대한 표준화 방안 마련

- 표준화 방안 내용도 매뉴얼에 함께 수록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국과심운영위 확정, '14.11.21)

차.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

▢ 대학의 간접비 산출방법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일괄적용방식에서 실소요 원가계산에 의한 산출방식으로 개선

① 연구에 필요한 간접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간접비로 인정하여 연구지원 기능 강화

② 결산서를 기준으로 간접비 산출항목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산출기준의 신뢰도 제고 및 행정부담 완화

③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의 개정('12.4)에 따라 운영계산서 중 간접비 산출시 적용되는 계정과목을 전면 반영

2. 부패방지 제도개선

가. 검토 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범부처(18개 부 · 처 · 청)로 확산되고, 예산도 18조원에 이르는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 정부R&D예산 : ('95) 2.2조원 → ('03) 6.5조원 → ('08) 11.1조원 → ('14) 17.7조원

○ 그러나, 연구비 집행, 과제 관리 등의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비리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R&D사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

* 최근 5년간('08~'12) 감사원 감사결과 총 547건의 문제적발 및 관련금액 652억원 수준

※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의 뇌물수수로 연구비 비리 이슈화

▢ 이에 따라, 비리유형별로 문제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 및 R&D 신뢰도 제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미래부에서 '부패척결 및 소통강화 합동 워크숍' 개최('14.8.23)

나. 검토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문제 발생 분야를 4개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

① 연구비 관리 및 집행 분야
② 인건비 관리 및 집행 분야
③ 연구기자재 구입 및 활용 분야
④ 연구과제 관리 및 성과 관리 분야

▢ 유형별로 문제사례 및 조치결과(제도개선 포함) 정리(기조치 사항 중심)

※ 감사원 R&D감사 결과 참고(2013 국가R&D 감사백서)

▢ 추가로 R&D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검토

다. 유형별 문제사례 및 조치 내용

1) 연구비 관리 및 집행 분야

▢ 문제 사례

【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사용 】

- (계상항목 미이행) 사업계획서상 기업 자체부담금에 계상된 항목을 정부출연금으로 사용

  ex) oo업체가 자체부담하기로 한 파일럿 플랜트 공사비 11억원 중 정부출연금으로 819백만 원을 사용('08~'09)

- (기자재 허위구입)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의 과다계상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연구비 횡령

  ex) oo업체에서 연구장비를 3억9천만원에 구입하고 8억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 납품 계약서 작성('07~'08)

- (목적 외 사용) 유흥업소에서 회식비(주류대)로 사용한 것을 기술정보활동비로 사용

- (연구비 횡령) 연구과제 수행 중 발생한 수입은 수입조치가 되어야 하나, 국제공동연구 중 해외기관으로부터 인건비로 제공받은 수입을 개인적 사용

  ex) oo연구원은 미국국립보건원에서 외부인건비 명목으로 2억6천여만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06~'08)

【 연구비 정산 소홀 】

- 중앙부처로부터 연구개발비 정산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정산업무를 회계법인에 재위탁한 채 현장실사 등 업무 소홀
  - 현장실사 권한 없는 회계법인은 연구비 목적외 사용, 세금계산서 이중사용, 연구 미참여자의 내부인건비 부당수령 등 확인이 어려워 형식적 정산 수행

【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

- (중복집행) 소속기관과 외부기관에서 국외출장여비 중복 집행
- (규정 불합리) 공동관리규정에 기관별 여비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기관간 형평성 문제 발생 및 별도 여비규정을 높게 마련하여 과다계상*

  * 국공립대학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나 별도 여비규정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은 대학자체여비규정이 있음에도 산학협력단 여비규정을 마련하여 과다 집행
- (개인적 용무로 공무출장 활용)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으로 승인을 받은 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허위로 출장비용 처리

▢ 조치 내용

- (목적외 사용 등 부정사용)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연구 책임자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조치

⇒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엄정 적용

※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정부 출연금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환수 및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과금 부가 등

- (연구비 정산 소홀) 지출증빙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정산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일부를 추출하여 정산 의무화

-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적용할 수 있는 기준마련

⇒ 과제수행기관의 자체여비기준을 적용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금지

※ 출연(연)의 경우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해 미래부 지침에 따라 여비규정 개정 추진

2) 인건비 관리 및 집행 분야

■ 문제 사례

【 인건비 부당집행 】

- (미참여 연구원 인건비 지급) 연구원이 연구연가를 실시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를 계상

  ex) 감사원 감사결과 15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117명이 연가, 교육훈련 등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2,426백만여원을 지급 · 정산('07～'09)

-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지급) 간접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지원인력 인건비에 대하여 직접비에서 지급하고 잉여 간접비는 성과급 등으로 사용

  ※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직접비 내 인건비 세목으로, 지원인력 급여는 간접비 비목으로 계상토록 규정

- (인건비 과다 계상) 인건비 계상시 연봉 외 급여인 능률성과급을 포함하여 과다 계상하고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

  ※ 인건비는 소속 기관 급여기준에 따라 연봉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봉급여는 정액급, 법정수당 등이고 능률성과급은 연봉급여에서 제외

【 인건비 횡령 】

- (인건비 부당수령)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외부연구원으로 등록하여 부당 수령

- (학생연구원 인건비 횡령)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개인계좌 또는 공동관리계좌로 입금시켜 개인용도 및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

  ex) oo과제책임자가 지도교수 직위를 이용하여 학생연구원들이 받은 인건비 · 장학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246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08～'11)

【 지급기준 미비 】

- (외부인건비 관리) 공동관리규정 적용 제외 대상인 출연연의 기본사업에서 외부인건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외부연구원에 대해서도 인건비 추가 지급

- (연구수당 과다지급) 공동관리규정 적용 제외 대상인 출연연의 기본사업에서 공동관리규정의 연구수당 기준(인건비 20%이내)을 초과하여 약 40～50%까지 연구수당 지급

【 참여율 관리 】

- (참여율 관리) 출연연 등에서 연구원의 연구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계상함에 따라 인건비를 과다 지급

■ 조치 내용

- (인건비 부당집행 및 횡령) 인건비를 과다 지급받은 기관에 대하여 차액을 국고에 회수하고, 인건비를 횡령한 연구자는 참여제한 및 징계 조치

⇒ 대학교수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부당수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

*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연구책임자의 직접관리 방지)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 (지급기준 미비) 연구수당 지급 기준, 외부인건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출연연 기본사업 관리기준을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완

⇒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외부연구자는 추가 인건비 지급 금지

- (참여율관리) NTIS를 통해 참여연구원의 과제별 참여율 정보관리 체계 구축

⇒ 연구과제별로 모든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NTIS에 등록

3) 연구기자재 구입 및 활용분야

■ 문제 사례

【 연구기자재 구매 】

- (외자장비 납품연장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관연구기관이 납품연장 사유를 조작하여 납품업체의 지체상금을 면제해주고, 납품 후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장비의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아 연구수행에 차질

- (고가 낙찰을 위한 부당 공동행위)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장비를 특정기업이 고가에 입찰하도록 요청하고, 특정기업은 낙찰될 수 있도록 지인이 운영하는 3개의 기업과 공동참여하여 29건(내자 7, 외자 22) 낙찰('06~'10)

- (임차가능 연구기자재 구입 승인)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동일장비(주사전자현미경)에 대하여 69개 연구기관에는 임차하도록 한 반면, 특정기업에는 5억1천만원에 구입 승인

- (공동활용 장비의 구매)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이동식지진계)를 충분히 공동활용이 가능하나, 주관연구기관에서 구입 추진
- (구매 업무처리 부적정) 과제 종료직전(16일전) 장비를 구입하여 장비구입비 환수를 피하기 위하여 구매 일자 변경하여 정산서류 제출
- (연구장비 중복 구축)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 구축시 연구장비예산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11.7월 이후 구축한 338종 장비 중 268종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고 동일·유사한 장비 77종을 구축
- (장비의 과다 현물계상) 자산으로 관리하지 않는 장비를 현물로 계상하고 자산으로 관리하는 장비도 기준을 초과*하여 현물계상

  * 현물로 계상하는 연구장비는 연구기관 장부가의 20%만 인정(산업부)

【 연구기자재 활용 】

- (연구장비 임차제도 미활용) 연구장비 임차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사용을 위해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여 예산 낭비 발생

  ※ 사용기간이 짧았던 장비를 대상으로 임차비용과 취득가액을 비교한 결과, 임차사용이 연구비의 68% 절감 효과(33개 연구기관, '07.1~'10.7월 구매한 장비대상)

- (연구장비 등록·관리 부적정) NTIS 등록 대상인 공동활용 가능한 연구 장비의 등록률 저조

  ※ '07~'10년까지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5,540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29.9%(1,645대)만 등록

- (연구장비 사후관리 부적정) 연구가 종료된 장비라 할지라도 단순보유·방치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나, '02~'08년 구입한 3천만원 이상 장비(4,997개)의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5.8%(291개) 방치

  ※ 타 연구 재활용 66.8%, 본연구 활용 24.9%, 폐기 2.5%

- (연구장비 등록규정 미비로 공동활용 활성화 저해) 연구자 단독활용으로 NTIS에 등록할 수 있는 특수목적의 연구장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 등록대상 연구장비 중 37.5%가 단독활용으로 등록

▢ 조치 내용

- 연구장비 사후관리 강화 및 공동활용 촉진 방안 마련

⇒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을 보완('13.3월)하여 장비 구매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 관리기준 정비

⇒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업 및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국가통합 서비스(ZEUS) 구축 · 운영('13.2월~)

⇒ 장비관리에 대한 연구현장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최초로 현장 전수조사 실시('13.8~11월)

4) 연구과제 관리 및 성과 관리 분야

■ 문제 사례

【 연구과제 관리 】

- (부정행위 관리 미흡)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표절하거나, 과제와 관련없는 위탁연구용역을 수행
- (유사 · 중복과제 검증 미흡) 연구개발과제 선정과정에서 유사 · 중복과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여 중복지원 발생
- (중간평가 소홀) 연구내용이 부실함에도 중간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하여 계속지원한 결과, 최종평가에서 '실패'로 확정
- (결과물 미제출) 연구과제 종료 후 논문 등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연구자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고,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례 발생

※ ㅇㅇ병원에서 '05~'09년 사이에 지원한 연구과제 총 145건 중 38건이 제출기한(2년)이 지났는데도 결과물 미제출

【 성과 관리 】

- (개인명의 특허권 등록)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 발생한 특허를 연구기관에 알리지 않고 연구책임자가 개인 명의로 등록 · 출원

※ 대학의 경우 국가R&D사업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도 개인명의로 특허출원 · 등록한 사례 다수

- (특허권 관리 미흡) 협약에 소유권이 없는 기관, 개인이 특허를 소유하거나 기술료 지급없이 임의로 특허권을 이전
- (미활용 특허 남발) 출연연이 연구 성과목표 달성 등을 위해 엄정한 사전심사 없이 무리하게 특허 출원하거나 장기 미활용 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 · 관리 방안 없이 유지비용만을 지출

【 기술료 관련 】

- (기술실시계약 미체결) 연구기관 소유의 연구개발성과물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없이 임의로 참여기업 등에게 실시토록 하고 기술료 미납부
- (기술료 보상금 지급기준 미흡)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술료 보상금 지급기준이 전체 한도(50%이상)만 규정되어 연구책임자가 보상금을 독식하는 등 불합리한 지급사례 발생

【 관리기준 】

- (제재기준 상이) 연구결과가 불량한 과제 등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기준이 부처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공정성 · 일관성 부족

■ 조치 내용

- (연구과제 관리) 연구내용 표절, 중복연구 수행, 결과물 미제출 등의 과제에 대하여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 전문기관은 NTIS를 통하여 과제선정시 유사 · 중복과제 검증 의무화
- (성과관리) 특허권 관리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결과 발생한 특허의 출원 · 등록 및 포기할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를 의무화
  - 또한, 출연연의 미활용 특허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활용률'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한편 중소 · 중견기업에 특허 무상이전 활성화

※ '정부출연(연)의 중소 · 중견기업 R&D전진기지화 방안('14.4월/연구공동체정책관)

- (기술료) 기술료 보상금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보상금 지급비율을 하향하도록 공동관리규정 개정('13.8월)

※ 연간 보상금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10억원 단위로 지급비율을 50%에서 10%씩 하향

라. 추가 제도개선(안)

1) 연구비 관리 제도개선

□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비관리 시스템의 개선방향 도출

○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카드시스템/미래부)과 실시간통합 연구관리시스템(RCMS/산업부)의 비교분석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개선 추진

※ 카드시스템의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강화 및 연구비 사용에 따른 온라인 증빙등록 기능 보완 등

□ 출연(연), 대학 등 국가R&D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추진

* 기존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통합 운영

○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연구비 관리체계 및 집행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온-오프라인 교육 추진

○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평가결과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ex) 대학알리미 등에 평가결과를 공개

□ 연구부정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기관평가 및 사업평가에 반영

○ 감사기관 또는 사업기관에 의한 징계 · 처벌 수위 정도에 따라 기관평가에서 감점 적용

※ 해당 평가항목(직무 · 연구윤리 또는 예 · 결산 분야)의 세부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토록 기준을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에서 사업별로 부정사용에 의한 환수금액*을 조사하여 감점항목으로 반영

* 연구내용 누설 및 유출, 연구비 용도외 사용, 법령위반,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 · 등록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금액

□ 연구비 부정사용시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10년(현행 5년)까지 확대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추진(이상일 의원발의,'14.6월)

2) 연구장비 관리 제도개선

- (관리 체계) 국가 통합 시스템과 기관별 장비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연계로 국가차원의 통합 DB 구축 및 행정업무 부담 경감 추진
  - 연구장비 정보를 기관 연구장비시스템, NTIS, ZEUS 중 한 곳만 입력해도 시스템 간 연계되어 추가 입력 및 NTIS 미등록 방지
    ※ 현재 기관 장비관리시스템 및 NTIS에 별도로 각각 장비정보를 입력하야여 함
  - 연구장비 구축 사양 및 구축 금액, 기타 구입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관련된 부정 구매 최소화 추진
    ex) 수입장비의 경우 수입신고번호도 함께 등록토록 하여 관세청 자료 비교를 통해 가격 부풀리기 방지
- (공동활용 기반 조성) 공동활용장비 정보 통합 제공 및 ICT를 활용한 시설·장비 관리체계 선진화
  -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공동활용장비 정보를 ZEUS와 연계하여 장비사용자 편의 향상 및 공동활용 증대 촉진
  - QR코드 등의 ICT기술을 통해 기존 수기식 운영일지 등을 전산화·자동화하여 연구자 편의 향상 및 실시간 관리 체계 구축
- (임차 및 중고거래 활성화) 연구장비 구축 중심의 문화 개선을 위하여 연구장비의 임차 및 중고거래 활성화
  -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연구기관이 보유한 유휴·저활용·불용 장비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장비 이전 확대를 통한 재활용 촉진
    ※ 유휴·저활용장비의 불용처분 전 타기관 이전 우선 검토 추진
- (표준지침 개정) 연구장비 구축 사전 검토 및 단독활용 요건 강화, 구축 심의 결과 반영에 대한 추적관리 등을 담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개정' 추진
- (장비구매기준 강화) 장비구매 인정기간* 등 구매기준 강화 검토
  * (예시) 과제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매허용 → 과제기간에 따른 구매허용 기간 조정

3) 연구과제 및 성과 관리 제도개선

- (연구과제 관리) 전문기관의 연구제도 개선사항 이행 실적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관리의 전문성 강화 유도

  ※ 질적 성과지표의 활용, 혁신도약형사업 관리, 연구성과 · 장비의 관리, 기술료 · 연구비 등 연구제도 운영 실적 등

- (관리기준) 부처별로 상이한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기준을 통일하고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 (과제정보 공동 활용) 과제관리에 필요한 참여제한 정보, 과제 선정시 가감점정보 등에 대해 NTIS를 통한 통합 활용 강화

  - 참여제한 정보 등 관리 대상 정보는 시스템 등록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공동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정보입력 의무화 검토

  - 참여연구원 정보(참여율 포함), 우대 · 감점 관련 정보 등 공동활용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정보 공유 범위 확대

  - 불필요한 행정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입력 및 이력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NTIS 서비스 개발

- (개인명의 특허등록 방지) 연구개발 성과물의 개인명의 특허 등록에 대한 사전 · 사후적 방지 대책 마련

  - 특허청과 협업하여 국가R&D 수행에 따른 특허 출원시 사전확인 조치 강화

  ex) 개인명의 출원시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거절 통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하여 사실확인 및 사유서를 제출토록 요구

  - 부적절한 개인명의 특허 출원 · 등록 사례에 대한 정기적 점검

  ex) 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자 정보를 특허청에 송부하면 특허청에서 관련 특허 출원 · 등록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기관이 정기적으로 확인(2~3년 주기)

4) 사업단(연구단) 관리 · 운영체계 개선

◈ 전문기관 및 대학 · 출연연에 비해 소규모 조직으로 관리시스템이 취약한 사업단(연구단)에 대한 R&D관리 · 운영체계 개선 추진

▢ (연구비 집행) 사업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연구비의 내 · 외부 통제 강화

- 사업단 내의 재무와 경리분야 전담인력을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토록 하고 유명무실한 비상임감사의 역할과 권한 강화
- 연구비 부정사용 여지가 많은 온라인 계좌이체를 은행 직접이체 방식으로 개선 및 전문기관의 집행 모니터링 강화

※ 사업단 자체점검 · 보고(월 1회) 및 전문기관 현장점검(반기 1회) 등 강화

▢ (관리기준) 사업단 공통 적용이 가능한 '연구비 집행 · 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 · 보급하고 교육 및 정보교류 정례화

▢ (연구비 정산) 사업단 직접수행과제(운영비 포함)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정밀정산 실시

5) ICT 분야 사업 관리 강화

◈ NIA 및 NIPA 비리사례와 같이 독점적 사업수행으로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ICT 분야 사업 관리체계 개선 추진

▢ (조직정비) 사업 전주기상 비리 발생 가능한 업무를 분리하여 권한 쏠림방지 및 조직 내 자기 통제가 가능하도록 사업 수행체계 개편

- 전문기관의 사업관련 부서를 기획과 평가 및 정산 기능으로 철저히 분리·운영하여 위탁사업자와의 비위 먹이사슬 차단

▢ (관리강화) 기관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스템 정비 및 제재조치 강화

- 전문기관과 수행기관은 사업·회계부서 합동으로 수행사업, 위탁·용역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등 실태조사 강화
- 非R&D(정보화사업)에도 R&D분야와 같이 사업비 클린카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재부가금,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도입 · 운영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

1.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범부처(18개 부 · 처 · 청)로 확산되고, 예산도 17조원에 이르는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 정부R&D예산 : ('07) 9.8조원 → ('09) 12.3조원 → ('11) 14.9조원 → ('13) 16.9조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관련사항 규정

    * 공동관리규정 : 대통령령(2001.12.19.제정)

- 그러나, 부처별로 연구개발관련 법률*을 경쟁적으로 제 · 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인 공동관리규정의 실효성에 한계 노출

  * 각 부처별로 총 97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존재('13년 기준)

  - 부처간 칸막이가 쳐진 상태로 상이한 규정과 중복적인 규제가 적용되어 행정부담 가중 등 연구수행 장애요인으로 작용

- 박근혜 정부의 핵심가치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속에서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 기존의 공급자(부처) 중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 또한 창조경제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보완 필요

⇒ 창조경제 등 새로운 시대흐름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근본적인 법령 체계 개선 추진

※ '13.12.19에 국과심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에 법률제정 내용 포함

2. 현황 및 문제점

□ (기준법령 부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 범위 및 사업 추진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 부재

○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유일한 공통기준인 공동관리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 각 부처에서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별도 근거법률을 두고 운영함에 따라 공동관리규정은 공통기준으로서의 효력에 한계 노정

– 부처간 칸막이가 쳐진 상태로 각각의 법률 · 규정을 운영하는 상황

▸ **(제재부과)** 연구수행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과기법 및 공동관리규정에서는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환수토록 하고 있으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부)에서는 추가로 부정사용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토록 규정

○ 또한,「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선언적 규정 중심의 최상위 법령으로 연구개발사업의 공통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표 5-1〉 국가연구개발관련 법 체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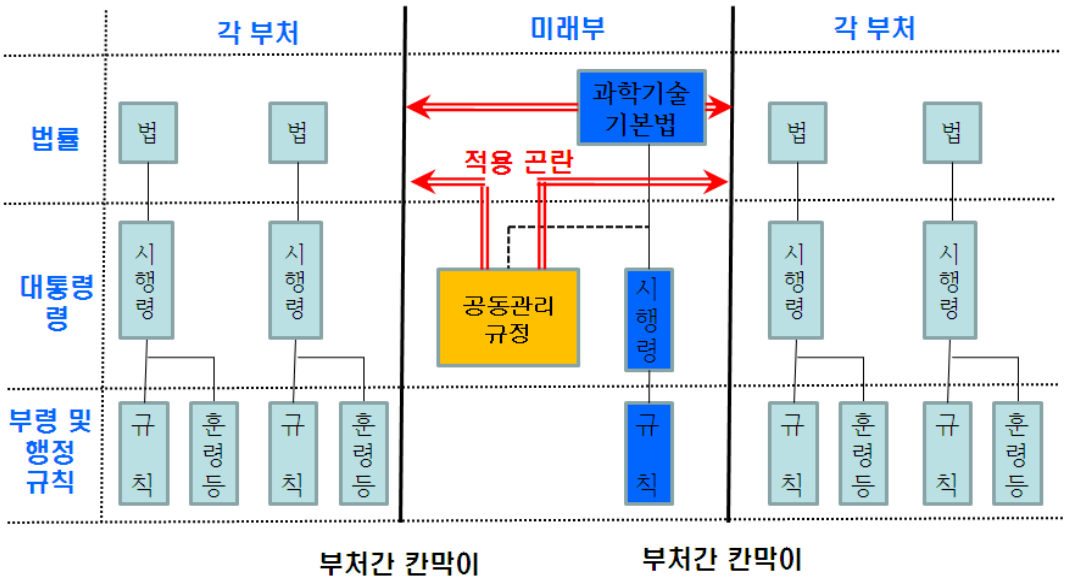

□ (관리중심 제도) 각 부처의 개별 법률 및 규정 등이 사업관리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및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에 한계

○ 각 부처에서는 사업 운영시 예산 · 평가 · 감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관리

○ 이에 따라 성공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목표를 세워 연구과제를 신청하고 온정적으로 평가하는 행태 만연

* R&D과제 성공률 : 지경부(97%, '10년), 중기청(92.9%, '08년)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관리규정에 '혁신도약형 R&D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13.3월)하였으나, 사업 전반에 적용하기는 한계

* 부처가 지정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전성 · 창의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목표달성 실패시에도 성실한 연구수행 인정시 불이익 면제

○ 또한, 연구기관에서도 연구비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하여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불만 상존

▸ **(출장 여비관련)** 공동관리규정에서는 숙박 · 교통 · 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하나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자체규정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추가 증빙 요구

▸ **(인건비 관련)** 해당 연구기관 소속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 관리되던 내 · 외부 인건비를 통합하여 연구비 계상 및 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으나, 출연(연)등의 예산사용방침에 따라 내 · 외부인건비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발생

■ (법리적 문제) 기준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관리규정에 각각 성격이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는 기형적 구조 발생

○ 연구자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기술료 징수 등 기본법의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이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

※ 참여제한 등의 제재부과는 국민의 권리제한과 관련되어 법률근거가 필요하므로 대통령령인 공동관리규정에 내용 반영 불가

○ 반면, 국정과제 등 주요내용이 법제화되지 못하고 대통령령인 공동관리규정의 개정에 그쳐야 하는 등의 한계 노정

(예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중소기업 우선이전

◈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대학 등이 정부지원으로 개발한 기술의 중소기업 우선이전 법제화'와 관련하여

• 현 제도상으로는 공동관리규정에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

※ 반면 미국의 경우 베이–돌법('80년 제정)에 정부지원 연구개발성과의 중소기업 우선이전을 의무화

□ (외부 요구) 연구현장 및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요구

○ 일선 연구자들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상이한 제도를 표준화해 줄 것을 요구

※ '08년의 공동관리규정 법률화 추진 과정에서 열린 공청회('08.9.11)에서 모든 참가자가 법제정의 취지에 공감하고,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더 강력한 추진을 희망

○ 공동관리규정 제정('01년)시에도 법제처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제정을 주장하였으며 국회, 감사원 등도 법률 제정 필요성을 지속 제기

▸ **(공동관리규정 대통령령 제정)** '중앙행정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과 기준 마련'을 위해 제정(2001.12.19.)
– 당시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법령제정시 연구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속한 제도개선 및 국회 등의 외부 영향으로 정부주도의 제도운영이 곤란한 점을 우려 대통령령으로 제정

□ (책임성강화) '연구 자율성 확대'와 함께 '엄격한 관리 강화'에 대한 상반된 요구도 병존

○ 감사원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이 연구기관들의 방만한 집행과 연구비 횡령 등으로 낭비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관리강화 요구

▸ **(감사원 지적사례)** 전자부품연구원은 '09년도에 연봉총액 100%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인건비 76억 원 등을 재원으로 전직원 370명에게 특별상여금 21억 원을 지급하는 등 평균 40.5% 인상('11.7 감사결과)

□ 보고서의 구성

○ 본 연구보고서는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및 범위,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기술함

○ 실증분석 단계: 입법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및 입법안 성안과정에서의 반영

– 제2장에서는 미국, EU,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법제의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제4장에서는 제2장의 시사점 도출 및 제3장의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도출함

○ 결론: 제5장에서 제2장, 제3장, 제4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였음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동향 분석

외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동향 분석

미국

- 과학기술정책의 전담부서는 존재하지 않고 각 행정기관이 관련 연구개발정책을 수행하는 분권적 조직체계로 구성됨
- 연방기술이전법을 통하여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국가협동연구법을 통하여 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음
- 베이-돌법을 통하여 연구개발결과의 귀속에 대한 권한을 대학 등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이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있음

EU

- EU차원의 과학기술정책과 회원국의 과학기술정책이 병존하고 있음
- 회원국 연구담당각료회의 간 협의를 통하여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EU 의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연구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참여자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촉진 등은 법제보다는 프로그램 즉, 범 EU 차원의 Horizon 2020 및 국가과학기술정책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구조를 견지하고 있음
- 핀란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일본

- 미국과 달리 일본은 정부가 스스로 연구개발의 주체로 적극적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2014년 종합과학기술회의를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로 개편하여 혁신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재조명하려 하고 있음. 또한 연구개발 관련 규범체계가 과학기술기본법 – 연구개발력강화법 – 산업활력재생 및 산업활동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구성된 법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는 우리나라 참여정부 시절의 과학기술혁신본부 시절의 운영체계와 유사하며,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음. 이는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외국의 입법례와도 정책적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e-Japan 전략 Ⅱ에 따라 행정업무와 시스템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 TLO를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음
- 산업활력재생 및 산업활동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특허권을 연구과제 수탁자가 보유하게 하도록 하면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4.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의 문제점

- 소관부처 연구개발 법제의 부정합성 문제
  -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공동관리규정은 다른 소관부처의 법률에 우선할 수 없음
  - 각 소관부처의 법률에 독립규정화 및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중복조항이 심화되고 있음
- 관리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문제점
  - 기준법령의 부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관리방법 등을 제시하는 완결성을 지닌 별도 법률 부재
  - 관리중심 제도: 각 부처는 사업관리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및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에 한계
  - 법리적 문제: 기준 법률의 부재로 인해 중요사항들의 법규정화 곤란
  - 외부 요구: 연구현장 및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요구하고 있음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기본방향

〈그림 5-1〉 법률 제정의 기본 방향

목 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연구개발 법령체계 구축

▶ 연구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범부처 공동운영체계 확립

기본 방향

[1] 국가연구개발 범부처 공통기준 법률 제정

- ○ 「국가연구개발촉진법」 제정
- ○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부처 공동운영체계 구축

[2] 창조경제 핵심가치 반영

- ○ 창의적·도전적 연구 활성화
- ○ 수요자 중심의 제도 기반 마련
-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3] 자율과 책임의 조화

- ○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
- ○ 참여제한 기준 정비 등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4] R&D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 연구시설·장비, 빅데이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 ○ 연구정보 실명제를 통한 투명한 관리

[5] 제도의 유연성 제고 및 신속한 현장착근

- ○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현장착근 유도

가. 국가연구개발 범부처 공통기준 법률 제정

□ (가칭)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범부처 공통기준으로 활용

○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일부조항을 중심으로 각 부처 소관 법령 등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내용의 체계적 정립

- 각 부처 개별 법률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반영하고 상충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최대한 배제

※ 법제정에 따라 기존 개별 법률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가급적 법제정과 동시에 타법개정도 동시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통기준 마련을 통해 부처간 협력기반 구축 및 범부처 공동 운영체계 확립

※ (범부처 R&BD 하이웨이) 기존의 각 부처 R&D사업 중 단계별 연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과제 트랙을 마련하여 부처 간 공동 운영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시스템 혁신방안('14.7월 국과심 반영)

〈그림 5-2〉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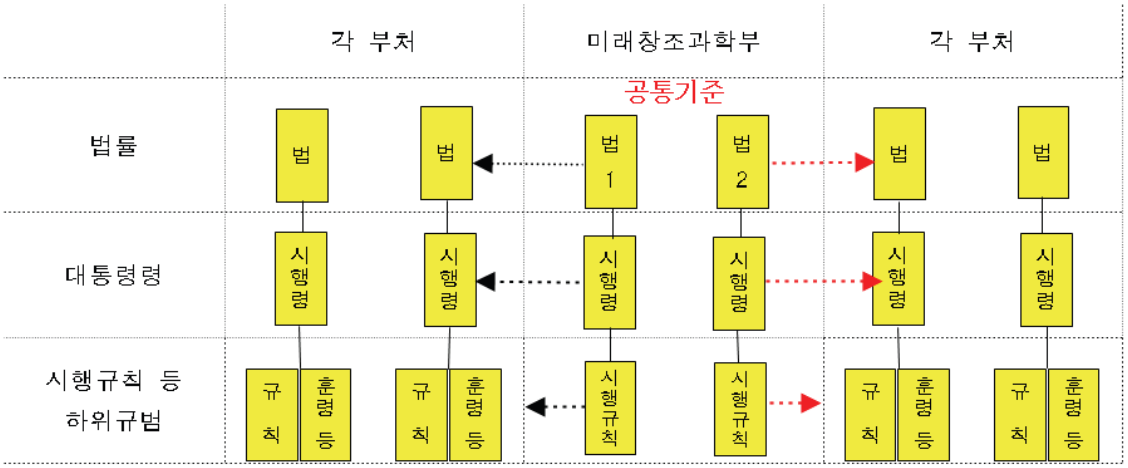

나. 창조경제 핵심가치 반영

□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R&D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창의적 ·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 연구자의 창의 · 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약형 R&D사업' 제도 등의 R&D 시스템 법률화

- 선도형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 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형R&D' 제도 도입
- 개인의 창의성 발현을 위하여 소속기관 없이 개인자격의 연구과제 참여도 허용

■ 창조경제의 주체인 연구자(연구기관) 중심의 R&D제도 구축

- 대학, 출연(연), 기업연구소 등 기관 특성에 맞는 R&D관리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범부처가 공통적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

※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상이한 제도가 아닌, 연구기관별 맞춤형 제도를 통해 연구기관은 어느 부처 R&D사업에 상관없이 하나의 기준에 따라 운영 가능

– 공급자(부처) 중심의 제도에서 수요자(연구기관) 중심의 제도 운영

■ 융·복합연구 활성화, 성과활용 촉진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 기술간·산업 간 융·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 반영

– 범부처 차원으로 공동 기획·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 지원근거 마련

- 유휴(휴면) 특허의 활용 등을 통한 R&D성과 활용 촉진 내용 반영
-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연구기관 역량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뒷받침
- 창조경제의 핵심주체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 반영

다. 자율과 책임의 조화

■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 제시

- 사업관리 중심의 공동관리규정 내용은 최대한 축소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운영 기본원칙 중심으로 구성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비 등에 유연성 부여

※ (연구목표)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목표를 변경하여 유연하게 대처
(현재는 당초 설정한 연구목표의 수정이 복잡한 절차 등으로 사실상 곤란)

※ (연구기간) 순수 기초분야 등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 장기지원 근거 마련(현행 최대 10년)

※ (연구비) 계속과제의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연도별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현재는 총연구비가 정해지면 획일적으로 동일금액 배분)

- 성실수행 인정, 이의신청 근거 등 연구자의 권익보호 장치 마련
  -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연구자에게 불이익 면제
  - 과제선정, 결과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대한 연구자의 이의신청 근거 및 절차 명확화

□ 연구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 연구비 부당집행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등의 제재 강화
  - (예시) 현재 과기법상 최대 5년으로 규정된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
- 2011년 5월 24일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제5항 및 2012년 12월 11일 개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제2항에서 제재부가금 5배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대한 원칙 규정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이관 받아 규정하도록 하면서 연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금부과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재가 취해지도록 사유별 제재수준을 명확화
- 법에 명시된 사유 이외에는 각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임의적인 제재조치 감경 금지

라. R&D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효율적인 국가R&D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 반영

- R&D사업의 유형별 분류기준을 정립하여 정책 수립 및 예산 배분·조정시 활용토록 하여 효율적 투자 도모
-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공동활용 촉진(민간장비 포함)에 대한 근거 마련
- 연구자간 협력을 유도하고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자 공동협업 환경* 마련

* '오픈 사이언스 랩(개방형 과학 실험실)', '사이언스 데이터 맵' 등

▢ 연구기획 · 관리 · 평가 실명제 등을 통한 연구관리 투명성 제고

○ 연구과제별로 연구자를 비롯하여 과제기획, 선정 및 결과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 실명공개 근거를 마련

6. 제도의 유연성 제고 및 신속한 현장 착근

▢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체계로 규율하여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관련 원칙 등 기본적인 사항들은 법률로 규정하되,

○ 연구현장의 수요에 따른 개선사항이 쉽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 규칙으로 규율

▢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현장착근 유도

○ 개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에 내용을 반영하여 각 부처 법령 개정이전에도 현장적용이 가능토록 조치

※ (예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처리 시 연구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한 경우 발생

⇒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후 필요시 각 부처 개별 법령 모두에 대한 개정 추진 가능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구성 및 조문 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제7장 제43조로 구성

○ 총칙은 목적, 정의조항,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 및 연구개발정보(과학기술데이터)의 정의규정 신설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의 정비 등

– 정출연 등의 기본사업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본 법의 일반법률로서의 성격 반영

- 제2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관련 총괄규범체계 정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원칙 규정
  - NIS 관점에서 연구개발시스템 및 법령정비 중장기전략수립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운영체계 재설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류기준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방향성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체계의 정비
- 제3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의 조성 등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및 연구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 공동·융합연구 관련 근거조항의 신설 및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범부처 조정기반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통계의 활용체계 구축
  - 연구윤리의 확보, 성실실패 인정에 대한 증명 및 감사 감면제도를 통한 실효성 확보
- 제4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 부분의 기본 절차 중심의 규정체계 간소화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의 신설
  - 연구개발사업 선정 및 평가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 연구개발결과의 공개를 통한 활용체계 구축
- 제5장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및 보안에 대한 범부처 연구개발 규범체계의 기준설정
  - 연구성과의 소유 및 관리와 기술료체계 원칙 천명
  - 연구성과의 활용보고 및 추적평가제도 도입
  -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연구비의 사용·정산 및 연구성과 소유체계에 대한 특칙규정
- 제6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의견제출 기회 보장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강화 및 제재부가금제도 도입 등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 제7장에서는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근거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활용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 부칙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부칙으로 타법 개정사항 반영

〈그림 5-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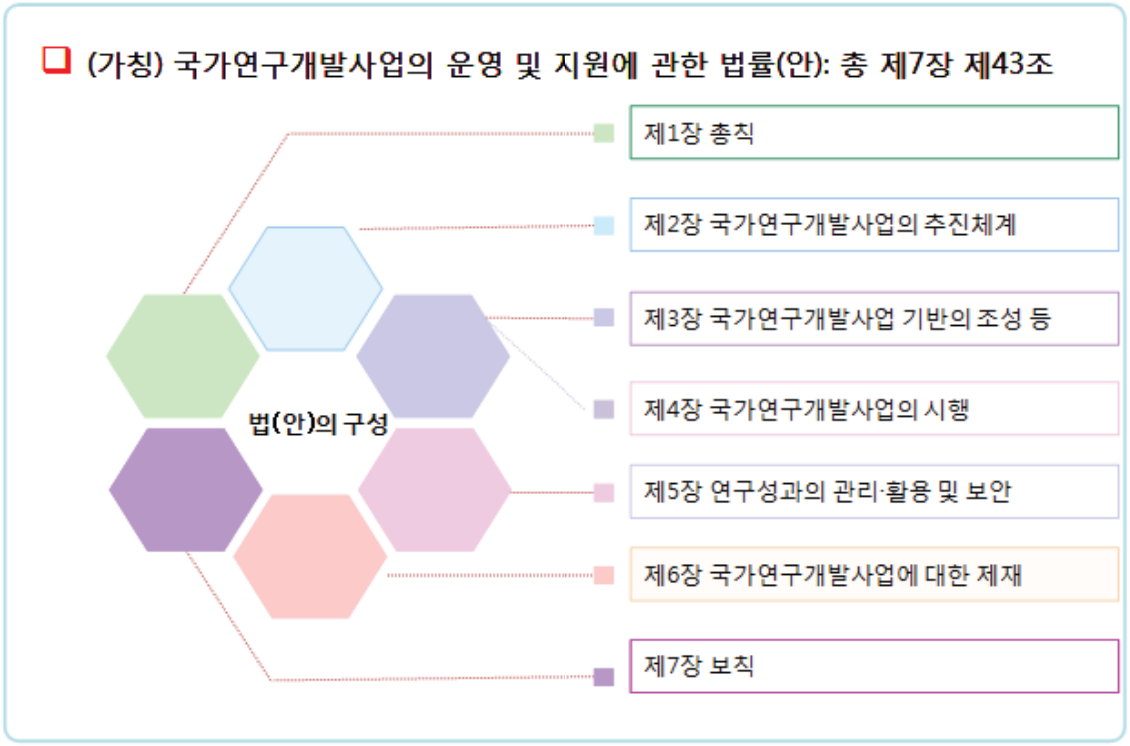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추진체제
- 제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원칙)
- 제6조(연구개발시스템 및 과학기술분야 법령정비 중장기전략 수립)
-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류기준)
-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의 조성 등
- 제10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 제11조(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 제12조(공동 · 융합연구개발의 촉진)

제13조(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 등)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통계의 활용체계 구축)
제16조(연구윤리의 확보 등)
제17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활용)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공고
제18조(사전조사 및 기획)
제19조(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20조(기술수요조사)
제21조(공고 및 신청)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체결
제2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23조(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4조(협약의 체결 등)
제25조(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의 특례)
제3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정산
제2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제27조(연구개발비의 관리기준)
제28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4절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보고 및 연구성과 평가
제29조(연구개발과제의 결과보고 및 연구성과 평가)
제30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제5장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및 보안
제31조(연구성과의 소유·관리)
제32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제33조(연구성과보호 및 보안)
제33조(연구성과보호 및 보안)
제34조(연구성과의 활용촉진)
제35조(연구시설·장비의 취득·관리 및 활용촉진)
제3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7조(연구성과의 활용보고 및 추적평가)
제38조(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특례)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
제39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40조(의견의 제출)
제7장 보칙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43조(벌칙)
부칙

제3절 국가R&D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개선

1. 추진배경

- 정부의 연구개발비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 2002년도 4.9조원이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이 2012년도에는 15.9조원을 넘어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국가연구개발비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과제중심과제제도(PBS : Project Based System)는 출연(연) 연구비지원제도의 중심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음
  - PBS는 1995년 도입 당시부터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며, 그동안 많은 수정과 발전을 거듭하여 오면서, 현재까지 출연(연) 연구비 지원제도의 중심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그동안 비목 구조 및 지원 방식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어 왔음
- 과제중심관리제도(PBS : Project Based System)에서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성 비목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음
  - PBS 하에서 연구과제 원가구조는 과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 중 국가 R&D를 수행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직접비의 구성항목인 연구수당과 연구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능률성과급, 기술료 보상금 등이 있음
  - 일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복잡하며,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 現 정부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R&D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음
  - 창조경제에서 핵심 중 하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며, 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들에 대한 합리적인인 보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본 연구는 국가연개발사업에서 합리적인 연구수당제도를 강구하고자 함
  - 인건비성 비목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체계성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전반적인 급여에 대한 인식,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복잡한 주제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수당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하여 연구수당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함

2. 추진내용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수당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연구수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원가의 구성항목 중 하나로서, 원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건비성 비목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른 비목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PBS제도와 원가구조의 변동 과정을 우선 분석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PBS에서 원가구조의 변동 과정을 파악하고, 이 중 인건비와 연구수당 변동 과정에 초점을 맞춤
  - 이와 함께 최근 국회, 감사원, 관련 부처에서 제기된 연구수당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토론함
- 다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수당의 집행 현황을 분석함
  - 우선 대학 및 출연기관에서 지급되고 있는 연구수당의 집행 현황과 집행 방식에 대하여 조사함
  - 이와 함께 연구비 관리부서 및 연구자들에게 연구수당에 대한 인식 현황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함
  - 아울러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수당 관련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고찰함
-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수당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 개선방안에는 우선 연구수당 관리제도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함. 여기에는 연구수당의 지급여부, 지급시기,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율, 대상 범위 등이 포함됨
  - 다음으로 연구수당의 지급에 중요한 기여도평가 방안에 대하여도 고찰함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기술함
  - 제2장은 PBS제도의 도입 배경과 기본 개념, 그리고 그 변동과정을 분석함
  - 제3장은 주요 외국의 연구자 수당 관련 제도에 대해 검토함
  - 제4장은 연구수당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수당 관련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함
  - 제5장에서는 연구수당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현황 조사에서 시사점을 파악하고 연구수당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제6장에서는 전체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음

3. 연구수당 계상기준의 변동[1)]

- 연구개발비 중 연구수당 항목은 '93년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 직접비의 '연구관리비'로 도입됨,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2001.12.19 제정)부터 연구활동비(직접비)로 사용, 2008년 12월 31일 개정부터는 연구수당(직접비)의 명칭으로 사용함

- 연구활동비(직접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2001.12.19제정))에서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의 7퍼센트 이내 연구활동진흥비로 지급('01.12 ~ '05.8), 이후 인건비의 15퍼센트 이내 연구활동진흥비로 지급('05.8 ~ '08.12)

  – 특히, 연구활동진흥비 중 75퍼센트는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되어야 함('08.5)

- 이후 연구수당(직접비)의 비목으로 순수하게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하는 수당은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인상됨

- '연구수당'의 경우,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가 마련한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에 따라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한 인력에게 지급함

〈표 5-2〉 연구자 인센티브 개편

구 분	적용년도		
	1993.8월 ~ 2001.12월	2001.12월 ~ 2008.12월	2008.12월 ~ 현재까지
명 칭	연구관리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정 의	• 과제관리비 • 인센티브	• 과제관리비 • 연구활동진흥비(식대와 인센티브) * 연구활동진흥비 중 75% 이상을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08.5 신설)	• 인센티브
계상 기준	– 연구개발비 총액의 5%이내 (~'95.12) – 인센티브 : 인건비 10%이내 ('95.12~'01.12)	• 연구활동진흥비 : 인건비의 7%이내 ('01.12~'05.8) • 연구활동진흥비 : 인건비의 15%이내 ('05.8~'08.12) – 배분비율 : 인센티브 11%, 식대 4%('08.5 신설)	• 연구수당: 인건비 20%이내 ('08.12~현재까지)
비 고	–	○ '01년 대비 '05년 인센티브 2배 증가	○ '05년 대비 '08년 인센티브 2배 증가 ○ 식대 제외(별도 계상)

자료 : 20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요약 및 준용함

○ 2008년 12월 공동관리규정과 함께 간접비 내에 인센티브 성격인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도입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도입된 것은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공약(국정 핵심과제)이 그 근거가 됨 : “대학 사업단위별 지원도 연구자 또는 연구자 집단 중심으로 전환하여 · · · · · · , 연구비 전체 규모를 늘리면서 개발연구자들에게 돌아가는 연구비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간접비 수준을 선진국 수준까지 올려 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수연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연구성과 향상을 기대하고, 그 결과로 연구과제 수주 확대와 간접비 수입증대를 통한 연구기반 확충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임
- 연구개발능률성과금은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지급해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함(2012. 5.14. 개정)

○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5-3〉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비교표

구분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비목	직접비	간접비
사용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 지급을 위한 수당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 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평가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장
지급대상자	당해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연구관리자
평가기준	당해연구과제 기여도 등	우수한 연구성과
비고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수행 연구원(행정인력 제외)에게 참여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과제단위의 집행비목이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기관차원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행정인력 포함)에게 지급하는 비목임. 따라서 양 인센티브 제도의 목적, 지급대상 등에 차이가 있어 쉽게 통합여부를 결정하기는 힘듦

8. 주요국의 연구자 인센티브제도 비교와 시사점

가. 미국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

- 미국 연방 연구지원기관에서는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 인건비가 연구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님
  - 대개의 경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교수에게는 인건비를 최대 2/9까지 추가로 지급함
  - 이 이유는 미국 대학의 교수들의 정규 급여는 1년 12개월 중 9개월의 연봉을 지급 받게 되는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추가적으로 2개월분의 급여를 연구과제 사업비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
- 미국 정부기관의 규정에서는 많은 부분을 대학의 자율성에 일임함 즉, 대학이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고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그 비용을 인정하는 입장
- 미국에서는 수주한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지기도 함. 대학에서 용역계약(contract)로 계약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받는 인센티브(인건비, 보너스 등)는 계약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짐
-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grant)의 경우, 미국 대학의 교수는 세 가지의 채널로 인센티브를 받게 됨
  - 인건비를 최대 2/9까지 추가로 계상할 수 있음
  - 연구비 내에 인센티브를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대학들이 존재함
  - 간접비에서 일부(대개 5% 내외)를 급여나 연구비로 지급하기도 함
- 대개 연방지원기관에서는 대학에 연구비 지급 및 관리를 위임하여 대학의 정책에 따라 약간 상이한 점이 존재함. 연방연구비에서는 인건비, 안식년 급여,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임

나. 일본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

- 일본의 연구과제에서 직접비(direct costs)는 당해 연도의 물품 경비(Consumables), 여비(travel expenses), 인건비 및 사례금(personnel expenditure and remuneration), 기타비용(Miscellaneous) 그리고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음
  - 여기서 인건비 및 사례금은 교수가 아닌 대학 내 연구원의 인건비로서 교수에게 지급되지 않음
  - 간접비도 인건비 등으로 지출가능하나, 대개 연구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 일본의 대학에서는 교수 급여와 연구비는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에서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엄격이 금지하고 있음
  - 일부 대학의 경우, 간접비의 일부를 교수에게 연구 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로 지급하기도 함
  - 나고야 대학의 경우, 간접비 30% 중 15%는 대학 본부에 귀속되며, 15%는 단과대학에 배정되는데, 여기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자 교수가 연구실 비품 등 연구 인프라 개선에 사용할 수 있음

다. 외국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에서의 시사점

- 다음 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비교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연구자 교수의 인건비를 지급하나, 일본의 경우는 연구자 교수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연구자 교수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인건비의 20%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을 지급하며, 출연(연) 연구원에게는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5-4〉 한국, 미국, 일본의 인센티브 비교

	한 국	미 국	일 본
직접비	연구수당 – 인건비 총액의 20%	인건비 계상 – 연봉의 2/9까지 추가 지급 – 일부 대학의 경우, 추가 지급 가능	교수 인건비 지급 불가 – 전임 연구원 인건비만 가능
간접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연구기관 장의 평가,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지급)	간접비의 일부 – 대학별로 5%내외를 급여 또는 연구비로 지급하기도 함	간접비의 일부 – 대학별로 소액의 간접비를 연구실 비품 구입 등에 사용가능

-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연구자에 대한 추가적인 금전적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연구자 교수의 인건비를 과제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과제에서 계상된 인건비 전액이 교수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9개월 계약에 더하여 연구과제 예산에서 2개월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하며, 일부 대학의 경우 다른 금전적 인센티브가 존재함
  - 다만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수업 면제 등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연구자 교수에 대하여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전무하기 때문에, 일본 교수들 사이에 불만 요인으로 작용함
  -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자 교수 또는 출연(연) 연구원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과도한 금액이 되지 않도록 참여율 제한, 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액에 대한 제한을 고려하는 것도 생각하여 볼 수 있음
  - 과도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대신, 수업 면제, 비서 제공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연구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음
- 급여대비 인센티브수당의 비율은 28%로 나타남
  - 전체 연구회에서 인건비성경비총계에 대한 비중은 급여가 69%, 기타인건비성경비가 19%임
  - 전체 연구회에서 기타인건비성경비는 총 1,902억원으로 이중 과제인센티브가 1,103억원(58%), 능률성과급이 535억원(28%), 기술료인센티브 254억원(13%) 세 항목이 99%를 차지함
  - 급여 대비 인센티브수당(기타인건비성경비-퇴직금보전액)의 비율은 전체 연구회 평균이 28%인데, 연구인력이 31%로 지원인력의 11%보다 3배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구수당이 연구개발활동 참여 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금전적 요인임
  - 설문결과를 보면, 연구수당(3.40)이 금전적인 인센티브 중 가장 연구개발활동 참여 동기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2.84)은 연구개발 참여 동기에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연구수당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동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연구수당이 연구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기능(3.10), 연구원들의 낮은 급여를 보충하는데 기여하는 기능(3.16)도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음
  - 연구수당의 부정적 기능으로 설문한 배분비율의 불공정성, 연구원사이의 불화의 원인 등은 크게 부각되지 아니함. 그러나 연구인력에 비하여 지원인력들은 부정적인 측면에 좀 더 높게 동의하고 있는 편임

- 연구수당의 급여 비중은 연구원들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연구기관에서 받는 소득 중에 연구수당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하여는 거의 없다가 46명(37.7%)로 가장 많았으며, 약간 비중이 낮다가 33명(25.6%)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두 응답을 모두 합하면 79명(83.8%)이 비중이 낮음을 응답하였음
  -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연구수당이 급여의 16.35%(연구직은 19.25%)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원들이 느끼는 비중은 실제 수치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생각됨.
  - 연구수당이 인건비 총계의 몇 %가 되어야 적당한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71명(55.0%)이 응답자들이 현행 기준(인건비 총액의 20%)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함, 과반 수 이상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통합은 반대하고 있음
  -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통합에 대하여는, 129명의 설문 응답자 중 74명(57.4%)이 항목별로 지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존치하여야 한다고 응답함으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음
  - 연구수당 지급 시기에 대하여는 70명(54.3%) 연구 종료 이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1명(31.8%)이 연구과제 진행 중에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음
- 연구수당 지급 사업을 확장하고 지원인력에게 확대하는 의견
  - 연구수당 지급 대상은 69명(53.5%)이 연구인력 및 연구지원인력 모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출연연구기관에서, 그리고 지원인력직종에서 모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62명(48.1%)이 비R&D 성격의 사업에도 지급하되, 비율은 순수 연구개발사업보다 낮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34명(26.5%)은 모두 연구개발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96명(84.5%)이 비R&D성격의 사업에도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함
-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자유응답에서 연구과제 참여율을 평가하기 위한 엄격하고 철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 연구수당 지급 시 기여도 평가항목으로 57명(44.2%)이 과제참여율을 들었으며, 39명(30.2%)이 논문 발표 및 작성을 평가항목으로 응답하였음

9. 연구수당 관리제도 개선방안

○ 연구수당의 지급 여부

- 연구수당은 과제를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금전적인 인센티브이며, 연구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급여 대비 인센티브수당 28%이며, 이중 연구수당은 16%, 능률성과급은 8%로서 연구원들 연봉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출연연구소의 1인당 연봉환산액 평균이 연구인력 90백만원, 지원인력 69백만원으로 글로벌 기업 수준에 비하여 높지 않은 편임
- 미국에서도 연구참가자들에게 일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항목별로 지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임
-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자들의 과제 참여를 독려하는 수단으로서, 기관장이 결정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과 그 목적이 다름
-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현행안과 제안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방안	내용	비고
현행안	– 연구수당과 능률성과급을 분리 지급	선호안
제안(1)	– 연구수당과 능률성과급을 통합	
선호안 논리	–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항목별로 지급 목적과 결정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수당은 연구과제를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금전적인 인센티브이며, 연구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 연구수당 적용 사업 및 지급 범위

- 연구수당은 R&D사업만이 아니라, 비R&D성격의 사업에도 낮은 비율이라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구수당 지급 대상은 연구인력만이 아니라, 연구지원인력에게 일부 할당하는 것도 필요함. 그 이유는 연구과제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지원인력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임
- 현재 지원인력의 비중이 14%임을 고려할 때, 연구수당 중 10%정도를 지원인력에게 배정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
-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현행안과 제안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방안	내용	비고
현행안	– 연구수당을 연구직접인력에 주로 지급	
제안(1)	– 연구간접인력에 10% 정도 배정함	선호안
제안(2)	– 비R&D 사업에도 차등비율 연구수당 지급	
선호안 논리	– 연구과제의 수주가 증가하면, 연구지원인력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원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 – 연구인력과 지원인력 들의 공동체적 의식제고에 필요	

○ 연구수당 계상기준 및 지급시기

– 연구수당의 수준은 현행과 같이 인건비 총계의 2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연구수당 지급 시기는 현재와 같이 연구 종료 후에 지급하되, 장기 과제의 경우 연차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현행안과 제안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방안	내용	비고
현행안	– 연구수당의 수준을 인건비 총액의 20% – 연말에 지급	선호안
제안(1)	– 장기연구과제는 연말에 나누어 지급	보완 사항
선호안 논리	– 연구수당의 수준은 현행과 같이 인건비 총계의 20%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설문 결과에서 나타남	

○ 기여도 평가방법

– 연구수당의 부정적 기능은 설문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아니함. 그러나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자유응답에서 제기되고 있음

– 기여도 평가항목으로 연구 과제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논문 발표 및 작성을 다음 기준으로 응답함

– 기여도 평가를 연구책임자에게 일임하더라도, 배분기준에 대해서는 참여 연구자간의 공유 또는 동의가 필요하며, 연구책임자의 상한선 혹은 참여연구원 참여율에 따른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함

– 기여율 결정시 연구팀 내에서 상호 평가를 통하여 이를 기여도에 반영하는 것도 방법일 것임

– 다만 연구책임자 교수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학생연구원에게만 지급되는 대학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인건비가 지급되는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수당을 강제 배분하는 규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현행안과 제안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방안	내용	비고
현행안	– 연구책임자가 결정 – 일부 평가기준 시도	
제안(1)	– 연구책임자가 결정하되 가이드라인 필요 – 참여연구자들과 공유 필요 – 연구원 상호평가제도 검토 필요	선호안
제안(2)	– 평가항목으로 연구 과제참여율과 논문 제시 – 연구책임자의 상한선, 참여연구원 하한선 고려	참고사항
제안(3)	– 인건비를 지급 받지 않는 대학 교원과 학생연구원의 배분방식 재고 필요	대학 고려사항
선호안 논리	– 설문에서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자유응답에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공정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수긍하는 배부기준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능률성과급에 대한 보완점

– 연구수당과 능률성과급은 기술료인센티브와 함께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 수당의 대표적인 항목임

– 출연(연)에서 연봉의 차이는 급여보다는 인센티브성 수당의 다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연구수당과 능률성과급은 연구기관별 연봉 차이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임

– 연구수당은 과제 수주에 따라 결정되나, 능률성과급은 예산 대비 초과잉여금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부 연구소의 경우 능률성과급이 급여의 15%를 넘는 기관도 있으며, 이러한 초과 지급이 매년 계속되는 기관도 있음

– 따라서 예산 설정시 전년도 실적에 준하여 편성케 함으로써 과소한 예산 편성을 예방하고, 초과잉여금의 50%만이 아니라 급여의 일정률 이내로 능률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현행안과 제안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방안	내용	비고
현행안	– 능률성과급은 잉여금의 50% 이내로 제한	선호안
제안(1)	– 능률성과급에 대하여 잉여금 비율과 합께 급여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 고려 필요.	보완사항
선호안 논리	– 일부 연구소의 경우, 능률성과급의 비중이 매년 높은 기관들이 있어 예산의 과소 설정을 통한 초과잉여금 조성 의혹이 있음	

○ 연구원들의 과제 참여를 위한 비금전적 인센티브

– 연구원들의 적극적인 과제 참여를 위한 비금전적인 제도로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 연구연가, 기술교육 및 교육훈련제도 확대, 국내외 연구관련 세미나 및 학회 참가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원기관별로 조금씩 상이한 연구비규정이 존재하므로, 이를 합하여 연구자가 좀 더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연구비에 대하여 회계/구매 감사 및 기타 내 · 외부감사 등 통제수단의 중복으로 정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정당한 연구활동에 의해 수령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시각이 부정적임,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제6장 결 론

■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중소기업의 연구참여 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여,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명확화를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촉진에 기여
- 기술료 징수기간 및 징수방법 정비를 통해 정부납부 기술료 신속한 납부에 기여하고, 연구원 보상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통해 연구자 연구의욕 고취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특허출원 및 등록 활성화 제고
- 연구성과 관리·유통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가차원의 성과관리체계확립
- 연구개발비 사용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에 기여
- 협약 해약사유에 연구실 안전항목 추가를 통해 연구실 안전 강화에 기여
- 성실한 연구수행 인정기준 마련을 통해 도전적·창의적 연구 활성화 제고
- 제재부과금 제도 도입을 통해 연구비 부정집행 감소에 기여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매뉴얼 제정

○ 국가연구개발 사업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공통 기준 제시를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 완화에 기여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시스템 지정 및 점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능력의 향상, 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연구비가 지원되므로 안정된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연구자 확보도 용이함

■ 기술료 제도 기획·운영

○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가이드라인 제공 및 기술료 제도 매뉴얼 마련 및 배포를 통해 기술료 제도의 범 부처 공통기준 제시

- R&D도우미센터 운영 및 지원
  - 연구수행중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문제해결에 기여
- 국가 R&D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 국가 R&D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홍보강화 및 현장 착근에 동기부여
- 연구비 부정집행 방지 및 국가R&D 제도개선 설명회
  -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 안내 등을 통한 연구비 부정용 예방에 기여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기준에 공통적용 가능한 법률 제정을 통해 범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시스템 구축에 기여
- 국가 R&D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개선
  - 현 연구수당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합리적인 인센티브 체계 구축의 기본 자료로 활용

주 의

1. 이 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